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
연구보고	2011-12

#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

2011



연구보고 2011-12

#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2011. 9.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연구요약

### □ 국가성평등지수 개발 목적과 활용

-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특정 국가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성평등지수가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와 부문별 성평등지표 값을 산정, 발표함으로써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 우리나라 성평등지수의 영역과 지표

-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가치(Difference) 혹은 비(Ratio)로서 측정할 수 있다.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평등지수(GEI)는 지표의 격차로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 UNDP는 2010년까지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를 활용해 왔다. 이러한 지수들은 지표의 격차와 수준(Level)을 함께 고려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해왔다.
-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측정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할 경우, 성평등수준 개선이 지표수준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남녀격차의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UNDP는 2010년부터 격차로 성평등수준을 산정하는 성불평등지수(GII)를 새롭게 개발하여, 성평등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남녀격차를 기준으로 성평등수준을 측정하는 이와 같은 지수들은, 국가 전체와 각 부문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성평등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지표와 함께 각 부문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관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과 관리 목적은 성평등 달성뿐만 아니라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 있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대표지표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고, 관리지표는 각 행정부처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성평등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 성평등지수의 영역(Dimension)은 8개 부문,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부문에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지수가 8개 부문으로 구분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적 성평등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정책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 대표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연구결과 및 관련 행정부처와의 2010년~2011년에 걸친 협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표지표는 아래의 8개 부문 20개 지표이다.
  - 관리지표 또한 행정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최종 선정된 관리지표는 가족부문 4, 복지 4개, 보건 6개, 경제활동 5개, 의사결정 8개, 교육·직업훈련 9개, 문화·정보 5개, 그리고 안전부문 3개로 총 44개 이다.

〈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

부문 (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① 가족 (2개)	1-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여성가족부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② 복지 (3개)	2-1	빈곤 가구주의 성비	보건복지부
	2-2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2-3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부문 (지표 수)	연번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③ 보건 (2개)	3-1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3-2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④ 경제활동 (3개)	4-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고용노동부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sup>1)</sup>	고용노동부
	4-3	상용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⑤ 의사결정 (3개)	5-1	국회의원의 성비	국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5-3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고용노동부
⑥ 교육 · 직업훈련 (3개)	6-1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sup>1)</sup>	교육과학기술부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⑦ 문화 · 정보 (2개)	7-1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7-2	문화컨텐츠 산업종사자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⑧ 안전 (2개)	8-1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sup>1)</sup>	법무부 · 경찰청
	8-3	강력범죄(홍약범) 피해자의 성비	법무부 · 경찰청

주: <sup>1)</sup>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s)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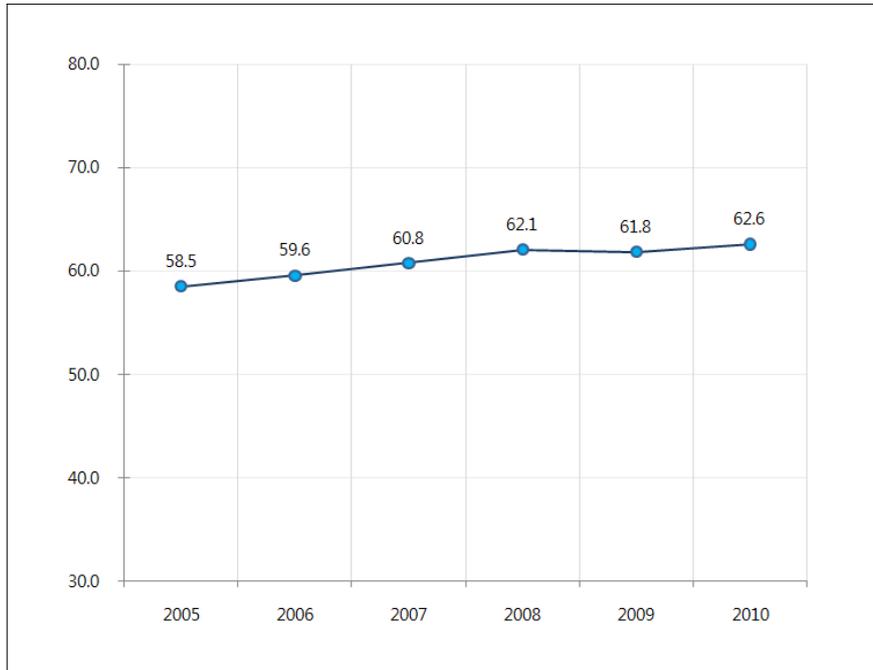
#### □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 2010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62.6으로 지난해보다 0.8p 증가하였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05년 58.5에서 2008년 6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61.8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다가, 금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 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일시적으로 소폭 악화된 이후 2010년에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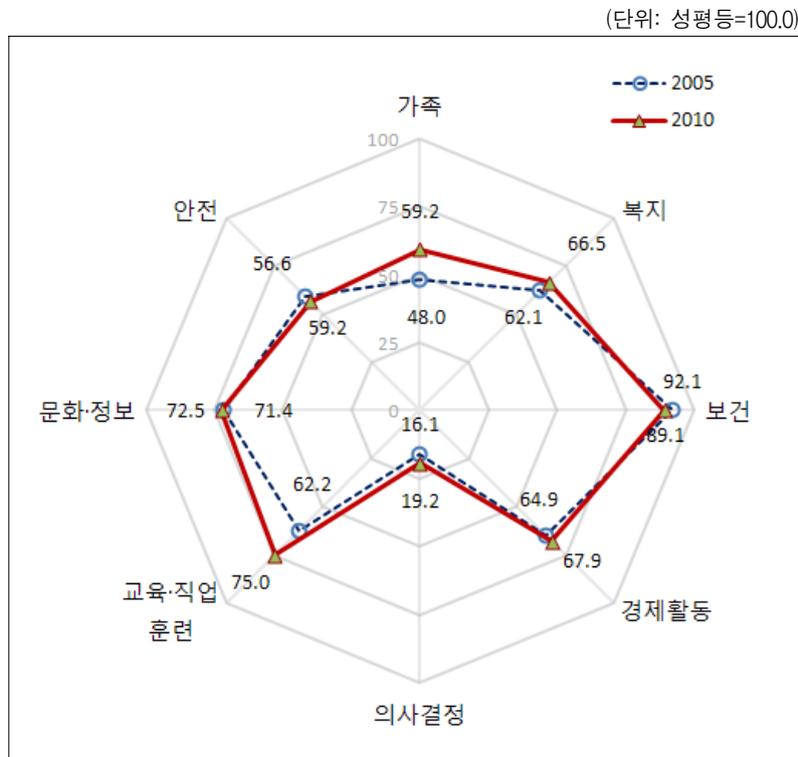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범주는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는 '0.0'부터 완전평등을 나타내는 '100.0'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수 값이 높아질수록 성평등수준이 높아진다.

(단위: 성평등=100.0)



#### 〈 국가성평등지수의 수준과 추이 〉

-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부문별로 보면, 2010년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부문, 문화·정보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다. 그리고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직부문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
-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교육·직업훈련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가족, 복지, 의사결정, 경제활동, 문화·정보부문 순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건부문과 안전부문은 성평등수준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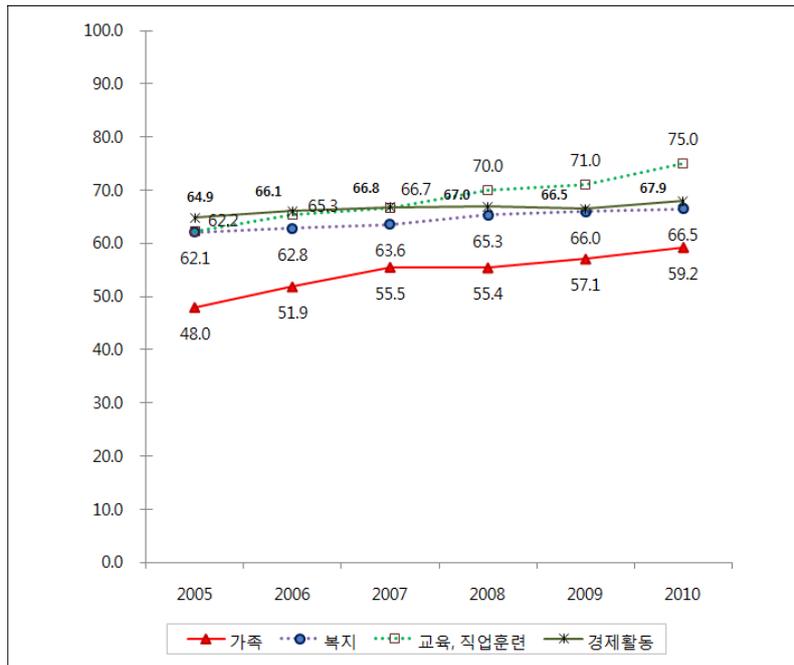
주: 부문별 가중치가 부여된(weighting) 지수 값임.

### 〈 우리나라 부문별 성평등수준 〉

- 부문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먼저 복지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 영역은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62.1에서 2008년 65.3, 그리고 2010년에는 66.5로 상승하였다.
- 가족부문은 2005년 성평등지표 값이 48.0이었으나, 2007년 55.5, 그리고 2010년 59.2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8개 영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두 번째 가장 크게 향상된 영역이 되었다.
-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성평등지표 값이 2005년 62.2에서 2010년 75.0으로 상승하여, 성평등지수 8개 영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영역이다.
-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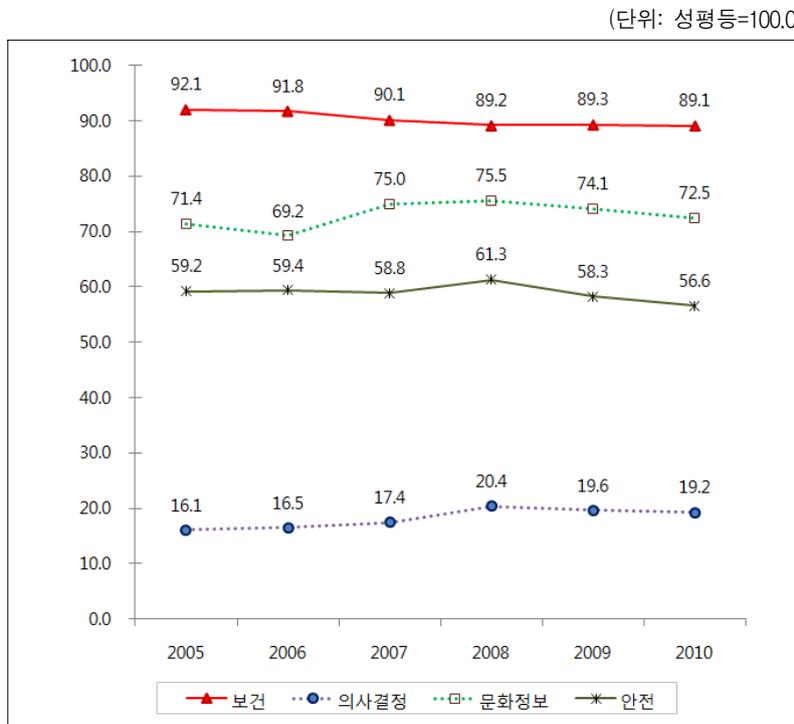
2009년에 성평등수준이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이 되면서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은 크게 상승하였다.

(단위: 성평등=100.0)



### 〈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1) 〉

-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92.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89.2이었다. 그 이후 2009년에는 보건부문의 성평등수준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0년 지수 값이 89.1로 다시 악화되었다.
-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다른 영역에 비해서 등락이 심했다. 2008년까지 상승 추이를 보였던 성평등수준은 그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9년 지표 값이 74.1, 2010년 72.5로 악화되었다.



### 〈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2) 〉

- 안전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지표 값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 즉, 2008년 61.3이었던 지표 값이 2009년에는 58.3, 그리고 2010년에는 56.6으로 하락하였다.
-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부문을 보면, 2005~2008년까지 지표 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9.6, 그리고 2010년에는 19.2로 하락하였다. 즉, 의사결정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평등수준이 낮은 부문인데, 2008년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성평등수준이 더욱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 □ 부문별 성평등지표 추이와 특징

- 2010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2009년에 비해서 성평등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수의 영역별로 보면

지난 해에 성평등수준이 하락하였던 경제활동부문은 2010년에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성평등수준이 향상되어 왔던 가족부문, 복지부문, 교육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2008년 이후 지표 값이 하락해온 의사결정부문, 안전부문, 보건부문 그리고 문화·정보부문은 2010년에도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 영역별 성평등지표 값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먼저 경제활동부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2010년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 남녀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는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2010년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남성보다 월평균급여총액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증가된 임금내역을 보면 여성근로자는 남성보다 정액임금이 더 많이 증가한 반면에 남성근로자는 여성보다 연장근무, 휴일 및 야간근무를 많이 함에 따라 초과급여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 그 결과 남녀임금격차도 2009년 66.5%에서 66.9%로 소폭 증가하였다. 즉, 2010년에는 경제회복과 함께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고용안정성이 남성보다 제고되고, 노동에 대한 보상정도를 나타내는 남녀임금격차 부문의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② 복지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개별 지표별로 보면 먼저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2010년 7월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를 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 가구주 중에서 빈곤선 이상에 있는 가구비율을 보면, 2010년에 빈곤 여성가구주 증가율이 남성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2010년에 남녀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사별 여성가구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배우 여성가구주가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 ③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개별 지표를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는 2005년 10.5년에서 2010년에는 10.9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12.0년에서 12.4년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녀 평균 교육연수의 성평등수준은 개선되었다.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보면 남녀 취학률은 각각 116.9%, 81.5%로 남성이 여전히 높았으나 전년에 비해서 여성의 취학률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2010년 성평등수준은 개선되었다.
  -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 남녀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남녀 모두 재직자훈련 참가 건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훈련참가건수는 -2.5% 감소한데 비해서 남성은 -19.1%가 감소하여, 성평등수준은 전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었다.
- ④ 가족부문의 성평등수준도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2010년에도 이어졌다. 개별 지표를 보면 셋째 아 출생성비는 2000년 144.2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9년 114.3 그리고 2010년에는 더욱 개선되어 110.9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부문 성평등수준은 2010년에도 개선되었다.
- ⑤ 보건부문을 보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이나, 2005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0년에도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되어 성평등지표 값은 2009년 89.3보다 높은 89.1로, 성평등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부문의 경우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 및 불편감,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종합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 2010년에도 개선되었다. 2010년에는 특히 60대, 70대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훨씬 개선되어, 성평등수준이 향상되었다.
  - 건강보험의 입원급여지급 건수를 보면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여성의 입원급여지급건수 증가율,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출산기인 25~34세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서, 성평등수준은 악화되었다.
- ⑥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던 의사결정직 부문의 경우, 2008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 정부부문 의사결정직 성평등을 나타내는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9년 3,021명에서 2010년 3,348명으로 10.8%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2009년 33,265명에서 2010년 33,727명으로 1.4% 증가하였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2010년에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행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을 나타내는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인 민간기업과 전체 공기업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현황을 보면, 여성관리자는 2009년 말 29,404명에서 2010년 말 34,616명으로 17.7%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각각 201천명에서 236천명으로 17.5%로 증가하여, 여성보다 증가율이 다소 낮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여성근로자 증가율(10.2%)이 남성(2.7%)보다 훨씬 높아서, 민간부문 대표성의 성비는 오히려 하락하여, 2010년 의사결정직의 전체 성평등수준은 2009년에 이어서 악화되었다.

⑦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59.2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200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개별 성평등지표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여성의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가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정도가 완화되었다.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피해자 수가 2005년 14,847명에서 2009년 19,254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율을 보면 남성이 19.9%로 여성의 10.2%보다 높아서 성비는 개선되었다.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단순히 성격차뿐만 아니라 안전수준도 평등지표 값 산정에 반영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2010년에 남녀격차는 개선되었으나,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성평등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⑧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7년, 2008년에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추세가 2010년에도 이어졌다. 즉, 남녀 문화산업 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낮

아서 성평등지표 값이 하락하였다.

- 또한 여성 여가시간은 변동이 없는데 남성은 소폭 감소하여 여가시간 성평등 지표 값은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2009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 □ 최근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GDI와 GEM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UNDP에서 새로 개발·공표된 지수이다.
  - 이 지수는 세 영역 즉,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보여준다.
  - GII의 영역과 지표구성은 기존 성평등지수의 문제점 개선을 염두하여 선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에서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으로 지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성평등 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지수 값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즉,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게 되어 있다. 2010년 GII의 한국 순위는 138개 국가 중 20위로 나타난다.
- 여성경제기회지수(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 WEOI)는 법, 제도, 집행, 관습과 태도 등에서 자영업자 혹은 임금근로자로서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가 허용되는지 그 여부를 측정하며, 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WEOI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수라는 것이다. 이 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노동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률적·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적 사업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총 26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둘째, WEOI는 SIGI(사회제도와 성평등지수)처럼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 지수이다. 2010년 여성경제기회지수(WEOI)에서 한국순위는 113개국 중 35위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금융에 대한 접근이 21위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66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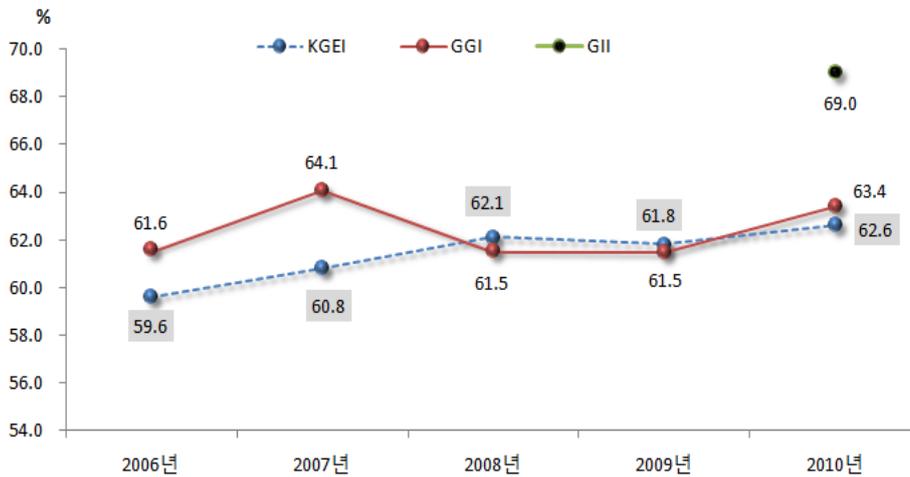
□ 성평등지표 변화와 우리나라 순위제고

-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의 구성 지표는 한국성평등지수(KGEI)의 지표와 비교하여 4개의 지표가 동일하며, 2개 지표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동일한 4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국회의원의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이며, 2개의 부분 일치 지표는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와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이다.
  - 한편 GII는 5개의 구성지표 중 2개가 KGEI와 동일했고, 1개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구성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과 국회의원이 KGEI와 동일하며,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세 지수의 측정기준과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KGEI는 성과지표를 성별격차로 측정한다.
  - 가중치 부여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부문별 가중치를 주고 있으며,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GGI는 측정기준에서 KGEI와 동일하지만 가중치 부여 방법은 다르다. GGI는 부문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 하지만 지수유형으로 보면 KGEI와 GGI는 가법형으로 동일하다. 반면 GII는 측정기준과 가중치 부여방법이 약간 다르다. GII는 성별불평등수준과 격차를 동시에 측정한다. 가중치 부여 방법은 특별히 없으나,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법을 원용하여 지수를 표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GII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와 영역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형으로 분류된다.

〈 성평등지수의 측정기준, 가중치 부여방법, 지수유형 분류 〉

성평등지수	측정기준	가중치 부여방법	지수유형
KGEI	성과지표, 성별격차	부문별 가중치,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 없음	가법형 지수(Additive Index)
GGI	성과지표, 성별격차	부문별 가중치 없음,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	가법형 지수(Additive Index)
GII	성과지표, 성별불평등수준과 격차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 원용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 (Inequality & association sensitive Index)

- 세 성평등지수의 지난 5년간 점수 추이를 보면, 측정기준이 동일한 KGEI와 GGI가 2010년 각각 62.6점과 63.4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이며, GII는 성평등점수로 산정할 경우 69.0점으로 두 지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 KGEI 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 59.6점에서 2007년 60.8점, 2008년 62.1점으로 상승하다, 2009년 61.8점으로 소폭 하락 후 2010년 다시 상승한다. 한편 GGI의 경우 61.6점에서 2007년 64.1점으로 상승하나, 2008년은 KGEI와 달리 다소 크게 하락한다. 이후 2009년까지 동일한 점수를 보이고 2010년은 63.4점으로 다시 상승한다.



〈 KGEI, GGI, GII의 점수 변화 추이 〉

- KGEI의 지표 개선과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순위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을 정리해 보면, 다른 지표가 고정된 상태에서 KGEI의 구성 지표 중 여성 국회의원비율의 상승이 국제성평등지수인 GGI와 GII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인구와 성별임금격차가 국제성평등지수 순위 상승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성비율이 10%p 이상 상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근본적으로 남성의 취학률 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여성이 10%p 이상 증가할 지라도 순위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표 값이 4개 지표에서 동시에 5%p 상승할 경우 GGI는 2010년 기준으로 99위로 상승하며, GII는 16위로 순위 상승이 예상된다.

〈4개의 지표 모두가 5%p 상승할 경우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 점수, 순위)

구 분		지표 모두가 5%p 상승			성평등지수 값	
		여성	남성	성비	점수	순위
KGE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4.4	73	74.5	63.9	-
	여성 국회의원	18.7	86.3	25.0		
	성별 임금격차(성비)	-	-	71.9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6.5	116.9	74.0		
GG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76	78.9	64.7	99위
	여성 국회의원	20	80	25.0		
	성별 임금격차(성비)	-	-	57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4	115	73.0		
GI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9.5	75.6	78.7	28.3	16위
	여성 국회의원	18.7	86.3	21.7		

□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먼저, 한국성평등지수(KGEI)를 중장기 성평등정책 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즉,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여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성평등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가성평등지수의 변동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영역별 개별지표의 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영역별 정책 평가와 과제 개발을 제안하도록 한다.
  - 두 번째,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현황, 여성의 인권 및 복지 현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현황, 그 밖의 성평등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심의를 한다. 그리고 성평등수준이 부진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 및 협조 행정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세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의 경우 각 지표별 성평등도달 정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평등지표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와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지표의 변화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지수 및 지표 DB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초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네 번째, 성평등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평가하는데 국가성평등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와 정책간의 연계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수와 정책연계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혹은 행정부처가 성평등관련 정책을 새롭게 도입 혹은 변경하였거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 중에서 생산주기가 길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그리고 생산되고 있지 못하는 통계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국내외 연구동향	6
가. 주요 성평등지수 관련 연구	6
나. 국내외 성평등보고서의 주요 내용	8
II. 정치 및 경제 영역의 여성대표성 및 할당제	13
1. 정치 영역 여성대표성	15
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현황	15
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효과	18
다.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할당제 도입 현황	19
2. 경제 영역 여성대표성	23
가.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현황	23
나.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참여 확대 효과	26
다.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할당제 도입 현황	28
III.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방법	31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33
가. 성평등과 국가성평등지수	33
나. 국가성평등지수 부문과 지표	35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41
IV.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51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특징	53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57
가. 가족부문	57

나. 복지부문 .....	58
다. 보건부문 .....	61
라. 경제활동부문 .....	63
마. 의사결정부문 .....	65
바. 교육·직업훈련부문 .....	67
사. 문화·정보부문 .....	69
아. 안전부문 .....	70
<b>V.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b>	<b>73</b>
1. 최근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	75
가. 기존 성평등지수의 특징과 비판 .....	75
나. 성불평등지수 .....	78
다. 여성경제기회지수 .....	85
2. 성평등지표 변화와 우리나라 순위제고 .....	94
가. 한국성평등지수와 국제성평등지수의 관계 .....	94
나.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순위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 .....	99
<b>VI. 국가 성평등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b>	<b>107</b>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	109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	113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	123
■ <b>참고문헌</b> .....	125
■ <b>부    록</b> .....	127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	129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	152
<부록 3> 주요국 여성대표성 관련 통계 .....	158
■ <b>Abstract</b> .....	169

## 표 차 례

<표 II-1> 여성 의원비율별 국가 분포: 하원 및 단원제 기준 .....	17
<표 II-2>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현황: 하원 및 단원제 기준 .....	21
<표 II-3> 할당제 도입방식별 여성 의원 비율 분포: 하원 및 단원제 기준 .....	22
<표 II-4> GMI 조사대상 기업 업종별 여성 이사 비율 .....	25
<표 II-5> GMI 조사 대상 기업 업종별 여성 이사 1인 이상 기업체 비율 .....	26
<표 II-6> 주요 국가의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 현황: 2010년 현재 .....	29
<표 III-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	38
<표 III-2>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1) .....	39
<표 III-3>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2) .....	40
<표 III-4> 부문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	46
<표 III-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	48
<표 V-1> GII의 영역과 지표 .....	80
<표 V-2> OECD 회원국의 GII 순위와 점수 .....	84
<표 V-3> WEOI의 영역과 지표 .....	87
<표 V-4> WEOI의 지표의 수량화 방법 .....	89
<표 V-5> OECD 회원국의 WEOI 영역별 순위와 점수 .....	91
<표 V-6> OECD 회원국의 WEOI 영역별 순위와 점수 .....	93
<표 V-7> 한국성평등지수(KGEDI)와 국제 성평등지수들의 지표구성 비교 .....	96
<표 V-8> 성평등지수의 측정기준, 가중치 부여방법, 지수유형 분류 .....	97
<표 V-9> 성평등지수의 점수 변화 추이 .....	99
<표 V-10> 연도별 KGEDI, GGI, GII에 사용된 지표 .....	100
<표 V-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	101
<표 V-12>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	102
<표 V-13>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	103
<표 V-14>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	104

<표 V-15> 동일한 4개의 지표 모두가 5%p 상승할 경우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	104
<표 VI-1>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가족, 복지부문 (1) .....	114
<표 VI-2>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보건, 경제활동부문 (2) .....	116
<표 VI-3>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경제활동, 의사결정직 부문 (3) .....	118
<표 VI-4>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교육·직업훈련, 문화부문 (4) .....	121
<표 VI-5>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안전부문 (5) .....	122

## 그림 차례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	5
<그림 II-1> 지역별 평균 여성 의원 수: 하원 및 단원제 기준 .....	16
<그림 II-2> 지역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 하원 및 단원제 기준 .....	17
<그림 II-3> 할당제 도입 방식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 하원 및 단원제 기준 · 22	
<그림 II-4> 주요 국가의 여성 이사 비율 .....	24
<그림 II-5> 최근 3년간 한국의 여성 이사 및 여성 이사 1인 이상 기업 비율 변화 .....	25
<그림 II-6> 핀란드 기업의 여성대표성과 수익성 .....	27
<그림 III-1> 우리나라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	43
<그림 III-2>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흉악) 여성피해자 수 추이와 전망 .....	45
<그림 IV-1> 국가성평등지수의 평등수준 추이 .....	53
<그림 IV-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	54
<그림 IV-3>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1) .....	55
<그림 IV-4>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2) .....	56
<그림 IV-5> 가족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58
<그림 IV-6> 복지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60
<그림 IV-7> 보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62
<그림 IV-8>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64
<그림 IV-9> 의사결정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66
<그림 IV-10>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68
<그림 IV-11>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70
<그림 IV-12> 안전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	72
<그림 V-1> GII의 구조 .....	80
<그림 V-2> KGEL, GGI, GII의 점수 변화 추이 .....	98





#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국내외 연구동향	6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평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ld Bank(2007)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은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3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성평등한 후진국일수록 빈곤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간의 경제성장률 격차 2.5%p 중에서 0.95%p, 사하라남부 아프리카와 동아시아간의 격차 3.3%p의 0.56%p는 교육수준의 남녀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Klasen, 2002).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에서 각국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현재 192개 국가가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지수란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평등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점과 약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한다(European Commission: 2003).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2009년 여성가족부가, 국가 성평등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였다(여성부; 2009).

이와 같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성평등 상황과 성평등 개선 정도, 그리고 개괄적인 성불평등이 심각한 부문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지수는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Well-being)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정부장관(제2)실 설치 및 여성장관 임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기구나 단체가 발표하는 각종 성평등 수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상당히 낮은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성장과 함께 여성발전을 위해서 성불

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 그리고 사회 각 부문별 성불평등의 원인,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성평등지수 및 부문별 지표를 산정하고, 산정결과를 기초로 성불평등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발굴, 성평등지수와 국가정책 연계 및 활용 방안,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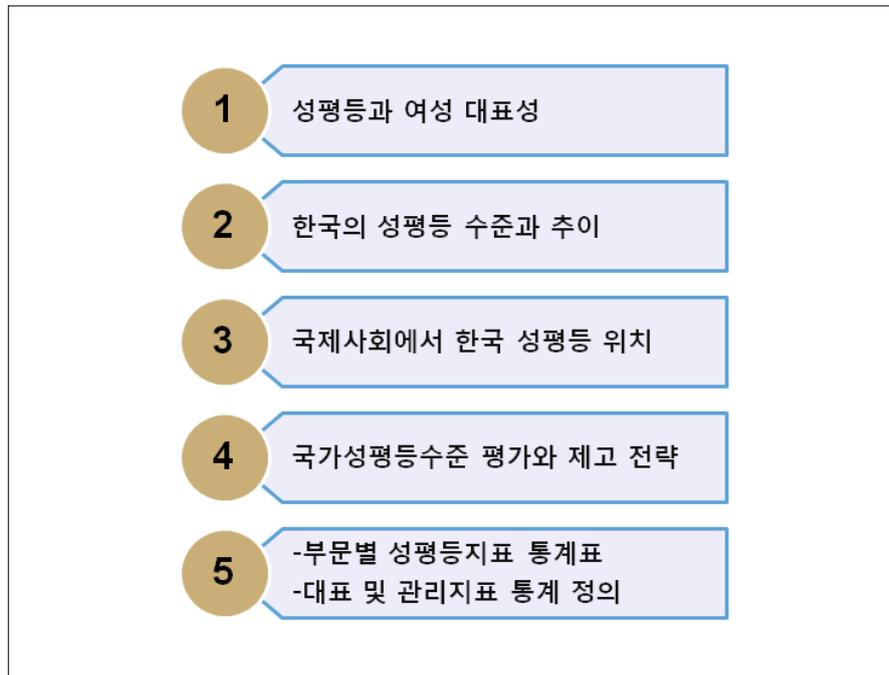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 및 통계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괄적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평등과 여성대표성 간의 관계에 관한 각종 통계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즉, 2010년의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어서 2011년에는 「정치 및 경제 영역 여성 대표성과 할당제」 주제와 관련된 각종 심층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하위영역, 지표 값 등의 내용과 구축방법, 국가성평등지수 산정방법, 그리고 개별지표의 표준화 등 지표 값 산정방법에 대한 방법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가, 현재 및 향후 우리 국가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측정, 정책 자료로 활용할 국가성평등지수 및 부문별 지표를 최종 확정한다. 또한 성평등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정한 관리지표(안)에 대한 관련 행정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하여, 관리지표와 관련 행정부처 및 정책과제를 연계시키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부문별 지표를 활용하여, 2011년 국가성평등수준과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5년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와 변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단위 혹은 영역별 성평등수준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성평등보고

서에서 설정한 한국형 국가성평등지수와 영역별 지표, 그리고 산정방식으로 성평등 수준과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그림 I-1〉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지표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성평등수준과 함께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성평등지수인 UNDP의 GDI, GEM, 세계경제포럼(WEF)의 GGI, Social Watch의 GEI의 과거 및 현재 지수 값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성평등지수인 WEF의 GGI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6장에서는 2011년 국가 성평등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전체 및 영역별 성평등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부문별 성평등지표 통계표를 수록하였다. 즉, 국가성평등지수, 영역별 지표를 구

성하는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에 대한 통계, 통계의 출처 등에 대한 각종 표를 정리하였다.

### 3. 국내외 연구동향

#### 가. 주요 성평등지수 관련 연구

국내외 주요 성평등지표 및 지수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현황을 보면, 먼저 대표적인 성평등지표로는, 유엔개발기구(UNDP)의 GDI(Gender Development Index),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지표가 있다. 동 지표들은 UNDP가 개발한 것으로 남녀평등지수는 3가지 지표(기대수명, 교육정도,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접근정도)로 남녀평등정도, 여성권한측도는 3가지 지표(의회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 소득비율)로 경제 및 정치분야 여성지위를 측정한다.

UNDP는 2010년 2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20주년 기념과 함께 인간개발과 관련된 주요한 지표에 대해 괄목할만한 개혁을 하였다. 즉, UNDP는 불평등을 조정한 인간개발지수와 성불평등지수를 발표하였다.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는 보건, 교육,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인간개발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지수의 세 영역의 손실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개발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손실이 가장 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는 13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 권한,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의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한다. 성불평등으로 인한 이와 같은 영역의 수준(Achievement)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중동국가와 남아시아국가에서 손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한 지수이다. 따라서 GII는 지표와 관련된 자료 대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동 지수는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보건, 권한, 그리고 노동시장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GII는 이들 영역을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에 포괄하고 있다. 즉, 권한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주요한 보완관계(Complementarities)를 반

영하고 있다. 그리고 척도의 어느 것도 국가의 발전수준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제약하면 후진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GII 접근은 국가 수준에서 남녀 불평등 수준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남녀 두 집단을 비교하는 불평등지수와 일관성을 가지며, 남녀 불평등만을 고려한다. GII는 남녀불평등에 따른 핵심영역에서 성취수준의 손실을 파악한다. 지수값은 불평등이 없는 '0'에서 완전불평등인 '1'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지수 값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게 된다. 이것은 영역이 서로 보완적임을 의미하며,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모성사망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불이익은 성불평등에서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GII의 주요한 장점이다. 또한 GII 측정방법에 의하면 특정 영역의 낮은 성취는 다른 영역의 높은 성취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기구(OECD)는 성평등을 가져오는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지표인 GID(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지표를 개발하였다. 동 지수는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성평등관련 제도, 자원에 대한 접근, 경제발전, 여성의 경제적 역할 부문에 세부 지표로 개발된 것이다. 주로 평등과 관련된 제도에 초점을 둔 지표로 국가별로 평등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GGI(Gender Gap Index)는 4개 분야(경제활동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정치적 권력, 보건과 생존)의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2006년 이후 매년 각국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WSF)의 GEI(Gender Equality Index)는 3개 분야(교육, 경제활동, 정치·경제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적 대표성)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각국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성평등지수 및 지표개발 연구로는, 2009년 여성가족부의 수탁연구사업으로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를 산정하였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지표의 지속적인 측정을 통하여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ex)를 개발하고, 매년 산정하여 보고서 발간 및 발표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에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 고용차별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를 개발한 뒤에, 2006년부터 매년 고용평등지표(Equal Employment Index)를 산정,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고용평등정책의 거시적인 효과와 함께 평등수준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해외 및 국내의 성평등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와 함께,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성평등 수준을 산정·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성평등의 국제비교, 지역별 비교 등에 활용되거나,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기간별 성평등수준과 개선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2009년 한국성평등지수를 여성가족부가 개발하였다. 2010년에는 개발된 한국성평등지수의 각 지표와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는 대표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성평등지수를 산정·평가한 『2010년 국가성평등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성평등보고서가 국가의 성평등전략을 수립, 모니터링 하는 지수로 활용되기 위해서 한국성평등지수를 매년 산정, 평가하여 성평등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국내외 성평등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UNDP의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

- 보고서 제목: 『인간개발보고서 2010 - 국가의 실질적 부: 인간개발로 가는 길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 The Real Wealth of Nations: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 보고서 목차:
  - ① 인간개발의 재확인
  - ② 인간개발(The advance of people)
  - ③ 다양한 발전경로: 경제성장과 인간개발의 미스터리, 전 세계의 발전-아이디어와 혁신의 역할, 제도 및 정책 역할과 평등,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시장, 국가, 사회적 계약
  - ④ 함께 오지 않는 좋은 것들: 역량강화(Empowerment), 불평등, 취약성과 지속가능성
  - ⑤ 불평등과 빈곤 측정의 혁신
  - ⑥ 2010년 이후의 의제(Agenda)
  - ⑦ 통계자료

- 인간개발지수와 그 구성요소
- 인간개발지수의 추이, 1980-2010
- 불평등을 조정한 인간개발지수
- 성불평등 지수
- 다차원적 빈곤 지수(MPI)
- 역량
- 지속가능성과 취약성
- 인간 안보
- 개인의 복지(Well-being)와 행복 인식
- 시민과 지역사회 복지
- 인구통계의 추이
- 양질의 일자리
- 교육
- 보건
- 가용한 환경: 재정흐름과 투입
- 가용한 환경: 경제와 사회기반 시설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접근권

## 2) WEF의 성평등격차보고서

- 보고서 제목: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 보고서 목차:
  - ① 성평등격차 측정(Measuring the Global Gender Gap)
    - 2010 세계 성평등지수
    - 부록 A: 연도별 추이(2006-2010)
    - 부록 B: 지역·소득층 분류(아시아태평양,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북아프리카, 북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과 중앙 아시아/저소득층, 하위중산층, 상위중산층, 고소득층)
    - 부록 C: 지수에 따른 최소·최대값의 분포
  - ② 국가별 개요(Country Profiles)
    - 국가 목록
    - 사용자 가이드: 국가별 목록의 사용
    - 국가별 개요

### 3) Social Watch의 성평등보고서

- 보고서 제목: 『Social Watch Report 2010 - After the fall: A citizens' global progress report on poverty eradication and gender equity』
- 보고서 목차:
  - ① 주제별 보고서(THEMATIC REPORTS)
    - 경제위기: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Edward Oyugi, Center of Concern
    - 위기시대의 성: 필요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Social Watch Gender Working Group
    - UN Women 탄생: 정책 격차의 어려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Genoveva Tisheva and Barbara Adams
    - 국제 기후: 코펜하겐 붕괴-Md Shamsuddoha
    - 주요한 주식보유량: 인권과 환경 증진을 위해 재무레버리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Andrea Baranes, Mauro Meggiolaro
    - 유럽개발기금의 민영화: 유럽투자은행의 역할-Antonio Tricarico, coordinator
    - 리스본 조약과 유럽 개발 정책을 위한 새로운 관점-Mirjam van Reisen Simon stocker
    - 아랍(The Arab states)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사회 정의 없는 진전은 없다(No progress without social justice)-Ziad Abdel Samad, Executive Director
  - ② 개선정도(MEASURING PROGRESS)
    - Basic Capabilities Index(BCI), 성평등지수(GEI), 개발지원위원국의 공식적인 사무개발지원, 공공 지출, 새천년조약에 언급된 국제적 조약의 비준 상태, 기본적인 국제적 노동조직협약의 비준
  - ③ 국가별 보고서(NATIONAL REPORTS)
    - 국가별 성평등수준
      - ※ Gender Equity Index(GEI)와 Basic Capabilities Index(BCI) 제시

### 4) 북아일랜드의 성평등지수(GEI)

- 보고서 제목: 『북아일랜드의 성평등지수 (Gender Equity Indicators for Northern Ireland: A Discussion Document)』
- 보고서 목차:
  - ① 서론
  - ② 성인지 연구

- ③ 북아일랜드의 성인지 이슈 관련 가용 데이터
  - 태도, 교육과 훈련, 고용, 근로소득, 소득, 육아, 간병의 다른 형태 건강, 이동, 폭력과 범죄, 의사결정
- ④ 북아일랜드, 영국, 아일랜드의 일반적 성불평등 형태
- ⑤ 국제적 맥락과 예
  - 주류와 성 평등 지표
  - 성 평등 지표의 예
  - 성 평등 지표 관련 주요 정책 분야
  - 지표의 의미와 사용
- ⑥ 북아일랜드 성평등 지표 개발을 위한 방안들

## 5)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및 지수

- 보고서 제목: 『2010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 보고서 목차:
  - ① 서론
  - ②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지수 산출 결과
    -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 서울시 성인지지수 산출 결과
    - 종합평가
  - ③ 국제 비교
    - 여성의 경제세력화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 ④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발
    - 서울시 여성친화도시기표 개요
    - 영역별 대표지표 및 관리지표
    - 사회조사
  - ⑤ 결론
    - 연구요약 및 합의
    -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II

# 정치 및 경제 영역의 여성대표성 및 할당제

- |                |    |
|----------------|----|
| 1. 정치 영역 여성대표성 | 15 |
| 2. 경제 영역 여성대표성 | 23 |



## 1. 정치 영역 여성대표성

### 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현황

정치 영역은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노력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예컨대 UN, OECD, WEF 등 주요 국제기구의 성평등지수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사회에서는 여성할당제 등을 통해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영역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7월 현재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187개 국가 가운데 여성의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르완다, 안도라 등 2개 국가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성의원 비율인 40-50%인 국가는 스웨덴, 남아프리카, 쿠바,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5개 국가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의원 비율이 30-40%인 국가는 노르웨이, 벨기에, 모잠비크 등 19개 국가로 나타난다. 한편 여성의원비율이 20-30%인 경우는 통티모르, 스위스, 영국, 핀란드 등 45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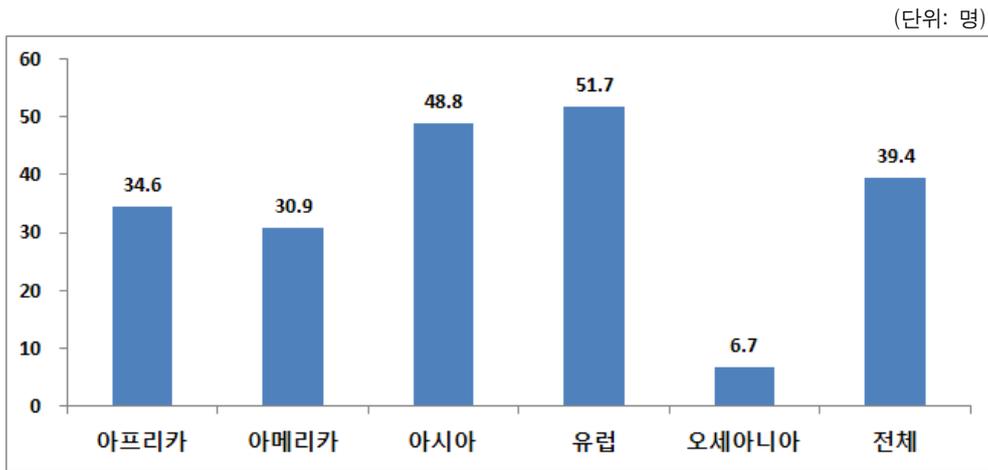
반면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제의원연맹 회원국의 약 1/3에 해당하는 68개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은 10-20%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원 비율이 0.1-10% 미만인 국가는 39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벨리즈,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오만, 팔라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솔로몬 제도, 투발루 등 9개 국가는 최근에 시행된 하원선거 등에서 여성의원이 1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2,987명 가운데 여성의원은 637명 21.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일의 여성의원 수가 204명으로 전체 의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쿠바의 여성의원은 253명으로 전체 의석의 43.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세인트키츠네비, 통가, 마셜제도 등 16개 국가에서의 여성의원이 1명 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수가 5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시아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수가 48.8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수는 전체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수 39.4명에 미치지 못하는 34.6명과 30.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수는 6.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성의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유럽지역 국가의 경우에는 여성의원 수가 많은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과 유사한 17.6%와 17.9%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만,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시아지역과 오세아니아지역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14.2%와 6.0%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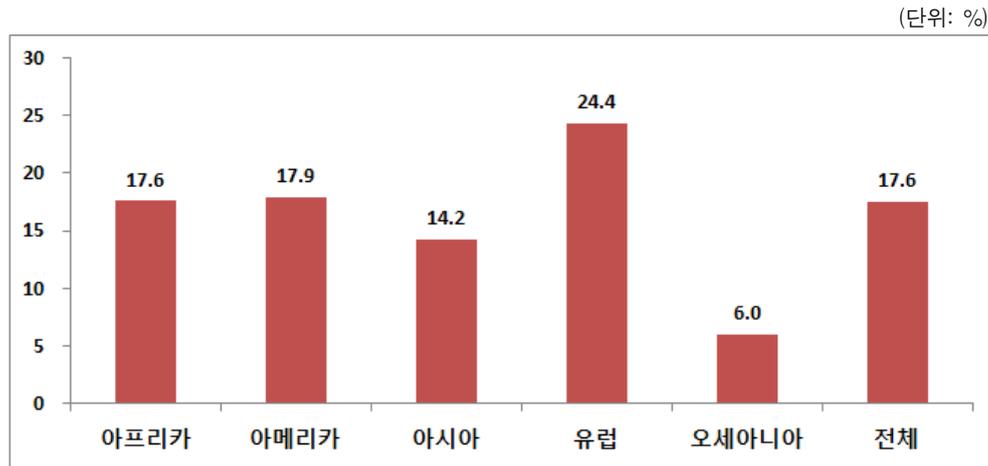


자료: IPU WOMEN IN PARLIAMENTS를 바탕으로 구성

〈그림 II-1〉 지역별 평균 여성 의원 수: 하원 및 단원제 기준

여성의원 비율별 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의원비율이 10.0-19.9%에 해당하는 국가가 187개 국가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하는 68개 국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국가의 약 1/4에 해당하는 45개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이 20.0-29.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이 10.0-19.9%인 국가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은 여성의원 비율이 10.0-19.9%와 20.0-29.9%에 해당하는 국가가 각각 14개

국가(32.6%)로 나타난 반면 오세아니아지역 국가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국가(46.2%)의 여성의원 비율이 0.1-0.9%로 나타났다.



자료: IPU WOMEN IN PARLIAMENTS를 바탕으로 구성

〈그림 II-2〉 지역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 하원 및 단원제 기준

〈표 II-1〉 여성 의원비율별 국가 분포: 하원 및 단원제 기준

(단위: 국가 수, %)

국가	0%	0.1~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이상	전체
아프리카	0 0.0	12 24.0	21 42.0	10 20.0	5 10.0	1 2.0	1 2.0	50 100.0
아메리카	1 2.9	5 14.3	17 48.6	7 20.0	4 11.4	1 2.9	0 0.0	35 100.0
아시아	3 6.5	13 28.3	16 34.8	13 28.3	1 2.2	0 0.0	0 0.0	46 100.0
유럽	0 0.0	3 7.0	14 32.6	14 32.6	8 18.6	3 7.0	1 2.3	43 100.0
오세아니아	5 38.5	6 46.2	0 0.0	1 7.7	1 7.7	0 0.0	0 0.0	13 100.0
전체	9 4.8	39 20.9	68 36.4	45 24.1	19 10.2	5 2.7	2 1.1	187 100.0

자료: IPU WOMEN IN PARLIAMENTS를 바탕으로 구성

## 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효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정치·경제적 삶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좀 더 많은 국가는 부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행동의 차이에 원인이 있다.

Dollar 외(2001)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덜 이기적이고,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 즉, 여성이 남성들보다 덜 이기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성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Goetz(2007)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 가능성이 적은 것을 남성 네트워크에서의 배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즉, 남성 후원 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여성은 부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여성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법 교환 규칙에 익숙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신뢰받는 행동의 위치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이외에도 상공 분야와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사회적인 형평성 뿐 만 아니라 부패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Azfar, Knack와 Lee, 1999). 또한, 여성이 남을 돕는 태도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Eagly와 Crowley, 1986), 여성이 사회이슈에 바탕을 두고 선거권을 행사(Goertzel, 1983)은 하고, 여성이 정직성 테스트(integrity tests)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Ones와 Viswesvaran, 1998) 것은 여성의 부패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Glover, Bumpus, Logan과 Ciesla(1997), Reiss와 Mitra(1998)는 여성이 윤리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Eckel과 Grossman(1998)은 여성이 경제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갖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4, 2005년도에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바탕을 둔 진중순·서성아(2007)의 연구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박광국(1996)의 연구도 여성이 남성보다 관료부패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부동산 투기, 올바른 시민의식 결여, 공무원 매수 등 우리사

회의 병리현상에 대해서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진중순, 2009).

#### 다.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할당제 도입 현황

각 국가의 여성의원 확대를 위한 정치영역의 할당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영역의 할당제는 헌법 또는 법률에 기반하여 시행된다. 1995년 우간다 공화국의 헌법은 39개 지역에서 각각 하나의 의석수를 여성에게 부여했다(13%). 이것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다. 몇몇 여성들은 특별히 여성에게 할당된 의석수가 아닌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 1990년대에 11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적 선거에 여성후보자를 최소 20%에서 40%까지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는 지방선거에서 30% 할당제를 시행한 첫 번째 국가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대표선거제의 폐쇄목록비례(the closed-list proportional) 뿐 만 아니라 불응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인 여성의 대표성 향상에 공헌하였다. 인도의 74차 헌법 개정 은 여성이 지방자치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가 33%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여성운동은 교육수준이 있는 여성후보자들이 이루어졌고, 하원의원에 대한 여성할당제가 제안되었다.

여성의석제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방글라데시(전체 330석 중의 30석, 또는 9%),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탄자니아(여성이 차지하는 국회의석은 전체 의석의 20%, 지방의회의석은 25%), 에리트리아(전체 105의석 중 10석)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9년 헌법조항에 의해 남녀 선거직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여성선거 후보자의 비율이 50%가 되어야 하고 만약 이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당은 재정적 벌칙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북유럽 국가에서는 정당에 의한 할당제가 발달하였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는 정치적으로 높은 여성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유럽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가이다. 이것은 대부분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다. 2002년 스웨덴 의회의 전체 의원 중 여성의원은 43%, 덴마크는 38%, 노르웨이는 36%를 구성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헌법조항이나 법률은 높은 대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성의원의 높은 증가는 일반적으로 여성운동뿐 아니라 정당 내 여성집단의

지속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다. 여성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증가시키도록 그리고 여성후보자가 공정한 기회의 승리자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동원했다. 이러한 압력단체는 스칸디나비아 모든 정당에 적용된다. 몇몇 정당은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스칸디나비아의 세 국가에서 할당제는 정당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1983년에 노르웨이의 노동당(Labour Party)은 “모든 선거와 지명에서 두 성별이 각각 적어도 40%를 대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1988년 덴마크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은 “각각의 성별(남성, 여성)은 지방, 지역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의 후보자 최소 40%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sup>1)</sup> 1994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은 “every second on the list a woman”의 원리를 소개했다. 이것은 남성이 첫 번째로 선거 후보자의 명단에 있으면 그 다음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오면 그 다음 여성이 오고,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의 104개 국가 가운데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13개 국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적 규정 없이 정당이 자율적으로 여성의원 할당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38개 국가, 정당의 자율적 할당제와 헌법 또는 선거법 등 법적 규정에 의한 할당제가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는 15개, 헌법 또는 선거법 등 법적 규정에 의해서는 할당제는 실시하는 국가는 38개 국가로 나타났다.

할당제 도입 방식별로 평균 여성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할당제는 도입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할당제를 도입한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은 평균 15.5%로 전체 평균 21.5%에 비해 6.0%p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당에 의한 할당제, 정당 및 법적 규정에 동시 있는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은 각각 21.6%와 21.7%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 또는 선거법 등 법적 규정에만 근거하여 할당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여성의원 비율이 23.3%로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덴마크 사회민주당이 도입한 후보자 할당제는 1996년 폐지되었다(Quota Project의 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 참조)

한편, IPU의 여성의원 비율 정보와 Quota Project의 여성의원 할당제 정보를 동시에 갖는 100개 국가를 중심으로 할당제 도입 방식별 여성의원 비율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어떠한 형태의 할당제도 시행하지 않는 13개 국가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이 10.0-19.9%인 국가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국가(46.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원비율이 0.1-9.9%인 국가는 4개 국가(30.8%)이다.

반면 법적 규정만으로 여성의원 할당제를 시행하는 36개 국가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이 20.0-29.9%, 30.0-39.9%인 경우는 각각 16개 국가(44.4%)와 7개 국가(19.4%)로 이들 국가의 2/3 이상이 여성의원비율이 2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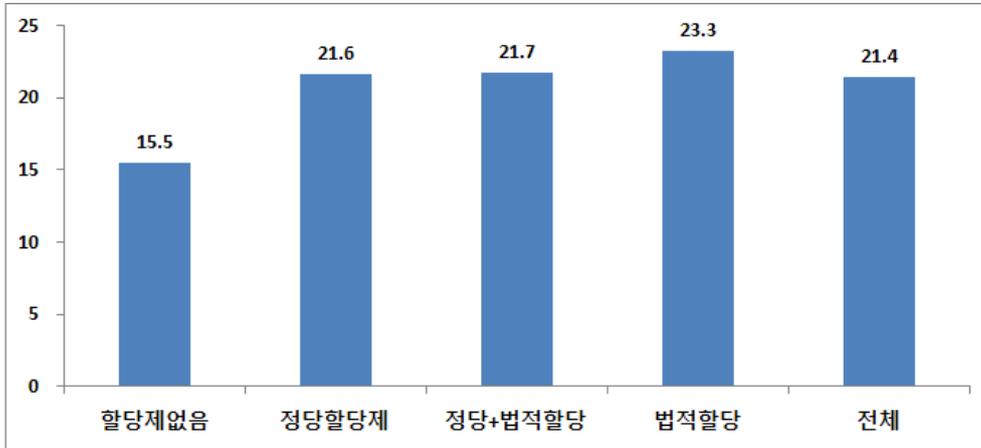
〈표 II-2〉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현황: 하원 및 단원제 기준

(단위: 국가 수, %)

국가	할당제 없음	정당 할당제	정당+ 법적할당	법적할당	전체
아프리카	3	10	2	15	30
	10.0	33.3	6.7	50.0	100.0
아메리카	4	5	9	4	22
	18.2	22.7	40.9	18.2	100.0
아시아	4	4	1	12	21
	19.0	19.0	4.8	57.1	100.0
유럽	2	18	3	7	30
	6.7	60.0	10.0	23.3	100.0
오세아니아	0	1	0	0	1
	0.0	100.0	0.0	0.0	100.0
전체	13	38	15	38	104
	12.5	36.5	14.4	36.5	100.0

자료: Quota Project 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을 바탕으로 구성.

(단위: %)



자료: Quota Project 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와 IPU WOMEN IN PARLIAMENTS를 바탕으로 구성.

〈그림 II-3〉 할당제 도입 방식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 하원 및 단원제 기준

〈표 II-3〉 할당제 도입방식별 여성 의원 비율 분포: 하원 및 단원제 기준

(단위: 국가 수, %)

구분	0.1~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이상	전체
할당제 없음	4	6	2	1	0	0	13
	30.8	46.2	15.4	7.7	0.0	0.0	100.0
정당할당제	4	14	11	4	3	0	36
	11.1	38.9	30.6	11.1	8.3	0.0	100.0
정당+법적할당	2	6	3	4	0	0	15
	13.3	40.0	20.0	26.7	0.0	0.0	100.0
법적할당	3	9	16	7	0	1	36
	8.3	25.0	44.4	19.4	0.0	2.8	100.0
전체	13	35	32	16	3	1	100
	13.0	35.0	32.0	16.0	3.0	1.0	100.0

자료: Quota Project 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와 IPU WOMEN IN PARLIAMENTS를 바탕으로 구성.

## 2. 경제 영역 여성대표성

### 가.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현황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 이사회 여성 참여 현황을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민간 컨설팅 업체인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이하 GMI)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월 현재 한국의 91개 주요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여성 이사 비율이 39.5%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이 2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여성 이사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과 여성 이사가 1인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09년 1.1%였던 한국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2010년 1.5%, 2011년 1.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이사가 1인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09년 9.3%, 2010년 13.6%, 2011년 15.4%로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이사가 3명 이상인 기업은 지난 3년간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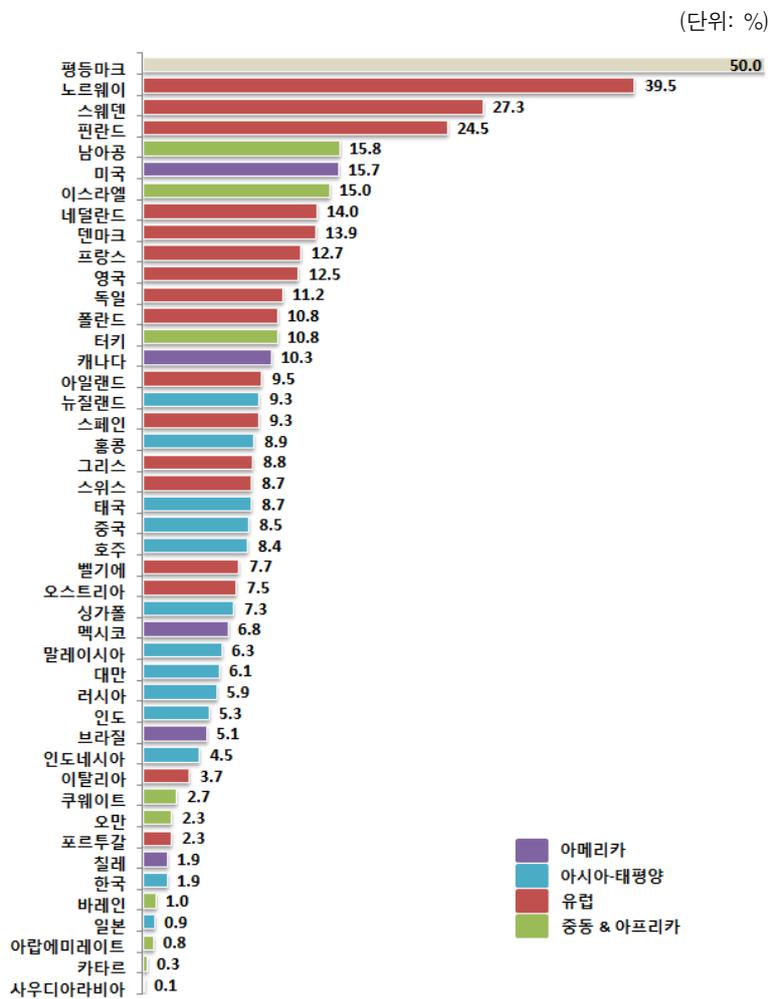
그리고 2011년 현재 여성 이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매업(Retail) 14.6%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4.8%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여성 이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방송매체업(Media)으로 2009년 11.0%에서 2011년 13.8%로 2.8%p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관광여가업과 건설재료업의 여성 이사 비율이 각각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보건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11.7%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GMI가 발표한 자료에서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체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현재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공공시설업(Utillities) 74.7%로 나타났다. 이어서 방송매체업 73.6%, 소매업 73.4% 등의 순으로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초자원업(Basic Resources) 41.5%, 자동차부

품업 43.8% 등에서는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화학제품제조업 7.1%p로 나타났다. 이어서 식품음료제조업에서 같은 기간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은 7.0%p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공공시설업과 기초자원업에서는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있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1.0%p와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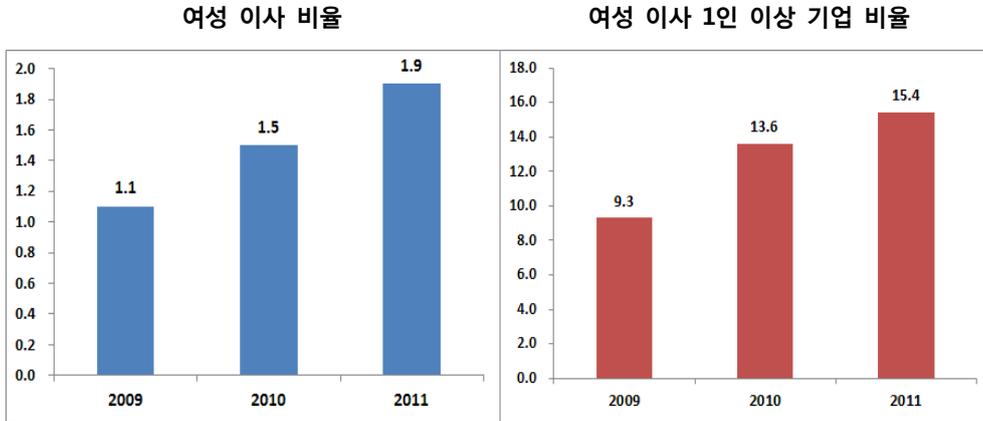


주 : 평등마크는 전체 중 여성이 50%로 완전평등을 의미함.

자료: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2011. 2011Women on Boards Report.

〈그림 II-4〉 주요 국가의 여성 이사 비율

(단위: %)



자료: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2011. 2011Women on Boards Report.

〈그림 II-5〉 최근 3년간 한국의 여성 이사 및 여성 이사 1인 이상 기업 비율 변화

〈표 II-4〉 GMI 조사대상 기업 업종별 여성 이사 비율

(단위: 개, %, %p)

업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 2009-2011
자동차부품제조업	76	77	80	45	4	4.8	0.3
은행업	291	284	295	11.0	11	11.3	0.3
기초자원업	205	229	241	6.6	6	6.9	0.3
화학제품제조업	136	129	130	7.8	8	8.4	0.6
건축재료업	145	150	158	6.1	7	7.6	1.5
금융서비스업	238	260	244	9.1	10	9.8	0.7
식품음료제조업	154	152	156	9.4	10	10.6	1.2
보건업	253	265	263	11.7	11	11.7	0.0
산업제품서비스업	664	648	638	7.5	8	8.1	0.6
보험업	148	156	164	10.9	11	12.1	1.2
방송매체업	142	127	121	11.0	12	13.8	2.8
원유 및 천연가스업	239	257	262	7.5	7	7.6	0.1
개인가정용품업	235	215	219	10.4	11	11.4	0.9
부동산업	211	214	220	9.1	9	9.6	0.6
소매업	256	249	263	14.0	14	14.6	0.6
기술업	370	356	353	7.0	8	7.8	0.7
통신업	109	111	111	10.1	10	10.8	0.7
여행레저업	161	159	161	8.4	9	9.9	1.5
공공시설업	169	179	190	11.2	11	11.6	0.3
<b>전체</b>	<b>4202</b>	<b>4217</b>	<b>4269</b>				

자료: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2011. 2011Women on Boards Report.

〈표 II-5〉 GMI 조사 대상 기업 업종별 여성 이사 1인 이상 기업체 비율

(단위: 개, %, %p)

업종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2011
자동차부품제조업	76	77	80	45	4	4.8	0.3
은행업	291	284	295	11.0	11	11.3	0.3
기초지원업	205	229	241	6.6	6	6.9	0.3
화학제품제조업	136	129	130	7.8	8	8.4	0.6
건축재료업	145	150	158	6.1	7	7.6	1.5
금융서비스업	238	260	244	9.1	10	9.8	0.7
식품음료제조업	154	152	156	9.4	10	10.6	1.2
보건업	253	265	263	11.7	11	11.7	0.0
산업제품서비스업	664	648	638	7.5	8	8.1	0.6
보험업	148	156	164	10.9	11	12.1	1.2
방송매체업	142	127	121	11.0	12	13.8	2.8
원유 및 천연가스업	239	257	262	7.5	7	7.6	0.1
개인가정용품업	235	215	219	10.4	11	11.4	0.9
부동산업	211	214	220	9.1	9	9.6	0.6
소매업	256	249	263	14.0	14	14.6	0.6
기술업	370	356	353	7.0	8	7.8	0.7
통신업	109	111	111	10.1	10	10.8	0.7
여행레저업	161	159	161	8.4	9	9.9	1.5
공공시설업	169	179	190	11.2	11	11.6	0.3
<b>전체</b>	<b>4202</b>	<b>4217</b>	<b>4269</b>				

자료: 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 2011. 2011 Women on Board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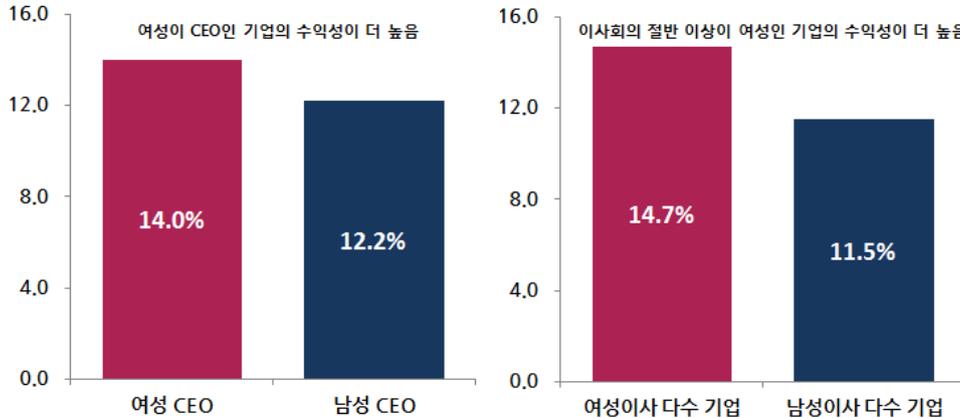
## 나.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참여 확대 효과

그렇다면 국외 기업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는 왜 기업 의사결정직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거시경제적 측면과 미시경제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OECD(2008)는 1995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성평등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남녀의 고용격차 완화가 선진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인구 고령화와 연금 부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여성 고용 확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의 직업 경력은 고학력 여성의 숙련 수준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적자원과 역량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미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성평등의 실현을 통해 개별 기업들이 근로자와 소비자의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혜택이 강조된다. 예컨대 Annu Kotiranta 외(2007)는 2003년 현재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핀란드 기업 표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성 CEO 기업의 평균 수익성이 남성 CEO 기업의 평균 수익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 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평균 수익성도 남성 이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Kotiranta, A. et al. 2007. Female Leadership and Profitability

〈그림 II-6〉 핀란드 기업의 여성대표성과 수익성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기업 이사회나 회계감사 위원회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의 재정 보고, 회계 감사, 조직 내부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근로자와 이사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함에 따라 기업의 창조성과

혁신이 촉진되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이 여성친화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남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유능한 인재 풀을 구성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사회적인 평판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의사결정직에 여성을 포함함으로써 소비자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기업 의사결정직 여성 할당제 도입 현황

기업 의사결정직의 여성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들의 노력을 여성 이사 할당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국가는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 노르웨이는 2003년부터 민간부문의 주식회사, 국영기업,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 여성 이사 비율은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 할당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간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2010년 현재 민간기업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는 1990년대부터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2000년대에 들어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한 경우는 캐나다의 퀘벡, 독일의 베를린과 뉘른베르크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2010년 현재 민간 및 공공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6〉 주요 국가의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 현황: 2010년 현재

구분	국가	도입연도	여성비율 목표 및 달성년도	대상기업
민간기업	노르웨이	2003	40%(2008)	주식회사, 국영기업, 지방공사
	스페인	2007	40%(2015)	250인 이상 주식회사
	아이슬란드	2010	40%(2013)	50인 이상 주식회사 및 개인유한회사
	프랑스	2010	20%(2013), 40%(2016)	주식회사
	네덜란드	2010	30%(이사회및고위관리직, 즉시)	250인 이상 주식회사
국영기업	덴마크	2009	30%(즉시)	국영기업
	핀란드	2004	40%(2005)	국영기업
	아이슬란드	2006	50%:50%, 또는 이사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최대한 동수에 가깝도록 함 (즉시)	국영기업및지방공사
	아일랜드	2004	40%(nodeadline)	국영기업
	이스라엘	1993	30%(nodeadline)	국영기업
	남아프리카	1996	30%(nodeadline)	국영기업
	스위스	2006	30%(2011)	국영기업
지방공사	퀘벡	2006	50%(2011)	퀘벡주 지방공사
	베를린	2002	50%(즉시)	베를린주 지방공사
	뉘렌베르크	2009	40%(2014)	지자체지원기업및공동출자기업
할당제 예정	벨기에		33%(7년 후)	주식회사및국영기업
	캐나다		50%(3년 후)	모든상장회사, 금융기관, 국영기업
	이탈리아		33%	상장회사

자료: Pande, R., and Ford, D. 2011. "Gender Quotas and Female Leadership: A Review" Background Paper for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on Gender.



III

##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방법

- |                  |    |
|------------------|----|
|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 33 |
|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 41 |



## 1.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체계

### 가. 성평등과 국가성평등지수

#### 1) 성평등과 지수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여러 가지 정량적, 정성적 차원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개념이다<sup>2)</sup>. UN OSAGI와 UNDP 등에 의하면 남녀 간의 평등, 즉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평등은 남녀 양 집단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식하여, 그들 각각의 관심, 요구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평등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에 관심을 갖고 완전히 참여시켜야 한다<sup>3)</sup>.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성평등을 남녀가 인권 실현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발전에 대한 기여와 수혜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sup>4)</sup>. 유럽연합(EU)은 성평등을 다양한 차원과 의미를 가진 복잡한 용어로 본다. 유럽연합은 성평등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평등이 기본적인 권리며 유럽연합의 공동된 가치인 동시에 유럽연합의 성장, 고용 그리고 사회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6개 분야로, 남녀의 동등한 경제적 독립, 개인적인 삶과 직업생활의 조화, 의사결정직의 평등한 대표성, 성에 기초한 제반 유형의 폭력 근절, 성 고정관념의

2) 성평등을 gender equality, gender equity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그러나 UN에 의하면, 성형평(gender equity)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에 따른 남녀 간의 자원과 혜택의 공정한 배분(fair distribution)을 말한다. 그러나 형평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 왜냐하면 형평은 국가에 따라 지역 특수적인 정의(definitions)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상속을 적게 받는 상황이 특정한 지역적 관점에서는 ‘공정(fair)’하기 때문에 평등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엔(UN) 내부에서는 남녀평등(gender equality)을 남녀형평(gender equity)보다 선호함.

3) UN OSAGI(2010), *Important Concepts Underlying Gender Mainstreaming*. <http://www.un.org/womenwatch/osagi/conceptsanddefinitions.htm> OSAGI는 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Advancement of Women의 약어임.

4) J. Jütting and D. Drechsle(2007), *Gender and Development : Introducing the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 Base*, OECD. World Bank(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 pp. 2~3.

근절, 발전정책에서의 성평등 촉진을 설정하였다<sup>5)</sup>.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제반 삶의 영역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권리’ 및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6)</sup>.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국내 성평등정책을 수립·모니터링·환류함과 동시에 국민의 성평등 인식 제고라는 지수 개발목적을 감안하여 성평등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에서의 성평등은 여성가족부와 UN의 성평등 정의에 기초하여, ‘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반 삶의 영역에서 남녀 동등한 ‘참여’와 동등한 ‘권리’ 및 ‘이익’을 향유하는 상태를 성평등이라고 했다.

## 2) 국가성평등지수의 특징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는 성평등 정의와 지수생산 목적에 따라, 투입(Input or means)지표가 아닌 성과(Outcome)지표로 구축되었다. 현재 성평등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측정,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지수(GEI),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권한척도(GEM)는 성과지표,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IGI)는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지표로 구성된 SIGI의 경우, 지수로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쉬워, 정책 원인 및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투입지표로 구성된 지수 값이 높더라도, 실제 성평등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가치(Difference) 혹은 비(Ratio)로서 측정할 수 있다. 주요 성평등지수 중,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지수(GEI)는 지표의 격차로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이에 비해 UNDP의 남녀평등지수(GDI), 여성

5) EU(2006), *A Roadmap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06~2010*.

6)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여성 정책가이드.

권한척도(GEM)는 지표의 격차와 수준(Level)을 함께 고려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의 남녀 성취수준과 격차가 모두 성평등지수에 산정됨으로써,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성평등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표의 격차와 수준을 측정하여 성평등수준을 산정할 경우, 성평등수준 개선이 지표수준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남녀격차의 개선에 기인한 것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남녀격차를 기준으로 성평등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는, 국가 전체와 각 부문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을 보면 성평등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지표와 함께 각 부문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관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산정의 목적이 성평등 달성과 여성 지위와 권한 향상 중,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지표구성도 달라진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과 관리 목적은 성평등 달성뿐만 아니라 여성지위 및 권한 향상에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대표지표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관리지표는 남녀격차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지위 및 권한을 나타내는 지표, 예컨대 제왕절개분만을 등 여성특화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 나. 국가성평등지수 부문과 지표

국가성평등지수는 8개 부문(Dim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여성개발원(2006) 연구에서는 성평등지표를 9개 부문 즉,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과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건강, 복지, 문화, 폭력과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13개 부문 즉,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영역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8대 부문 즉,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부문을 선정하였다. 성평등지수가 이와 같이 8개 부문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수준을 포괄할 수 있으며, 또한 범정부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정책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선정과정은, 먼저 8개 부문별로 각 부문 전문가가 작성한 226개 성평등지표풀(pool)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1차 149개를 조사대상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8개 부문별 성평등분야 전문가집단인 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149개 지표에 대해서 중요도(0~10점)와 우선순위(1~5순위), 해당 부문별로 개발이 필요한 신규 지표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중에서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대표지표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추이,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국가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따라서 대표지표(Representative indicator)는 대표성 있는 표본조사(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survey)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남녀성비(Female-to-male ratio)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으면서, 대표지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선정하였다<sup>7)</sup>. 그리고 대표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을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성평등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라는 의미에서 관리지표(Administrative indicator)라고 했다. 이와 같은 관리지표에는 여성특화지표(Female-specific indicator)와 같이 남녀 성비를 산정할 수 없으나 여성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표도 담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나 현재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생산되고 있더라도 생산주기가 길거나 통계적 대표성이 없는 표본으로 조사되고 있는 지표 등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도록 관리할 수 있게 관리지표에 포함시켰다.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지수 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과 추이, 그리고 각 부문별 성평등수준과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지표와 관련된 각 행정부처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 연구에 의해서 선정된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에 대하여 여성가족

7)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 대표지표를 선정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홍 외(2009), pp. 159~196 참조.

부 주관으로 관련 행정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지표조정을 하였다.

먼저 200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선정되었던 8개 부문 21개 대표지표에 대한 협의결과, 연구초안에 포함되었던 보건부문의 대표지표인 ‘성별 건강수명’ 지표의 경우 생산주기가 상당히 불규칙하고, 지표 값이 완전평등 수준인 ‘1’에 도달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성별 격차’는 3년 주기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지표로 대체하였다. 대체된 지표는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이면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며 매년 생산되는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지표이다. 그리고 안전부문의 대표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범죄피해자 성별 격차’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피해자의 성비’로 대체하였다. 이와 같이 대체한 이유는 범죄 중에서 재산범죄,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등의 경우 성별 재산소유나 경제활동참가 차이가 성별 범죄피해자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sup>8)</sup>. 이에 따라 연구결과와 행정부처의 협의·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표지표는 <표 III-1>의 8개 부문, 20개 지표이다.

여성가족부와 관련 행정부처의 관리지표에 대한 협의는 주로, 지표명 및 지표내용 변경, 지표 추가, 생산주기 조정, 책임운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2011년 행정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관리지표는 <표 III-2>에서와 같이, 가족부문 4개, 복지 4개, 보건 6개, 경제활동 5개, 의사결정 8개, 교육·직업훈련 9개, 문화·정보 5개, 그리고 안전부문 3개로 총 44개 이다.

---

8)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재산범죄 피해자의 경우 남성 310천명, 여성 146천명임. 대검찰청(2009), 범죄분석.

〈표 Ⅲ-1〉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부문 대표지표

부문 (지표 수)	연번 <sup>2)</sup>	부문별 대표지표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① 가족 (2개)	1-1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여성가족부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여성가족부
② 복지 (3개)	2-1	빈곤 가구주의 성비	보건복지부
	2-2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 교육과학기술부 · 행정안전부
	2-3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③ 보건 (2개)	3-1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3-2	건강보험 임원급여 수급자의 성비	보건복지부
④ 경제활동 (3개)	4-1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고용노동부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sup>1)</sup>	고용노동부
	4-3	상용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⑤ 의사결정 (3개)	5-1	국회의원의 성비	국회사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5-3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고용노동부
⑥ 교육 · 직업훈련 (3개)	6-1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sup>1)</sup>	교육과학기술부
	6-2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성비	교육과학기술부
	6-3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⑦ 문화 · 정보 (2개)	7-1	여가시간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7-2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⑧ 안전 (2개)	8-1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sup>3)</sup>	법무부 · 경찰청
	8-3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의 성비	법무부 · 경찰청

주: <sup>1)</sup> 격차(Gap)는 차이(Difference)를 나타냄. 이에 따라 실제 계산은 남녀 상대비(Relative ratio)인 성비(Sex ratio)로 계산함.

<sup>2)</sup> 연번은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어 행정부처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표에 부여한 숫자

<sup>3)</sup> 2010년 통계청 조사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으로 지표를 변경함.

〈표 Ⅲ-2〉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1)

부 문	연번	지표명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① 가족 (4개)	1-1	성별 육아휴직자 수	고용노동부
	1-2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여성가족부
	1-3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비율	여성가족부
	1-4	성별 생계책임 의식	여성가족부
② 복지 (4개)	2-5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
	2-6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교육과학기술부
	2-7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보건복지부
	2-8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노동부
③ 보건 (6개)	3-9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
	3-10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율	보건복지부
	3-11	성별 건강검진 검진율	보건복지부
	3-12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보건복지부
	3-13	성별 활동제한일수	보건복지부
	3-14	성별 자살 생각률	보건복지부
④ 경제활동 (5개)	4-15	전문직 여성비율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4-16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노동부
	4-17	성별 대졸자 실업률	고용노동부
	4-18	성별 평균 근속연수	고용노동부
	4-19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보건복지부
⑤ 의사결정 (8개)	5-20	관리직 여성비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5-21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5-22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5-23	성별 대학교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5-24	성별 공무원 수	행정안전부
	5-25	여성 장·차관 비율	행정안전부
	5-26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찰청, 경찰청
	5-27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표 Ⅲ-3〉 국가성평등지수의 부문별 관리지표(2)

부 문	연번	지표명	책임관리기관/협조기관
⑥ 교육·직업 훈련(9)	6-28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교육과학기술부
	6-29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6-30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교육과학기술부
	6-31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
	6-32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과학기술부
	6-33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교육과학기술부
	6-34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교육과학기술부
	6-35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고용노동부
	6-36	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참여자 중 여성비율	고용노동부
⑦ 문화·정보 (5개)	7-37	성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문화체육관광부
	7-38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체육관광부
	7-39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평소 1주일)	문화체육관광부
	7-40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체육관광부
	7-41	성별 문화기반시설기관장	문화체육관광부
⑧ 안전 (3개)	8-42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법무부·경찰청
	8-43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법무부·경찰청
	8-44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법무부·경찰청

## 2.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방법

국가성평등지수는 아래의 5 단계를 거쳐서 구축 및 산정하였다.

1단계: 모든 지표 값을 성비(Female-to-male ratio)로 전환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대표지표의 값을 먼저 남녀비율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부문의 경우 국회의원 299명 중에서 남성의원 258명, 여성의원 41명이면, 지표 값을 「 $41/258=0.159$ 」로 전환시킨다. 대부분의 지표 값은 성비로 전환하나, (셋째 아) 출생성비는 표준화를 통해서 지표 값을 비율로 전환시켰다. 이와 같이 전환된 지수는 수준 그 자체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달성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성평등지표 중에서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의 활용과 관련이 있다. 즉,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고, 식사하고, 씻는 등의 시간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간(Necessary Time)이라고 한다<sup>9)</sup>. 일반적으로 이러한 필수적인 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이외에 고용계약 등과 같이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유급노동, 가사노동, 학습과 같은 의무생활시간 혹은 계약생활시간(Contracted Time)이 있다. 의무생활시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남녀 취업률 차이 등으로 인해서 성별로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미디어사용, 교제, 종교·문화·스포츠, 취미 및 그 외에 여가를 포괄하는 여가생활시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가정 내의 남녀 불평등 의식이나 관행뿐만 아니라, 남녀 성역할분업 등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급경제활동시간 즉, 계약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비취업자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짧다. 이에 따라 남성취업자와 여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같고 남성미취업자와 여성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같아서 성평등 하더라도, 남녀 취업률이 서로 다

9) Dagfinn As(1978)는, 필수적인 시간(Necessary Time), 계약시간(Contracted Time), 주택구입, 혼인 및 출산, 가사활동, 종교 및 자원봉사활동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참여활동시간(Committed Time), 그리고 앞의 3가지 유형의 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을 자유시간(Free Time)으로 생활시간을 구분함. Dagfinn As(1978), Studies of Time-Use: Problems and Prospects, Acta Sociologica 1978-Vol. 21-No. 2, pp.125~141

르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의 성비는 취업상태를 통제하고 산정하였다. 즉, 남녀취업률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남녀 각각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미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을 단순 평균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산정하였다. 여가시간 또한 가사노동시간과 동일하게 노동시장의 유급경제활동시간 즉, 계약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여가노동시간의 성비는 취업상태를 통제하고 산정하였다.

또한 일부 성평등지표는 성비(Female-to-male ratio)의 역수로 전환시켰다. 예컨대 가사노동시간,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수, 범죄피해자 지표는 통계 값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시간과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수,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표의 경우, 성비의 역수(Male-to-female ratio)로 전환시켰다.

## 2 단계: 일부 지표는 표준화(Normalization)

대표지표 중에서 (셋째 아) 출생성비는 자연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가 1.06이기 때문에, 출생아동의 ‘여성/남성’ 성비의 완전 평등한 수준은 자연출생성비 수준의 역수인 0.944가 평균기준점(Equality benchmark)이 된다. 일반적으로 평균기준점이 ‘1’과 다를 경우에, 지표 값이 클수록 성평등한 경우에는 아래 (1)과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표준화한다. 그리고 지표 값이 작을수록 성평등한 경우에는 아래 (2)와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표준화시켰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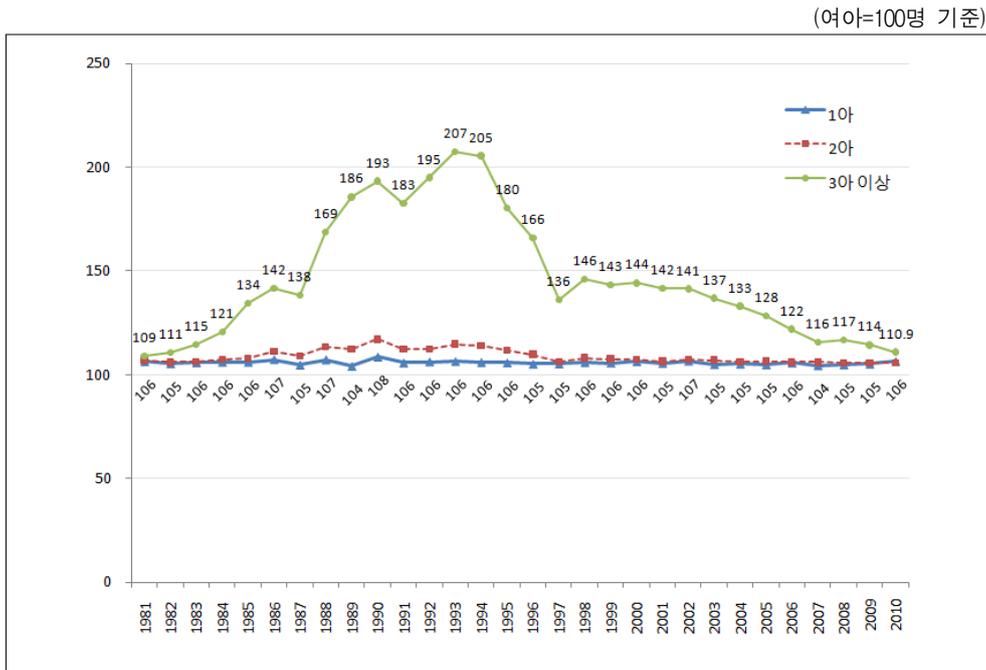
$$x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quad (1)$$

$$x = [(\text{Max}(x) - x) / (\text{Max}(x) - \text{Min}(x))] \quad (2)$$

국가성평등지수에서는 1980년 이후 셋째아 출생성비가 가장 높았던 1993-1994년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2.0(1993년, 1994년은 각각 2.029, 2.027)로 하고 (<그림 III-1> 참조), 최저점을 UN이 설정한 자연출생성비(Natural sex ratio)인

10) 지수의 표준화방법은, 서열화  $I = \text{Rank}(x)$ , 정규화  $I = (x - x_m) / \sigma$ , 최소-최대  $I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 참고점(reference point)로부터 거리, 범주별 점수화, 평균 이상과 이하의 점수화 등 크게 9가지가 있음. 표준화방법과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2008), pp. 27~30.

1.06으로 하였다. 그리고 출생성비 지표 값의 표준화를 통한 비율은 위의 식 (2)의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자료: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Ⅲ-1〉 우리나라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변화 추이

안전부문 지표 중 하나인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성비의 지표 값은 다른 지표와는 달리 지표의 남녀 격차(Gap)로 산정하지 않고, 격차와 수준을 모두 감안하여 산정하였다. 즉, 격차로 지표 값을 산정하면 남녀 모두 강력범죄 피해자가 급격히 감소하여도 남녀 범죄피해자 격차가 이전과 동일하면, 지표 값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 격차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남녀 범죄피해자가 모두 감소되면 여성에 대한 안전이 증가함으로 지표 값도 증가하는 형태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는 아래의 식(3)과 같이 동등분포 등가지수(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형태로 산정방식을 설정하였다. 아래의 식에서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에서 안전한 여성비율과 남성비율을 나타낸다.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인구비율과 불안정한 인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는 참고수준(Reference point)을 설정해야 한다.

먼저 강력범죄(흉악범)에서 안전한 기준점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전혀 없는 10만 명 당 '0명'이 될 것이다. 강력범죄로부터 가장 불안정한 참고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보면 전체 10만명 50.0명, 여성은 10만명당 79명, 남성은 23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수는 일본의 전체 8,314명 즉, 10만명당 6.5명, 남성 6.3명, 여성 5.7명 그리고 미국의 10만명 19.3명, 남성 21.3명, 여성 17.3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sup>11)</sup> 즉,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피해자 수준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재도 상당히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를 불안정한 참고수준으로 설정하면 지표 값이 곧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피해자 수를 불안정한 참고수준으로 설정하면, 지표 값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과거 여성 피해자 수의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10만명 당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전망하면, <그림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후인 2015년에 10만명 당 피해자 수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현재와 같은 강력범죄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2015년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100명으로, 2009년 일본의 피해자 수준보다 15배나 많고 2008년 미국의 5배나 많은 수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지표 값이 '0'이 되는 즉, 강력범죄로부터 가장 불안정한 참고수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100명을 설정하였다.

강력범죄 피해자 수의 지표 값은 작을수록 성평등한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아래 식 (4)와 같은 표준화함수를 사용하여 강력범죄 피해자를 나타내는 지표 값을 표준화시켰다. 여기서  $Max(x)$ 와  $Min(x)$ 은 각각 인구 10만명 당 100명과 0명,  $x$ 는 인구 10만명 당 실제 피해자 수를 나타낸다. 식 (4)에서  $S_m$ ,  $S_f$ 는 각각 남녀의 강력범죄에서 안전한 인구비율을 나타내고,  $pm$ 과  $pf$ 은 전체인구 중에서 남성과 여성비율,  $\varepsilon$ 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정도(Parameter of inequality aversion)를 나타낸다. 차별에 대한 패널티는  $\varepsilon=2$ 로 설정하였다.<sup>12)</sup>

11) 일본은 警察廳(2010), 『平成21年の犯罪』자료로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고, 미국은 Bureau of Justice Statistics(2011),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8, May 12, 2011의 자료임. 미국 통계는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강력범죄(흉악범)에서 방화범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높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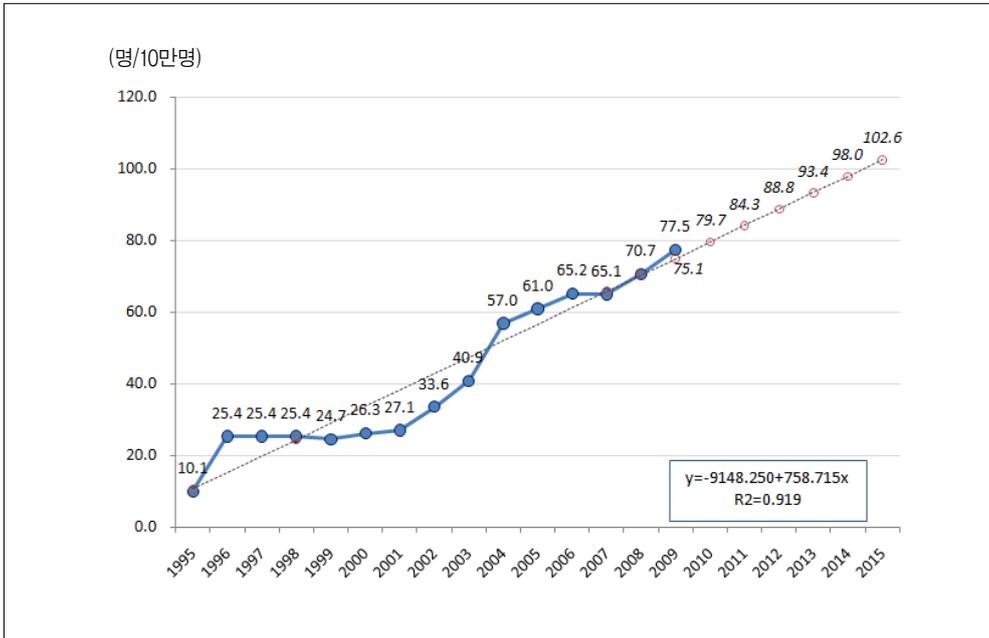
12)  $\varepsilon$  값이 크면 클수록 성불평등에 대해 혐오가 크음을 나타냄. 따라서  $\varepsilon=0$ 로 설정하면 불

$$X = [pf \cdot (Sf)^{1-\varepsilon} + pm \cdot (Sm)^{1-\varepsilon}]^{1-\varepsilon} \quad \varepsilon \geq 0 \ \& \ \varepsilon \neq 1$$

$$X = [pf \cdot (Sf)^{(-1)} + pm \cdot (Sm)^{(-1)}]^{(-1)} \quad (3)$$

$$Sf \ \text{or} \ Sm = [(Max(x) - x) / (Max(x) - Min(x))] \quad (4)$$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 피해자 수)



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그림 Ⅲ-2〉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흉악) 여성피해자 수 추이와 전망

3 단계: 비율로 전환된 값에 가중치(Weight)를 부여

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평등지표의 지수 값을 산정할 경우, 해당 성평등지표의 대상이 되는 남녀인구로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부문의 5급 이상 직급의 공무원 성비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5급 이상 남성공무원'에 대해서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조정한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성비의 지표 값은, [(5급 이상 직급

평등에 대한 혐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불평등지수 값을 산정할 때  $\varepsilon=2$ 로 설정함.

의 여성공무원/전체 여성공무원) / (5급 이상 직급의 남성공무원/전체 남성공무원)] 즉, 가중치인 (전체 남성공무원 수/전체 여성공무원 수) X (5급 이상 직급의 여성공무원/5급 이상 직급의 남성공무원)로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성평등 지표의 성비에 대해서 각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남성인구에 대한 여성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한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 남성임금근로자에 대한 여성임금근로자 비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한다. 다만,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수의 가중치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구성비를 그대로 사용한다(<표 III-3> 참조). 그리고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각 부문의 성평등지표의 1~3단계를 통한 지표 값 계산 방식은 <표 III-4>와 같다.

4 단계: 부문별 지수의 점수를 산정

부문별 각 성평등지표의 지수는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부문별 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GGI는 각 하위영역 지수에 속하는 지표의 가중평균해서 점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즉, GGI 지수의 경우 지표 값의 표준편차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산정하는데, 이것은 표준편차가 큰 측정치에 보다 많이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편차가 작은 성평등지표에 높은 가중치를 줌으로써, 이러한 지표의 남녀격차가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페널티를 받도록 설계하였다<sup>13)</sup>. 그러나 국가성평등지수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지수들은 부문별 지수 값을 단순 평균하여 산정한다.

<표 III-4> 부문별 성평등지표 산정에 적용되는 가중치

부문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부문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가 족		의사결정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	국회의원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전체 공무원 수의 성비 역수
		관리재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AA대상 기업 근로자의 성비 역수

13) GGI의 교육부문의 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을 보면, 2009년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표준편차가 적은 초등학교 취학률(표준편차: 0.060)의 가중치가 0.459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중등학교(표준편차: 0.120) 0.230, 고등교육기관(표준편차: 0.228) 0.121 순이었음. WEF(2009), p.5.

부문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부문별 성평등지표	가중치
복 지		교육·직업훈련	
빈곤 가구의 성비	가구의 가구주 성비 역수	성별 평균교육연수 격차(성비)	-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20~59세 인구 성비 역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
장애인 고용율의 성비	-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보 건		문화·정보	
건강관련 삶의 질의 성별 격차	-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건강보험 가입률의 성비	전체인구의 성비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15세 이상 인구의 성비 역수
경제활동		안 전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전체인구의 성비 역수
성별 임금 격차(성비)	-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	전체인구의 성비
상용근로자의 성비	임금근로자 성비 역수		

주: 여기서 성비는 지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남성/여성」비율을 나타냄.

5 단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

국가성평등지수는 서로 다른 8개 부문의 하위지표들로 구성된 종합지표(Composite Indicators)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성평등지수 값을 이용하여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산정할 경우, 각 부문에 지수 값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성평등지수의 경우, 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Weight)를 계층적 분석법(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산정하였다<sup>14)</sup>.

먼저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성평등 관련 전문가인 교수, 연구자,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8개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계층적 분석하여 산정된 가중치를 보면, 경제활동 및 소득 부문이 0.19, 교육 0.14, 복지와 의사결정이 각각 0.13, 안전 0.12, 가족 0.11, 보건 0.10, 그리고 문화·정보 부문의 가중치가 0.08이었다<sup>15)</sup>. 이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는 각 부문별 지수 값에 해당 부문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였다.

14) 종합지수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은, 지수의 성격에 따라서 계층적 분석법(AHP) 이외에 주성분분석 혹은 요인분석법, 여론분석법, 예산배분분석(Budget Allocation Process) 자료포괄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등이 있음. OECD(2008), pp. 89~98.  
 15) 전문가 조사 결과, 부문별 가중치의 일관성 비율(CR)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Ⅲ-5〉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별 지수 산정 산식

부 문	지표 계산방법	계산 산식
가족		
가사노동	남녀취업구조를 통제한 가사시간 성비 (역수)	$X = 1 / [W_{Em} \times T_{Em} + W_{NEf} \times T_{Nm}] / [W_{Ef} \times T_{Ef} + W_{NEf} \times T_{Nf}]$
출생성비(남아)	자연출생성비로 조정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X = [ ( \text{Max} - ( \text{NCHm} / \text{NCRf} ) ) ] / [ \text{Max} - \text{Nsr} ]$
복지		
연금가입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연금가입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빈곤가구주	대상 남녀가구주비율로 조정된 빈곤가구주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장애인 취업자	대상 남녀장애인구비율로 조정된 장애인취업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	남녀인구의 건강관련 삶의 지수 성비	$X = [ F / M ]$
건강보험진료 수급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임원급여 수급자 성비 (역수)	$X = W_{mf} \times [ 1 / ( F / M ) ]$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인구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경제활동인구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임금격차	남녀근로자의 임금 성비	$X = [ F / M ]$
상용근로자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상용직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의사결정		
국회의원수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국회의원의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공무원(5급 이상)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관리자(과장 이상)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관리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부 문	지표 계산방법	계산식
교육·직업훈련		
교육년수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평균교육연수의 성비	$X = [ F / M ]$
취학률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성비	$X = [ F / M ]$
직업훈련참가자	대상 남녀임금근로자비율로 조정된 직업훈련참가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문화·정보		
여가시간	남녀취업구조를 통제한 여가시간 성비	$X = [ 1/2 \times (W\_Em \times T\_Em + W\_NEm \times T\_Nm) ] / [ 1/2 \times (W\_Ef \times T\_Ef + W\_NEf \times T\_Nf) ]$
문화산업남성종사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문화산업종사자 성비	$X = W\_mf \times [ F / M ]$
안전		
사회안전 인식	대상 인구비율로 조정된 사회안전 인식집단 성비	$X = W\_mf \times [ ( F / M ) ]$
범죄피해자	대상 남녀인구비율로 조정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역수)	$X = [ pf (Sf)^{(-1)} + pm(S\_m)^{(-1)} ]$

주: 1) F, M은 각각 해당 지표 여성지표 값과 남성지표 값을 나타냄.  
 2) W\_mf : 가중치(Weight)로서 해당 지표의 적용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여성인구/남성인구)의 역수  
 3) W\_Em, W\_Ef : 지표대상인 남성 중에서 취업자 비율, 남성 중에서 취업을 각각 나타내는 가중치  
 4) 출생성비의 최대값은 2.0(우리나라 1993~1994년 셋째 아 출생성비 2.029, 2.027 참고값)과 최저값은 자연출생성비(UN의 1.06)을 기준으로 산정  
 NCHm: 남아출생아 수, NCRf : 여아출생아 수, Nsr: UN이 설정한 자연출생아 성비  
 5) pf, pm: 지표 대상 인구의 여성비율, 남성비율, Sf, Sm은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에서 안전한 남녀비율을 나타낸다.



## IV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 수준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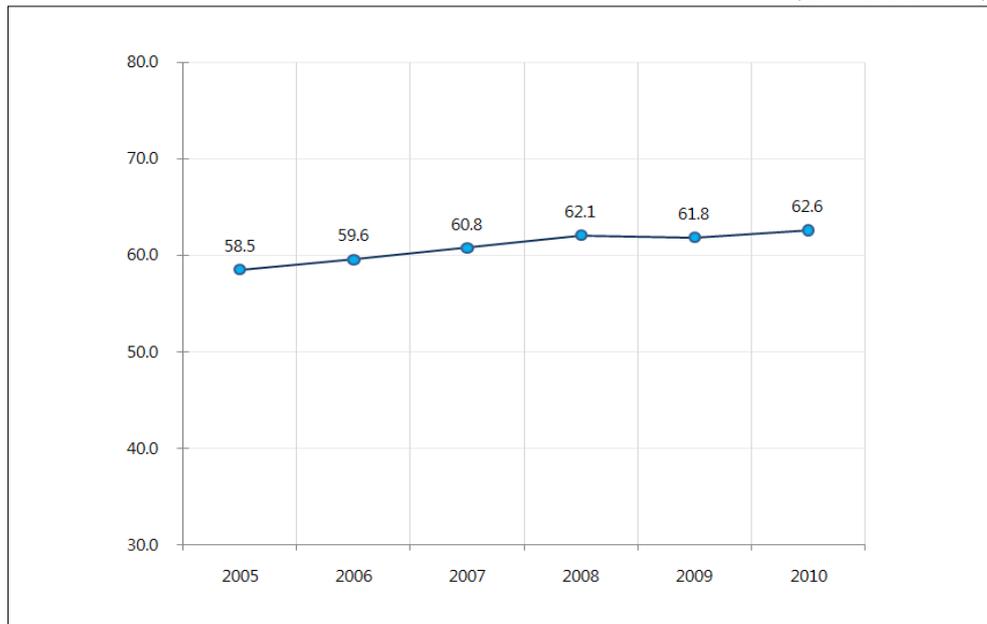
- |                        |    |
|------------------------|----|
|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특징      | 53 |
|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 57 |



###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과 특징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값 범주는 완전불평등을 나타내는 '0.0'부터 완전평등을 나타내는 '100.0'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수 값이 높아질수록 성평등수준이 높아진다. 2010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 값은 62.6으로 지난해보다 0.8p 증가하였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2005년 58.5에서 2008년 62.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일시적으로 61.8로 0.3p 하락하였다가, 금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국가성평등지수 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9년 일시적으로 소폭 악화된 이후 2010년에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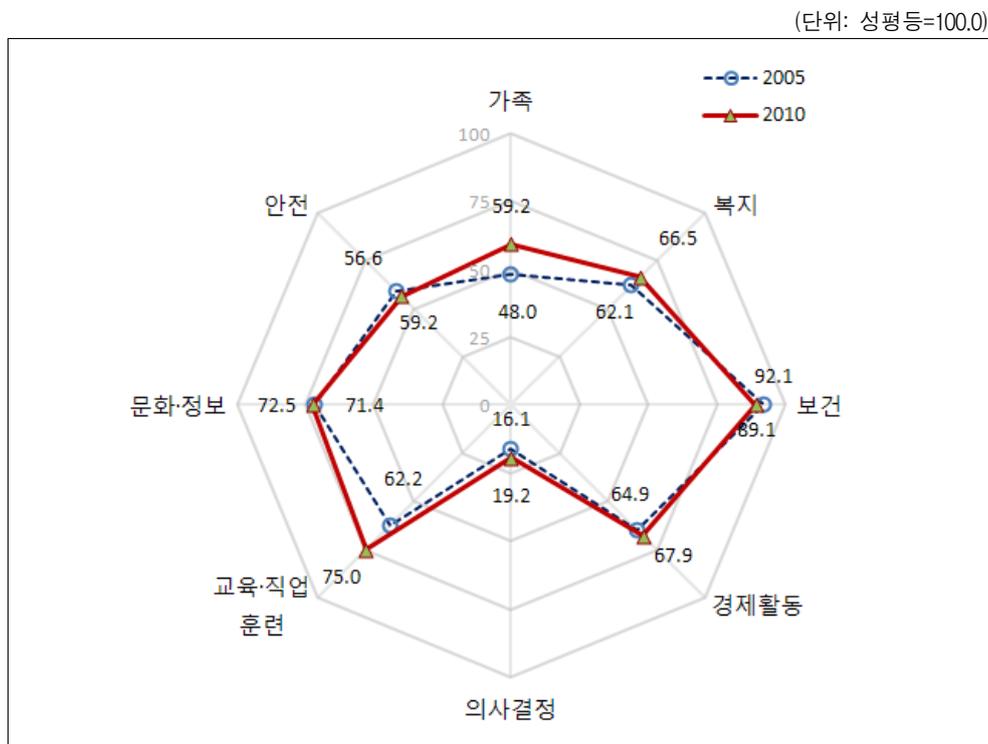
(단위: 성평등=100.0)



〈그림 IV-1〉 국가성평등지수의 평등수준 추이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부문별로 보면, 2010년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부문, 문화·정보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다. 그리고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

결정직부문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그림 IV-2>). 부문별 성평등수준을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교육·직업훈련부문이었다. 그 다음은 가족, 복지, 의사결정, 경제활동, 문화·정보부문을 순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건부문과 안전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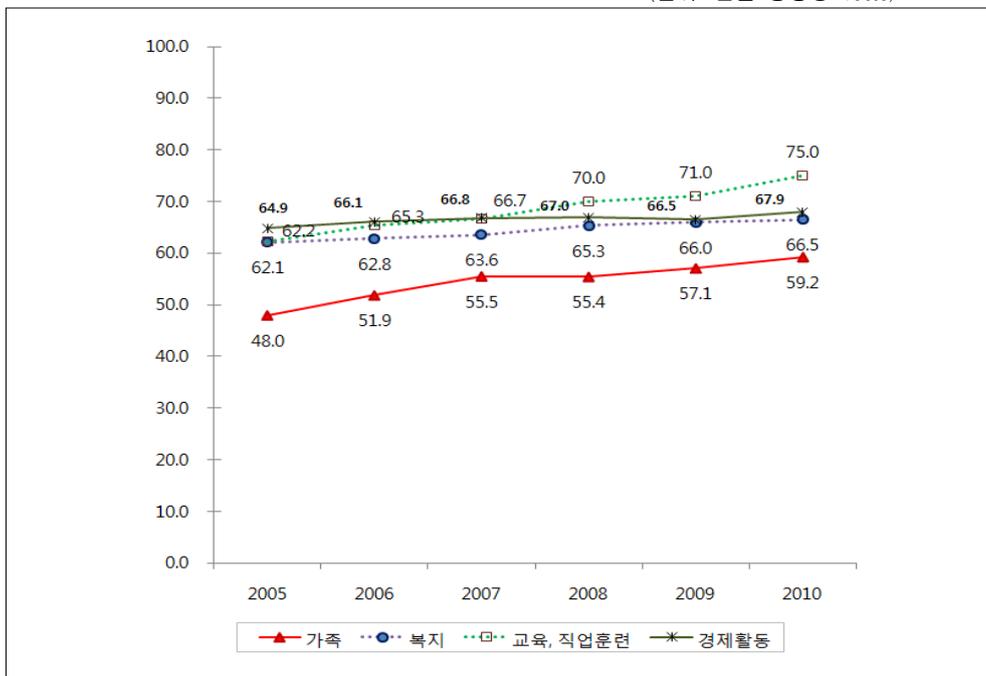
주: 부문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지수 값임.

〈그림 IV-2〉 부문별 우리나라 성평등수준

부문별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먼저 복지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영역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62.1에서 2008년 65.3, 그리고 2010년에는 66.5로 상승하였다. 가족부문은 2005년 성평등지표 값이 48.0이었으나, 2007년 55.5, 그리고 2010년 59.2로 급증하여, 8개 영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두 번째 가장 크게 향상된 영역으로 나타났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 결과 성평등지표 값이 2005년 62.2에서 2010년 75.0으로 상승하여, 성평등지표 8개 영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영역이 되었다.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성평등수준이 다소 악화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기회복이 되면서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은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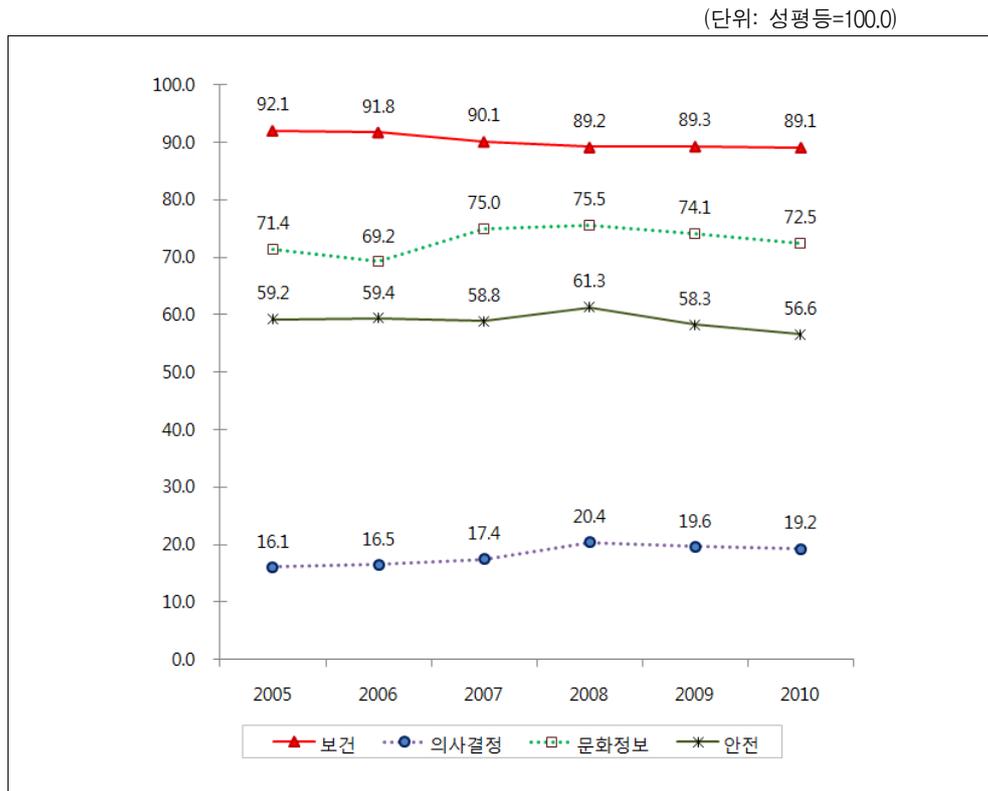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3〉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1)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92.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89.2이었다. 그 이후 2009년에는 보건부문의 성평등수준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0년 지수 값이 89.1로 다시 하락하였다.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이후 다른 영역에 비해서 등락이 심했다. 상승 추이를 보였던 성평등수준은 2008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하여, 지표 값이 2009년에는 74.1, 2010년 72.5로 하락하였다.

안전부문의 성평등지수는 2005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08년에 지표 값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 즉, 2008년 61.3이었던 지표 값이 2009년에는 58.3, 그리고 2010년에는 56.6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IV-4〉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2)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 성평등수준이 가장 낮은 의사결정부문을 보면, 2005~2008년까지 지표 값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9.6, 그리고 2010년에는 19.2로 하락하였다. 즉, 의사결정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평등수준이 낮은 부문인데, 2008년 이후에는 성평등수준이 더욱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 2. 부문별 성평등수준 변화 추이와 특징

### 가. 가족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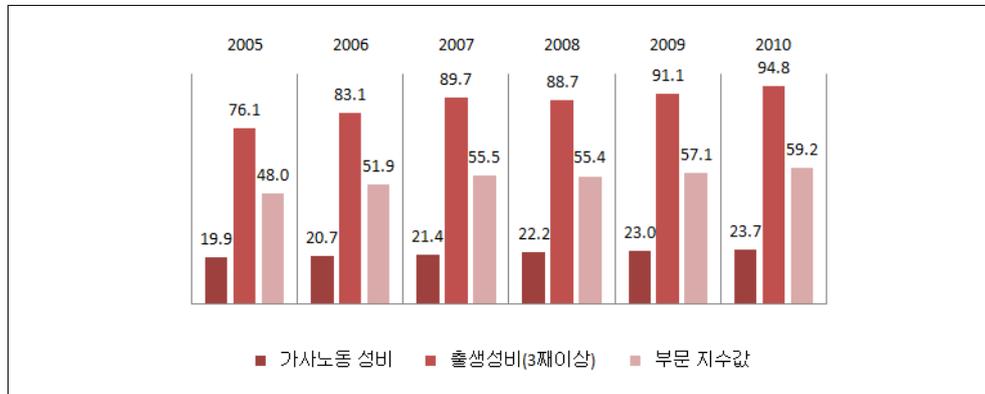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변화 추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족부문의 성평등수준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낮다. 그러나 <그림 I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셋째 아 출생성비와 가사노동 성비가 모두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부문의 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2005년 가족부문 성평등지표가 48.0이었으나, 2009년에는 57.1 그리고 2010년에는 59.2로 상승하였다.

가족부문의 성평등지표 중에서 먼저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보면, 2000년 남아 출생아 수가 332.6천명인데 비해 여아가 301.9천명으로 성비가 110.2이었다. 이후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07.8, 2009년 106.4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 106.7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출생성비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으나,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를 보면 첫째 아와 셋째 아 이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첫째 아 출생성비는 이미 2000년에 자연출생성비인 106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0년 이후 첫째 아 출생성비는 104.5~106.5 수준에서 변동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104.5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6.9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출생성비는 2000년에 144.2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셋째 아 출생성비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5년 128.5, 그리고 2007년 115.7로 하락하였다. 2008년에는 출생성비가 116.7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9년 114.3, 2010년 110.9이었다.<sup>16)</sup>

16) 지역별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127.5), 대구시(124.5), 울산시(123.5), 부산시(120.3) 등이 상당히 높았고, 충청남도(104.0), 대전시(105.6) 등은 자연출생성비를 보였다. 통계청(2011), 『2010년 출생·사망통계(확정)』, 2011. 8.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5〉 가족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그러나 셋째 아의 출생성비는 여전히 자연출생성비보다 높아서 남아선호사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I-2>). 이에 따라 출생성비의 지표 값이 2007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제외하면, 2005년 76.1, 2009년 91.1, 그리고 2010년에는 94.8로 점차 개선되었다.

가족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2004년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31분, 비취업자 55분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은 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36분, 비취업자 4시간 53분으로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남성취업자의 가사노동시간은 36분, 비취업자 1시간 4분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취업자는 2시간 34분, 비취업자 4시간 41분으로 소폭 감소하여, 남녀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성불평등이 심한 상태에 있다. 2010년에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 여성의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가사노동관련 지표 값을 산정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 나. 복지부문

복지부문은 2005년 성평등지표 값이 62.1이었으나, 2009년 66.0으로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66.5를 나타내었다. 복지부문 개별 성평등지표 변화를 보면, 먼저 공적연금가입율의 성비는 2009년 61.8에서 2010년에도 65.3으로 증가하여, 공적

연금분야의 성불평등이 개선되었다.

성평등지표별로 보면 남성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2008년 59.8%에서 2009년 59.7% 그리고 2010년 61.8%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 가입율도 2008년 35.4%에서 2009년 37.0% 그리고 2010년 4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남녀 가입률 증가는 국민연금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국민연금가입자는 남녀 각각 2009년 0.3%, 4.9% 그리고 2010년 2.0%, 7.6%가 증가하여, 특히 여성 가입자 증가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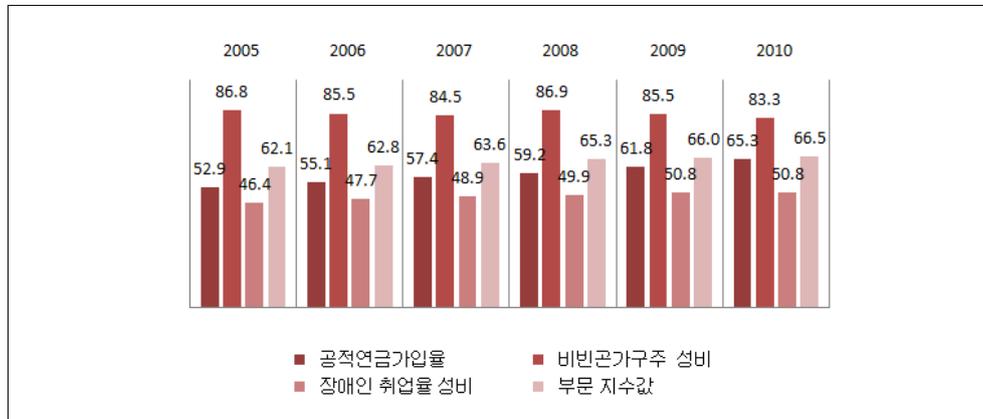
이와 같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증가는 임의가입과 사업장가입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즉, 임의가입자는 2008년 370명, 2009년 8,754명이 증가했으나, 2010년에는 53,854명이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임의가입자가 46,210명(전년대비 169.6%), 남성 7,644명(83.9%)으로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임의가입자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2010년 7월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를 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한 데 기인한다. 이외에도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증가하였고,<sup>17)</sup>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데 기인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도 2010년에 여성 292천명(증가율 8.2%), 남성 255천명(4.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장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2010년 여성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이 외에 사학연금가입자에서도 여성이 2010년 4.5%(증가 인원 5,382명), 남성 0.3%(491명) 증가하여, 여성가입자 증가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증가규모가 적었다. 이와 같은 남녀 공적연금가입자의 변화로 인해서, 동지표의 값은 2005년 52.9에서 2008년 59.2, 2009년 61.8 그리고 2010년에는 65.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 취업률 지표를 보면,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2000년 19.5%, 2005년 20.2%, 2008년 23.7% 그리고 2009년 2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성장애인 고용율도 2005년 43.5%, 2008년 47.6% 그리고 2009년 51.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성평등지표 값도 2005년 46.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49.9, 2009년과 2010년 각각 50.8을 나타냈다.

17) 18세 이상 여성 가구주의 노후준비 방법을 보면, 국민연금 37.6%로 가장 선호하고 있음. 이 외에 예금 및 적금 28.3%, 사적연금 20.1%, 기타 14.0%임. 통계청(2010), 「2009년 사회조사」.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6〉 복지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마지막으로 남녀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을 보면,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2005년도 22.9%에서 2006년 23.7%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도 21.9%로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2007년 이후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여 2008년 23.8%, 2009년도에는 24.3%이었다<sup>18)</sup>. 이에 비해 남성가구주 빈곤율은 2005년도 9.2%에서 2006년도 8.8%로 소폭 하락하였다. 2007년 이후에 9.0~9.1%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008년 9.0%, 2009년 9.1%이었다.

이에 따라 가구주 중에서 빈곤선 이상에 있는 가구주 성비 즉,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8년 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2008년 이후 성평등지표 값이 86.9에서 2009년 85.5, 2010년 83.3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sup>19)</sup> 이와 같이 2010년에 남녀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사별 여성가구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배우 여성가주구가 증가한데 기인한다.<sup>20)</sup> 이와 같이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 여성 가구주

18) 2009년까지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주 빈곤율 산정을 하였으나, 2010년부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기초로 산정함. 이에 따라 2003년~2009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전가구기준 연간, 1인 가구, 농어가가구 제외)을 2010년 기준자료를 사용함.

19) 성평등지표 값 산정은 기준 연도보다 한 해 이전의 통계를 사용함.

가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보건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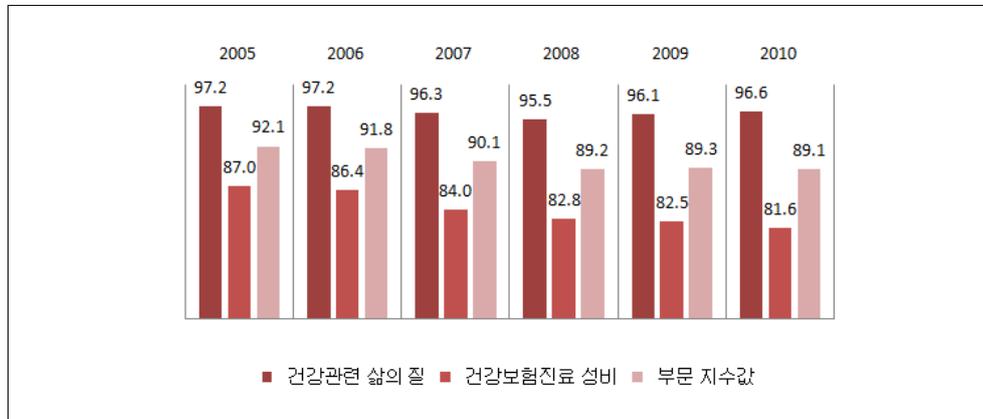
보건부문 성평등수준은 가장 성평등수준이 높은 부문이나, 성평등수준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2010년에도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되어 성평등 지표 값은 2009년 89.3보다 높은 89.1로, 성평등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성평등지표 값의 변화를 보면, 먼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EQ-5D에서 19세 이상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 값은 2005년 0.926, 2008 0.918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0.940, 그리고 2010년에는 0.966으로 증가하였다.<sup>21)</sup>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지표 값이 하락 즉, 건강관련 삶의 질이 하락하였다. 연령별 남녀 EQ-5D 격차를 보면, 19~29세의 경우 남녀 각각 0.981, 0.973으로 차이가 0.008이었다. 40~49세는 각각 0.979, 0.965로 차이가 0.014, 60~69세 각각 0.926, 0.867로서 0.059, 그리고 70세 이상은 각각 0.851, 0.785로서 0.066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컸다. 그리고 전년 대비 2010년 연령별 건강관련 삶의 질 개선 정도를 보면 여성의 개선정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연령층은 70세 이상이었고, 그 다음은 60대, 20대 순이었다. 즉, 2010년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성불평등은 2005~2008년까지는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개선되는 추이가 이어졌다.

20) 2010년 여성 가구주의 변동을 보면 혼인상태 중에서 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사별 여성 가구주가 1.0% 증가하고, 그 다음으로 소득이 있는 유배우가 있는 여성가구주가 2.9%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통계는 비임금소득이나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통계청(2009, 2010).

21)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5가지 차원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임. 5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현상을 3개 수준 중 하나로 응답한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함.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7〉 보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보건부문의 또 다른 성평등지표인 성별입원급여지급건수를 보면, 2005년 여성의 진료건수는 3,159천건으로 남성 2,763천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병원 입원진료건수는 2005년 이후 남녀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2009년 남녀 각각 4,222천건, 5,100천건 그리고 2010년에는 4,719천건 5,732천건이었다. 이와 같이 2010년 여성의 의료기관 입원급여지급건수가 남성보다 많은 것은 주로 임신 및 출산연령대인 25-34세 연령층(여성이 남성보다 388천건 많음)과 70세 이상 고령층(734천건 많음)이었다.

또한 입원급여지급건수 증가율을 보면 2005년에는 남성 지급건수 증가율(4.0%)이 여성(3.6%)보다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지급건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즉, 2009년 여성 지급건수 증가율은 9.8%인데 비해 남성은 9.3%이고, 2010년은 남녀 각각 12.4%, 11.8%이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입원급여지급건수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병원입원진료를 기준으로 한 보건부문의 성불평등수준은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sup>22)</sup> 즉, 입원급여지급건수로 나타낸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8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82.8, 2009년 82.5 그리고 2010년에는 81.6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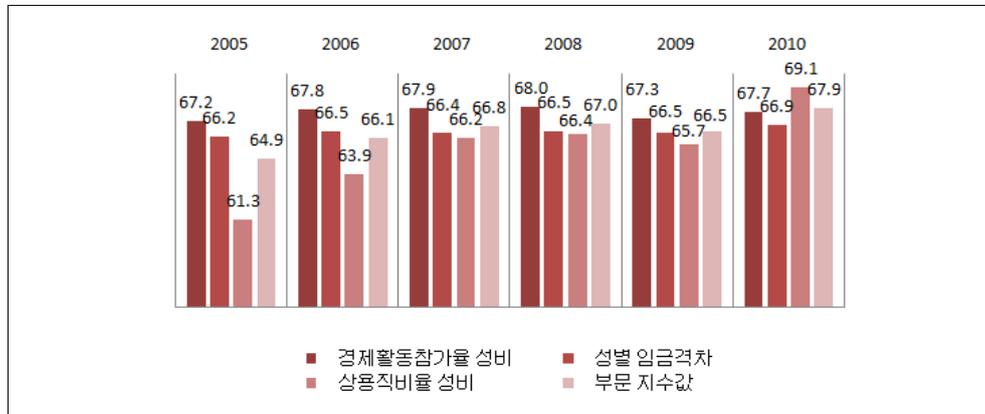
22)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입원급여 지급건수뿐만 아니라, 내월일수(남성 증가율 11.0%, 여성 12.4%), 진료일수(남녀 각각 11.6%, 12.7%), 요양급여비용(남녀 16.7%, 17.0%)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2011), 『2010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라. 경제활동부문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수준은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다. 경제활동부문의 개별 성평등지표를 보면, 먼저 남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74.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73.1%, 2010년 73.0%를 나타내었다. 즉,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각각 전년대비 -0.5%, -0.4%, -0.1% 감소한 반면에, 동 기간에 남성 취업자는 오히려 각각 96천명, 31천명, 181천명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 기간에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보다 더 높는데 기인하였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05년 50.1%에서 2006년 일시적으로 50.3%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49.2%이었다. 2010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여 49.4%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에 각각 전년대비 -0.2%, -0.8%, 0.2% 감소 혹은 증가를 하였다. 이러한 취업자와 경제활동참가인구의 변동을 성별로 비교하면 2010년에 남성취업자 증가율은 1.3%(181천명 증가), 여성 1.5%(142천명 증가)로 비슷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된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2005년 67.2에서 2008년 68.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 67.3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성평등지표 값이 다시 67.7로 소폭 상승하였다. 즉,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동에서의 성평등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에 다시 호전되는 추이를 보였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8〉 경제활동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남녀취업자의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남녀 상용근로자 추이를 보면 여성 상용근로자는 2005~2007년 7%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09년에는 증가율이 각각 4.9%, 3.3%로 둔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 상용근로자 수는 2005년 2,439천명에서 2007년까지 2,816천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3,051천명이었다. 2010년에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여성 상용근로자도 12.1%로 높은 증가를 보여 3,421천명이 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 상용근로자는 2005년 2.7% 증가율을 보인 이후 2007년 3.9%, 2009년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에는 증가율이 더 높아져서 5.2%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2005년 5,479천명이었던 남성 상용근로자는 2008년 6,053천명, 2009년 6,338천명이었고, 2010년에는 6,666천명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남녀 상용근로자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여성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낮아서 고용안정성을 나타내는 성평등지표 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여성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서 고용안정성의 성평등수준이 다시 개선되었다.

남녀임금격차 지표를 보면 여성근로자 월평균급여총액은 2005년 1,396천원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9년 1,693천원, 2010년 1,772천원이었다. 남성근로자도 동기간에 각각 2,109천원에서 2009년 2,546천원, 2010년 2,648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남녀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을 보면 2009년에는 남녀 동일하게 각각 0.7%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여성 임금증가율(4.7%)이 남성(4.0%)보다 더 높았다.

임금내역을 보면 남녀 임금증가율을 보면, 2010년 정액임금의 경우 여성(4.6%)이 남성(3.6%)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연장근무, 휴일 및 야간근무를 여성보다 더 많이 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나타내는 초과급여는 남성의 증가율(9.4%)이 여성(5.3%)보다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월평균급여총액의 남녀격차는 2005년 66.2%에서 2006년 66.5%로 개선된 이후 64~65%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66.9%로서 2009년 66.5%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 마. 의사결정부문

의사결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2010년에도 이어져서 지표 값이 2008년 19.6에서 19.2로 하락하였다. 개별 성평등지표별로 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성비로 2004년에는 전체 국회의원 당선자 299명 중에서 여성이 39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소폭 개선되어 299명 중에서 41명이 여성이었다.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은 19개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에 있음에 따라 2010년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부문의 의사결정직 성비를 나타내는 지표 값은 인구 성비변화에 따라 다소 변화를 보일 뿐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즉, 2007년 14.6에서 2008년 15.5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도 2009년 15.5에 이어서 15.6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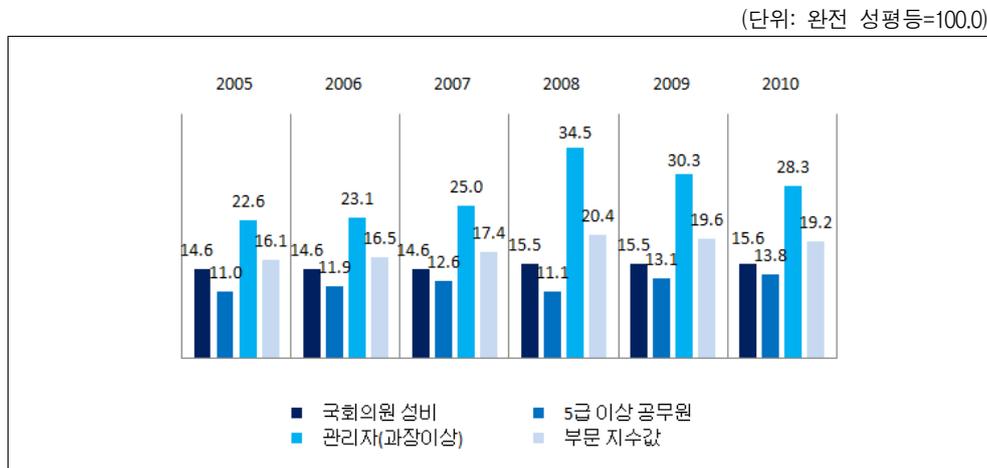
행정부문의 의사결정직 지표인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05년 2,186명에서 연도별로 증감을 보였다.<sup>23)</sup> 즉, 2007년 2,92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일시적으로 2,724명으로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3,021명, 2010년 3,348명이었다. 남성 5급 이상 공무원도 2005년 32,39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35,624명이었다. 2009년에는 33,26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33,727명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 남녀 5급 이상 공무원 증감률을 보면, 2008년에는 여성은 -6.7%로 감소한 반면에 남성은 2.8% 증가하여 성비가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2009년에는 여성 10.9% 증가하였는데 비해 남성은 -6.6% 감소하여 성비가 증가하였고,

23)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괄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하는 전체 공무원을 나타냄.

2010년에도 여성은 10.8%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1.4% 증가하여 성비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2010년에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행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인 민간기업과 전체 공기업에 종사하는 과장급 민간부문 의사결정직 성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민간기업 부문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현황을 보면,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55천명에서 2009년 230천명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뒤에 2010년 다시 270천명으로 증가하였다.<sup>24)</sup>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즉, 여성관리자는 2008년 22,887명에서 2009년 35,836명으로 정점으로 증가하고, 2010년 29,406명으로 감소하였다. 남성 또한 2008년 219천명, 2009년 201천명에서 2010년 236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남녀관리자의 증감률을 보면 2009년 여성관리자 감소율이 -18.0%인데 비해서 남성은 8.3%로, 여성관리자 감소율이 훨씬 컸다. 2010년에는 남녀관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관리자 증가율이 17.7%로 남성의 17.5%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림 IV-9〉 의사결정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24) 관리자 자료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현황 자료임. 동 현황 자료는 2011년에 2010년말 기준 남녀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2010년 성평등지수 산정은 2011년도에 발표된 2010년 현황 자료를 사용함.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직 지표 값은 근로자 성비의 역수로 관리자 성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면 적극적으로용개선조치제도 사업체 전체 여성근로자는 2010년 933천명으로 전년대비 10.2%나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근로자는 1,799천명으로 2.7% 증가하였다. 즉, 2010년의 경우 여성관리자에 비해서 남성관리자는 남성근로자 증가율에 비해서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민간부문 관리자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22.6에서 증가하여 2008년 34.5를 나타낸 이후, 2008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이가 계속되었다. 즉, 관리자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 34.5에서 2009년 30.3, 그리고 2010년에는 28.3을 기록하였다.

의사결정직의 전체 성평등지표 값은 2005년 16.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20.4이었다. 그러나 2009년, 2010년에는 민간부문 관리직 성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연이어서 19.6, 19.2로 하락하였다. 즉,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부문 중에서 의사결정직 부문의 성불평등이 가장 심했고, 최근에는 성평등수준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 바. 교육·직업훈련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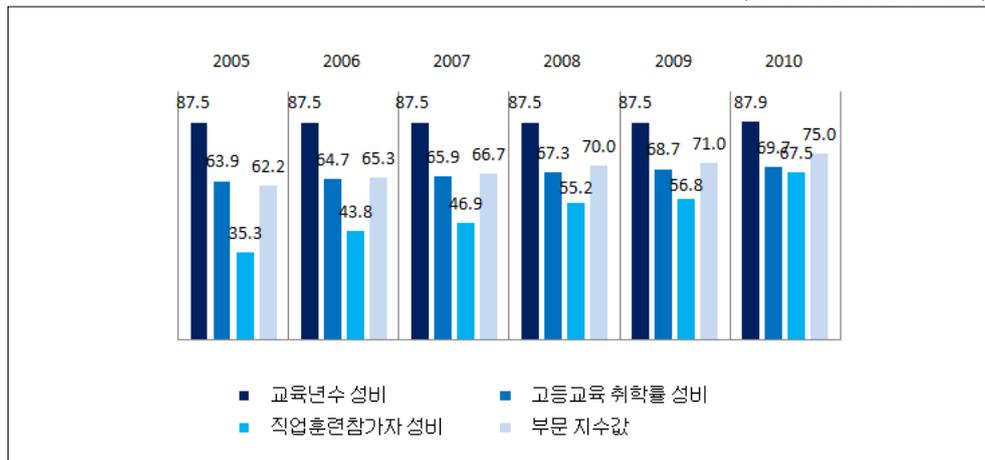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2010년에도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어 지수 값이 2009년 71.0에서 75.0으로 상승하였다. 교육부문의 성평등지표를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는 2000년 9.8년, 2005년 10.5년 그리고 2010년에는 10.9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각각 11.5년, 12.0년 그리고 12.4년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평균교육연수는 여정보다 길었다. 그러나 교육연수 증가율을 보면 2000~2005년 동안 남녀 각각 4.3%, 7.1%, 2005~2010년에는 각각 3.3%, 3.8%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평균교육연수의 성평등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값은 2005년 87.5에서 2010년 87.9로 증가하는 등, 성불평등이 개선되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취학률을 보면 2008년 초등학교 남성취학률은 103.5%, 여성 101.8%이고, 중등학교는 각각 97.1%, 93.7%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남녀 취학률은 큰 차이가 없다<sup>25)</sup>.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부문 성평등수준을 파악하

25) 취학률은 순취학률(Net Enrolment Ratio)이고, UNESCO Database에 수록된 자료로 산정된 것임.

기 위한 지표로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사용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여성취학률은 2005년 71.4%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79.2%, 2009년 81.5%이었다. 남성취학률도 2005년 110.4%에서 증가하여 2008년 115.3%, 2009년 116.9%이었다.<sup>26)</sup> 고등교육기관 남녀 취학률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취학률 증가율을 보면 여성은 2~3%대인데 비해서 남성 1%대보다 더 높았다. 즉, 2008년 취학률 증가율은 남녀 각각 1.3%, 3.4%이고 2009년에는 각각 1.3%, 3.0%이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취학률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 67.3에서 2009년 68.7로 증가하였다.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10〉 교육·직업훈련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재직자직업훈련 지표를 보면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여성근로자는 건수를 기준으로 2006년 698천 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448천 건이었다. 재직자직업훈련을 이수한 남성근로자도 2006년 2,176천 건에서 2009년 3,481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재직자직업훈련을 이수한 여성근로자는 남성에 비해서 훨씬 작으나, 훈련을 이수한 여성근로자 비율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서 훈련 참가자 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6)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총취학률(Gross Enrolment Ratio)이고, UNESCO Database 자료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고등교육기관 재학생(휴학생 포함)/만 18~21세 인구」로서 산정함.

2010년에도 재직자직업훈련에 참여한 남성근로자는 2,817천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19.1%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근로자도 1,412천건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이 -2.5%로 남성보다는 훨씬 낮았다. 그 결과 2010년에도 재직자직업훈련 지표 값은 전년 56.8에서 2010년에는 67.5로 상승하였다.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09년 71.0에서 2010년 75.0으로 상승하였다. 이를 구성 지표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표 값이 상승하였으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의 성평등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평등수준도 소폭 개선되었다.

#### 사. 문화·정보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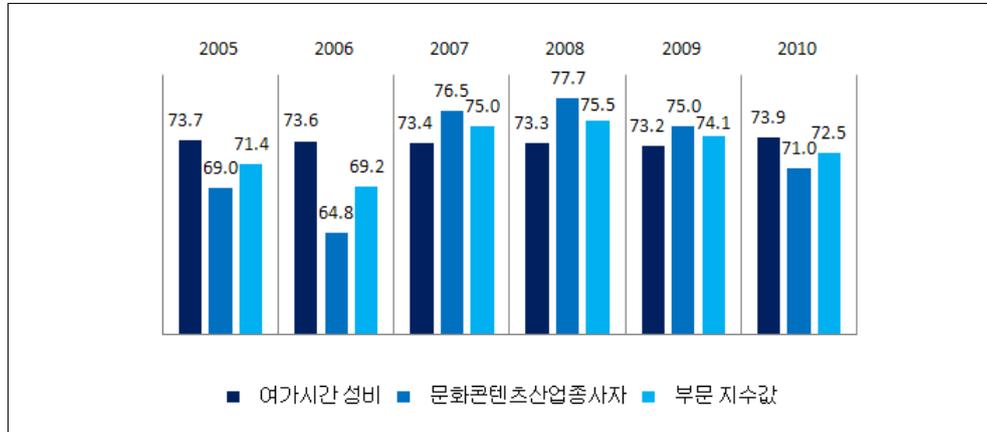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2006년에 평등수준이 하락한 이후 2007년, 2008년에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성평등수준이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인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를 보면, 2005년 문화산업 남성종사자는 272천명, 여성 179천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sup>27)</sup> 문화산업 남성종사자 수는 2006년에 감소, 2007년 증가 그리고 다시 2008년에 감소하는 등 연도별로 상당한 변동을 보였다. 이에 비해 여성종사자는 2005년-2007년 동안에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에 감소하였다. 그 결과 문화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악화, 개선, 악화하는 변동 추이를 보였다.

2009년에는 문화산업 여성 종사자가 18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0.9% 증가한 반면에, 남성 종사자는 263천명으로 7.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종사자 증가율이 여성종사자 증가율보다 높았다. 그 결과 2010년 성평등지표 값은 하락하여, 성평등수준은 악화되었다.

---

27) 문화산업 종사자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종사자를 합산하여 산정함. 2007년부터 문화산업 종사자에 지식정보와 콘텐츠솔루션 종사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통계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제외시켰음.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11〉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또 다른 문화·정보부문의 개별 성평등지표를 보면, 남성 취업자의 여가시간은 2004년 1일 평균 4시간 25분, 비취업자 8시간 42분이었다. 이에 비해 여성 취업자는 3시간 41분, 비취업자는 6시간 17분으로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짧았다. 2009년의 남성 여가시간을 보면, 취업자는 4시간 11분, 비취업자는 8시간 23분으로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도 취업자 3시간 23분, 미취업자도 6시간 3분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여가시간의 감소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커서, 여가시간의 성불평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 남녀 여가시간 변화를 감안하면 2010년에 남성 여가시간은 소폭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은 거의 동일하며 지표 값은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문화·정보부문의 두 개의 성평등지표 값 변화를 보면, 2010년 문화산업 종사자 지표 값의 하락이 여가시간 지표 값 증가보다 더 커서 전체적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였다. 즉, 2010년에도 2008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악화되는 추이가 지속되었다.

## 아. 안전부문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59.2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200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56.6을 나타내었다. 개별 성평등지표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2005년 남성 47.4%, 여성

67.8%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높았다. 그러나 2008년에는 남성 30.5%, 여성 49.1%로 남녀 모두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5년 이후 여성의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가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정도가 완화되었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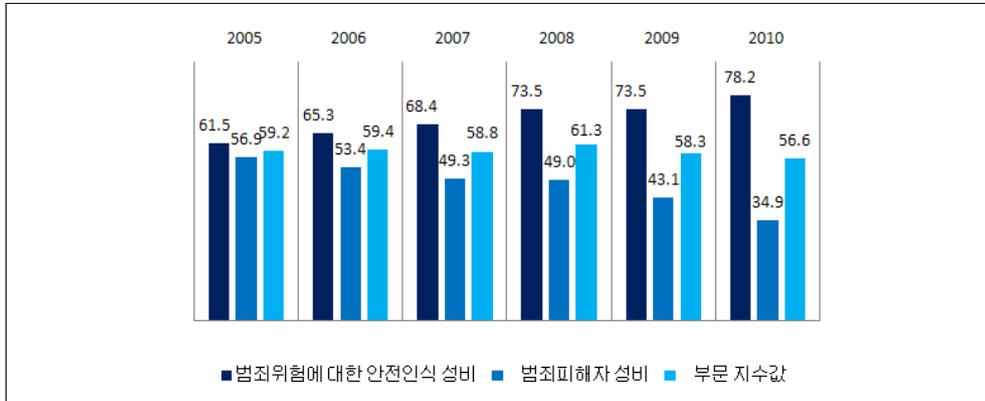
2010년에는 조사항목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전인식통계를 사용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중에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비율은 32.2%이고, 남성은 41.5%이었다. 이와 같은 통계를 이용하여 안전관련 성평등지표 값을 산정하면, 2005년 61.5에서 2009년 73.5 그리고 2010년 78.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범죄관련 안전도에 대한 성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있었다.

안전부문의 또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피해자 수가 2005년 14,847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7,479명, 2009년 19,254명으로 증가하였다. 남성피해자도 2005년 3,736명이었고, 이후 2008년 4,712명, 2009년 5,64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피해자에 비해 훨씬 적다. 그리고 2005~2006년 동안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많음에 따라, 성평등지수는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남녀피해자 모두 증가했으나 남성피해자 증가율(13.5%)이 여성(0.4%)보다 더 높아서 일시적으로 성평등지표 값이 개선되었다. 2009년에는 2005년 이후 남녀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남성피해자 증가율(19.9%)이 여성(10.2%)보다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는 2009년에 비해서 개선되었다.<sup>29)</sup>

28) 우리 사회의 안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야간보행의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8년 40.8%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함. 이에 비해 OECD 25개 회원국의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인구비율은 25.7%에 불과함. 아이슬란드는 6.0%,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14.0%, 일본 35.0%, 미국 19.0%, 영국 31.0%이었음. 그리고 그리스만 유일하게 42.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음. Van Djik J, J. Van Kesteren and P. Smit Paul(2008).

29) 그리고 강력범죄의 유형을 보면 2009년 여성피해자 19,254명 77.7%인 14,954명이 강간 피해자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도로 2008년에 비해 33.3%(2009년 여성피해자 3,041명)가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살인피해자로 27.5%(570명)이었다. 여성피해자 증가규모도 강간이 860명 증가한데 비해서 강도 760명, 살인이 12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함.

(단위: 완전 성평등=100.0)



〈그림 IV-12〉 안전부문 성평등지표 값 변화 추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지표 값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단순히 성격차(Gender gap)로 산정하지 않고, 성격차와 지표 수준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격차가 개선되거나 혹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감소되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2008년에는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 증가율보다 높고,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지표 값이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2009년에는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 증가율보다 낮으나, 강력범죄 피해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지표 값이 하락하였다. 즉, 2005~2006년, 2008년에는 여성 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크게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그리고 2006년, 2009년에는 여성 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낮으나 범죄피해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그 결과 2010년에도 강력범죄 관련 지표 값은 하락하여,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와 관련된 성평등수준은 악화되었다.<sup>30)</sup>

이에 따라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여 동 지표 값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기간이 많음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30) 성평등지표 값 산정은 기준 연도보다 한 해 이전의 통계를 사용함.

##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1. 최근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75
2. 성평등지표 변화와 우리나라 순위제고 94



## 1. 최근 국제성평등지수와 한국의 성평등 위치

1995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가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이하 GDI)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이하 GEM) 등을 통해 처음으로 각국의 남녀평등정도를 순위로 발표한 이후, 각국은 국제사회에서 발표되는 성평등 순위에 관심을 갖고 자국의 성평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성평등지수는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약간 다양해지면서 기존 성평등지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수로써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Social Watch는 여성지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토론에 기여할 목적으로 성형평지수(GEI: Gender Equity Index, 이하 GEI)를 개발하였다<sup>31)</sup>. 2006년에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국가경쟁력의 요인으로 설정한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취, 정치 권한부여, 건강과 생존 영역에서의 성격차를 통해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이하, GGI)를 발표하였다. 2010년에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법, 제도, 집행, 관습과 태도 등 경제적 기회에서의 성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여성경제기회지수(WEOI: 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를 발표하였다. 한편 2010년 UNDP는 GDI와 GEM을 대체할 새로운 지수인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이하 GII)를 발표하였다.

본 절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발표되고 있는 성평등지수 중 최근 발표한 성평등지수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들 지수에서의 한국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기존 성평등지수의 특징과 비판

1995년 UNDP에서 처음 발표한 성평등지수인 GDI와 GEM은 UNDP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성평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GDI에 비해 매우 낮은 GEM을 통해, 국회의원의 낮은 여성 대표성과 경제적 대표성을 지적하는데 활용되곤 하였다.

GDI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 성별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에 건

31) 홈페이지(<http://www.socialwatch.org/>)에 현재 공개되어 있는 GEI보고서는 2007년 보고서 부터임.

강, 교육과 수입의 3차원에서의 성취수준을 보여주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GDI는 HDI와 동일한 지표 성취수준으로 측정되며, 성별 불평등이 있을 경우 패널티를 주어 산정된다. 만약 한 국가의 GDI와 HDI의 차이가 크다면 그것은 개발에 있어 성별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GDI는 HDI와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GDI를 성불평등을 측정하는 측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GEM은 정치, 경제와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측도로 소개되었다. 정치영역은 여성의원비율로 측정하며, 경제영역은 고위·행정관리직 여성비율과 전문기술직 여성비율을 측정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영역은 남녀소득비를 통해 측정한다. 1995년 이래 GEM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평등지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GEM은 지표의 개념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지표의 적합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학자들 또한 적지 않다<sup>32)</sup>. 전반적으로, GDI와 GEM은 HDI만큼 학문적 혹은 정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GDI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도를 직접 평가하는 지수로 활용되는 오해를 가져왔다.

UNDP의 성평등지수인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의 단점과 비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도가 절대적인 성취와 상대적인 성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완전한 성평등 수준에 있더라도,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낮으면 그 국가의 지수 값이 낮은 문제가 있다. GDI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수준과 매우 큰 상관을 가지는 반면, 교육과 건강 지표의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GDI는 HDI로부터 명확한 차별을 가지지 못한다. GEM도 유사하게 소득의 성별격차보다 소득 수준을 사용한다. 이에 소득이 높은 국가의 경우, 다른 차원에서의 성별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상위권 순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GDI는 종종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성평등측도로 오해되고 있다. GDI는 기본적인 인간개발에서 성불평등의 인간개발비용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회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측도가 아니다.

셋째, 지표가 항상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률가, 고위관리직’은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대신에 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측

---

32) Dijkstra, 2006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넷째, GEM의 거의 모든 지표들은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향(Bias)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후진국에게 보다 적절한 몇 가지 지표들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섯째, 지수산정에 있어 각 국가의 결측 자료를 채우고자 광범위한 대체(Imputation)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소득비율의 경우, 3/4 이상의 국가 소득 자료가 부분적으로 대체되고 있다. 소득은 HDI와 GDI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성평등지수가 생산되었다. Social Watch는 교육, 경제참여, 권한에서의 성형평등을 측정하는 성형평등지수(GEI)를 소개하였다. GEI는 2004년 104개 국가를 대상으로 순위를 발표한 이래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156개 국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도를 비교하고 있다. GEI의 특징은 GDI와 GEM에서 각각 제시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차원은 성인 문해율과 초등, 중등, 고등교육 취학률에 의해 측정되고, 경제참여차원은 비농업유급종사자 여성비율과 여성과 남성의 추정소득 격차(HDRO 추정)를 사용한다. 그리고 권한차원은 전문기술직 여성비율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의회여성비율과 장·차관 여성비율로 추정한다.

GEI는 각 지표에 대해 성별격차를 활용한다. 각 지표를 남녀의 성비로 점수화한 후 여성인구대비 남성인구를 가중치(여성인구/남성인구)로 적용하여 측정한다. 각 차원의 가중치는 동일하게 주어지며, 차원 내 지표의 가중치 또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처럼 GEI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측정된다. 하지만 GEI 측정은 국가 수준에서 성별 불평등의 절대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불평등 정도만을 비교한다. 이로 인해 GEI는 국가 수준에서 시간에 따라 성평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다소 유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6년 소개된 WEF의 성격차지수(GGI)는 성불평등을 4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차원을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정치권한부여, 건강과 생존으로 구분한 후 14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지표는 GDI와 GEM에서 사용된 동일한 지표에 출생성비를 추가하였다. 지수는 성비(남성/여성)로 계산하였고 지표의 평등지점을 1인 완전평등지점으로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모두 1로 절삭하였다. 지수는 성별격차뿐만 아니라 최근 50년 이내 여성의

국가 혹은 정부 수반의 재직 기간과 같은 여성특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GGI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있어 왔다. 첫째는 GGI의 측정이 여성과 남성 간의 성취에 대한 비(Ratio)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앞에 언급된 것으로 각 국가의 소득을 추정(HDRO의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OECD는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성평등지수가 성과 지표 중심으로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SIGI는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등 투입 지표에 초점을 두고 산정된 지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SIGI는 OECD의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5개 차원에 12개의 지표를 가지고 산정한다. 차원별로 보면, 가족법 규에 4개, 신체안전에 2개, 아들선호에 1개, 시민 자유권에 2개 그리고 소유권에 3개의 지표를 배정하여 각 제도의 유무와 발생비율 정도를 가지고 지수를 계산한다.

SIGI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SIGI는 여러 종류의 지표를 결합하기에 지수의 해석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소녀와 여성의 권리 제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년과 남성의 위치와 비교하지 못한다.

## 나. 성불평등지수

### 1) GII의 특징

성불평등지수(GII)는 GDI와 GEM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UNDP에서 새로 개발·공포된 지수이다. 이 지수는 세 개의 영역인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파악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보여준다.

GII의 영역과 지표구성은 기존 성평등지수의 문제점 개선을 염두하고 선정되었다. 지표는 기본적으로 개념적 관계성<sup>33)</sup>(Conceptual relevance), 명확성<sup>34)</sup>(Non-ambiguity), 신뢰성<sup>35)</sup>(Reliability), 가치부가<sup>36)</sup>(Value added) 등을 판단기

33) 인간개발 정의와 이론과 강력한 관련성. 즉, 지표는 측정하고자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야함.

34) 해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지표 값이 높을수록(혹은 낮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함.

35) 정의, 통계의 질, 생산과정 등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함.

준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GII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GII는 기존 지수 추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던 자료 대체(Imputation)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에서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GII는 성불평등 수준만으로 지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지수 값 산정에 있어 국가의 발전지수 값은 불평등이 없는 '0'에서 완전불평등인 '1'까지의 범위를 갖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GII는 영역간의 불이익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지수 값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영역간의 남녀불평등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수록 지수 값은 커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영역이 서로 보완적(Complementarities)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분의 불평등은 취업기회와 모성 사망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불이익은 성불평등에서 중요하며, 이와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GII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이다.

## 2) GII의 영역과 지표

성불평등지수(GII)는 세 개의 영역 즉,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의 영역에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생식보건영역은 두 개의 지표 즉,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영역의 지표들이 남녀를 비교하는데 비해서, 이 영역의 지표는 여성특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표는 출산기의 여성복지가 본질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지표로 선정되었다. 특히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조기출산은 산모와 아기 건강에 대한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고, 출산여성의 교육중단과 그로 인한 저숙련 일자리 취업으로 가끔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 지표는 여성의 건강 악화와 미래의 기회 제한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권한영역은 여성의원비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인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원비율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권한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성평등지수에서 선택하고 있는 핵심 지표이다.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권한영역에서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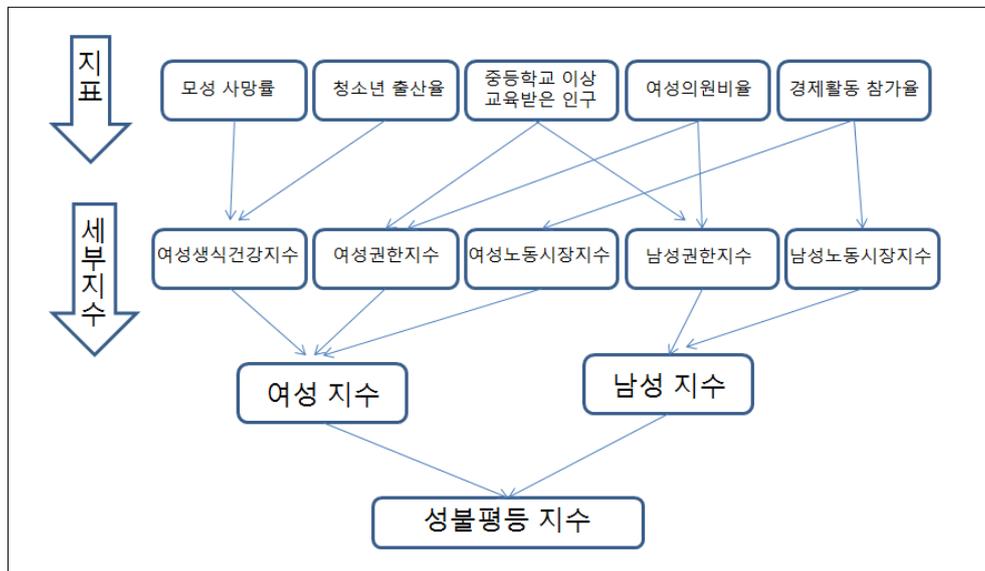
36) 각 지표는 명확히 새로운 정보를 주어야 함.

부분의 성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된 지표로, 교육수준은 경제와 정치 등 향후 여성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측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로 여성권한 영역의 여성의원비율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표 V-1〉 GII의 영역과 지표

영역(차원)	지표	비고
생식건강	모성 사망률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청소년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여성권한	여성의원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별 인구 비율
노동시장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Lucia Szabova'(2010), Faculty of Econom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Economics, Prague, p 5.

〈그림 V-1〉 GII의 구조

### 3) GII의 산정방법

GII 지수는 일부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지수는 성별차이를 균등배분지수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표준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또한 GII 측정은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표 간 연관에서 변화에 민감하도록 설계하였다. GII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수준을  $\epsilon=2$  수준으로 설정하여, 개별 지표의 동등 분포된 젠더지수를 만든다.<sup>37)</sup> 구체적인 지수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하평균을 통해 여성( $G_F$ )과 남성( $G_M$ ) 각각에 대해 차원 간 통합을 한다.

$$G_F = \sqrt[3]{\left(\frac{1}{MMR} \cdot \frac{1}{AFR}\right)^{\frac{1}{2}} \cdot \left(\frac{PR_F}{100} \cdot \frac{SE_F}{100}\right)^{\frac{1}{2}} \cdot \frac{LFPR_F}{100}}$$

$$G_M = \sqrt[3]{1 \cdot \left(\frac{PR_M}{100} \cdot \frac{SE_M}{100}\right)^{\frac{1}{2}} \cdot \frac{LFPR_M}{100}}$$

여기서 MMR=모성 사망률, AFR=청소년 출산율, PR=여성의원비율, SE=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LFPR=경제활동참가율 이다.

둘째, 조화평균을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 지표를 계산한다.

$$HARM(G_F, G_M) = \left[ \frac{(G_F)^{-1} + (G_M)^{-1}}{2} \right]$$

셋째,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영역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해 기하평균을 계산한다.

$$G_{F, \bar{M}} = \sqrt[3]{\overline{Health} \cdot \overline{Employment} \cdot \overline{Labourmarket}}$$

여기서

$$\overline{Health} = (\sqrt{(1/MMR) \cdot (1/AFR)} + 1)/2,$$

---

37) 이는 GDI의 지수 값 산정과 유사함.

$$\overline{\text{Employment}} = \frac{\left( \sqrt{\left(\frac{PR_F}{100}\right) \cdot \left(\frac{SE_F}{100}\right)} + \sqrt{\left(\frac{PR_M}{100}\right) \cdot \left(\frac{SE_M}{100}\right)} \right)}{2},$$

$$\overline{\text{Labour market}} = \left( \frac{LPFR_F}{100} + \frac{LPFR_M}{100} \right) / 2 .$$

마지막 넷째,  $HARM(G_F, G_M)$ 을  $G_{F, \overline{M}}$ 으로 나눈 후 다음의 식으로 성불평등 정도를 산출한다.

$$GII = 1 - \frac{HARM(G_F, G_M)}{G_{F, \overline{M}}}$$

그리고 위의 GII의 산정 식은 불평등에 대한 혐오 혹은 성평등에 대한 선호 수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역간의 연관성(Association)이 감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4) GII의 한계점

UNDP가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 성평등지수의 단점을 극복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UNDP는 GII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경제활동영역의 경우 지표가 제한적임에 따라 성평등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경제활동영역에 대표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포함되어 있지만, 반면에 노동시장의 직종격리, 남녀임금격차를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충분히 경제활동영역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GII가 이들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성별로 분리된 측정 자료를 직접 입수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이들 지표를 제외함으로써 경제활동영역의 성평등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GII에 포함되지 않아서 측정되지 않은 영역과 지표가 존재한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거나 최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성평등지수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사용, 재산접근, 가정폭력,

지역단위 권한과 같은 여성복지와 관련된 주요한 지수영역 혹은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이외에도 GII는 국가 성평등수준 관련 정책지표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특정 국가의 성평등수준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GII는 지수의 산정목적이 국가별 성평등수준에 따른 비교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에 기초한 5개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성평등수준을 위한 정책 목표를 GII 기준으로 국제적 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GII 보다 상대적으로 지표영역 및 지표수가 많은 WEF의 성격차지수(GGI)의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특화 지표 즉,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등은 여성보건, 미래 기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여성특화지표이기 때문에 건강영역에서 남녀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지수 값 산정의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점도 문제이다. GII의 경우 지표 값이 0.000~1.000의 범주를 갖게 되는데, 특정 지표 값이 아주 낮으면 영역 간 분포문제 및 불평등에 대한 강한 패널티 등으로 인해서 전체 지표 값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특히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의 역수를 취해서 지표 값을 산정함에 따라,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 국가들은 사망률과 출산율의 차이가 GII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5) 한국의 GII 순위

2010년 성불평등지수(GII)의 한국 순위는 138개 국가 중 20위로 나타났다. 이는 GEM과 GGI등의 성평등지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순위이다. 기존 성평등지수 순위에 비해 GII에서 한국의 순위가 높은 주요 이유는 생식건강영역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생식건강의 두 지표 중 모성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14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0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었지만, 청소년출산율은 해당 연령 천명 당 5.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3명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모성 사망률이 낮고, 여성의원비율이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격차가 한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출산율

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점수인 0.355로 한국보다 성평등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권한 중 여성의원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여 10.3%p 낮고 1위인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25.4%p 낮았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는 남녀 모두 OECD 회원국보다 높았으나, 성별격차는 훨씬 높았다.

〈표 V-2〉 OECD 회원국의 GI 순위와 점수

(단위: 10만명당, 천명당, %)

국가	순위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모성사망률 (2003-2008)	청소년 출산율 (1990-2008)	여성의회 비율 (2008)	중등이상 교육 받은 인구(2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2010)	남성 (2010)	여성 (2008)	남성 (2008)
한국	20(18)	0.310	14	5.5	13.7	79.4	91.7	54.5	75.6
네덜란드	1(1)	0.174	6	3.8	39.1	86.3	89.2	73.4	85.4
덴마크	2(2)	0.209	3	6.0	38.0	59.0	65.6	77.2	84.3
스웨덴	3(3)	0.212	3	7.7	47.0	87.9	87.1	77.1	81.8
스위스	4(4)	0.228	5	5.5	27.2	62.9	74.5	76.6	87.8
노르웨이	5(5)	0.234	7	8.6	36.1	99.3	99.1	77.3	82.6
벨기에	6(6)	0.236	8	7.7	36.2	75.7	79.8	60.9	73.5
독일	7(7)	0.240	4	7.7	31.1	91.3	92.8	70.8	82.3
핀란드	8(8)	0.248	7	11.4	41.5	70.1	70.1	73.9	77.7
이탈리아	9(9)	0.251	3	4.9	20.2	76.5	84.1	51.6	74.5
프랑스	11(10)	0.260	8	6.9	19.6	79.6	84.6	65.8	74.9
일본	12(11)	0.273	6	4.7	12.3	80.0	82.3	62.1	85.2
아일랜드	13(12)	0.279	4	15.1	33.3	66.3	57.7	81.7	89.9
스웨덴	14(13)	0.280	4	12.1	33.6	70.9	75.7	63.2	81.7
캐나다	16(14)	0.289	7	12.8	24.9	92.3	92.7	74.3	82.7
슬로베니아	17(15)	0.293	6	4.9	10.0	45.9	63.7	67.5	75.4
호주	18(16)	0.296	4	14.9	29.7	95.1	97.2	69.9	83.0
호스트리아	19(17)	0.300	4	12.8	26.6	67.3	85.9	68.3	81.0
포르투갈	21(19)	0.310	11	16.5	28.3	44.6	43.8	69.0	79.6
그리스	23(20)	0.317	3	8.9	14.7	64.4	72.0	55.4	79.0

국가	순위	점수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모성사망률 (2003-2008)	청소년 출산율 (1990-2008)	여성의회 비율 (2008)	중등이상 교육 받은 인구(2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2010)	남성 (2010)	여성 (2008)	남성 (2008)
룩셈부르크	24(21)	0.318	12	12.3	23.3	66.4	73.9	58.1	73.9
뉴질랜드	25(22)	0.320	9	22.6	33.6	71.6	73.5	72.1	84.5
폴란드	26(23)	0.325	8	13.9	18.0	79.7	83.9	56.9	71.0
체코	27(24)	0.330	4	10.6	16.0	85.5	87.6	61.1	78.1
이스라엘	28(25)	0.332	4	14.3	14.2	78.9	77.2	61.1	70.1
아일랜드	29(26)	0.344	1	15.9	15.5	82.3	81.5	62.8	80.7
슬로바카아	31(27)	0.352	6	20.7	19.3	80.8	87.1	61.3	76.5
영국	32(28)	0.355	8	24.1	19.6	68.8	67.8	69.2	82.2
헝가리	34(29)	0.382	6	20.2	11.1	93.2	96.7	54.8	68.0
미국	37(30)	0.400	11	35.9	17.0	95.3	94.5	68.7	80.6
에스토니아	39(31)	0.409	25	21.4	20.8	94.4	94.6	70.2	78.6
칠레	53(32)	0.505	16	59.6	12.7	67.3	69.8	48.1	78.9
멕시코	68(33)	0.576	60	64.8	22.1	57.7	63.6	46.3	84.6
터키	77(34)	0.621	44	38.8	9.1	27.1	46.8	26.9	74.6
OECD 평균	-	0.318	10	16.3	24.0	74.8	79.1	64.4	79.4

주 : 1) ( )는 OECD 회원국내 순위. 2) 점수는 낮을수록 성평등한 것임.  
 자료: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 다. 여성경제기회지수

### 1) WEOI의 특징

2010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여성경제기회지수(WEOI: Women's Economic Opportunity Index, 이하 WEOI)를 발표하였다. WEOI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113개 국가의 여성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환경을 측정한다. WEOI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가 법, 제도, 집행, 관습과 태도 등에서 자영업자 혹은 임금근로자로서,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지를 정의한다.

WEOI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EOI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수라는 것이다. 이 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노동 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반적 사업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총 26개의 지표로 측정된다.

둘째, 기존의 성평등지수가 성과 지표 중심으로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WEOI는 SIGI(사회제도와 젠더지수)처럼 성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 초점을 두고 측정된 지수라는 특징을 갖는다. WEOI에서 사용되는 지표는 대부분 질적 변수로서,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제도가 여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 2) WEOI의 영역과 지표

WEOI는 5개 영역에 총 26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노동 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 및 사회적 지위, 일반적 사회 환경 등으로 구분하였다. 노동 정책과 집행은 ILO 보수 및 차별 협약 등과 집행 정도를 파악하는 영역으로, 노동정책과 노동집행으로 세분화하였다. 세부적으로 노동정책은 5개 지표로 평가하며, 노동집행의 경우 4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금융에 대한 접근은 신용도 구축, 금융프로그램 접근, 금융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신용 위험과 낮은 금융 상태를 반영한 민간부문 신용 등의 4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교육·훈련은 4개의 지표로, 여성의 초·중등교육기관 취학률과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인 여성 문해율 등의 지표와 중소기업 지원/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혹은 비정부 프로그램의 존재로 구성된다. 그리고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 이동자유권, 재산소유권 등의 법적 안전장치가 있는지와 청소년의 출산율과 CEDAW의 국가 승인으로 측정한다. 이외에는 WEOI는 여성의 불평등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 일반적 사업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표 V-3〉 WEIO의 영역과 지표

영역		지표
노동 정책과 집행	노동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차별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수당
		여성 직업에서의 법적 제한
	노동집행	남성과 여성의 법적 퇴직(연금수급) 연령 차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차별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사실상 차별대우 정도
		보육서비스의 유용성, 이용 가능성 및 질적 우수성과 보육에서 확대가족의 역할
금융에 대한 접근	신용도 구축(신용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의 복합측도)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접근	
	금융 서비스 제공	
	민간부문 신용	
교육과 훈련	여성의 초·중등교육기관 취학률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인 여성 문해율	
	중소기업(SME) 지원/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나 비정부 프로그램의 존재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의 존재)	
	여성의 이동 자유권	
	재산소유권	
	청소년의 출산율(여성 1,000명 당 연령별 출산율, 15-19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대한 국가 승인	
일반적 사업 환경	규제품질	
	사업 시작을 위한 최소 자본 비용, 절차, 기간(사업 시작에 대한 복합지표)	
	기반구조 위험	
	주민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	

### 3) WEIO의 산정방법

자료구축을 위해서는 양적 지표의 경우 각 국가와 국제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질적 지표의 경우 국제기구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EIU 연구자와 전문

가 패널의 평가를 통해 구축한다. WEOI 산정에 활용된 통계는 ILO, OECD, UNESCO, UNDP,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UN Secretary General's database on violence against women, ITU, CGAP, World Economic Forum,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Freedom House, Vision of Humanity, 및 각국의 통계청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양적자료 중 결측치는 EIU에서 추정하여 사용하였고 질적자료인 경우 지표의 수량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질적 지표의 수량화 작업은 지표의 특성과 접근기회 정도에 따라 최고 9단계로 분류한 후 점수를 부여하였다. 수량화 방법은 각 질적 지표를 관련 평가내용으로 세분화하여 준수 혹은 실시할 경우 1점(혹은 2점)을 부여하거나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의 상태로 이동시키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량화 하였다.

또한 WEOI의 지표는 단위가 통일되도록 표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표준화는 값이 클수록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지표 값이 클수록 여성에게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는지 또는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에 따라 표준화 방법을 약간 달리하고 있다. 먼저 지표 값이 클수록 여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제적 측면의 지표(즉, 출산 및 육아휴직, 문해율, 재산소유권,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접근성) 등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였다.

$$x = [x - \text{Min}(x)] / (\text{Max}(x) - \text{Min}(x))$$

역으로 지표 값이 클수록 여성에게 부정적 효과를 주는 지표(즉, 여성직업의 법적제약, 여성의 이동자유권, 사업의 시작)등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였다.

$$x = [x - \text{Max}(x)] / (\text{Min}(x) - \text{Max}(x))$$

여기서  $\text{Max}(x)$ 은 113개 국가 중 가장 큰  $x$ 값이고,  $\text{Min}(x)$ 은 가장 작은  $x$ 값이다. 표준화된 지표는 다른 지표들과 직접 비교가능한 0~100 범위로 변화된다.

WEOI 지표 산정은 단순평균방식을 따른다. 범주 내 표준화된 지표들을 단순 평균하여 각 범주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WEOI 전체평균은 각 범주의 평균점수를 다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게 된다.

〈표 V-4〉 WEOI의 지표의 수량화 방법

영역		지표	분류	수량화 방법
노동 정책과 집행	노동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1~8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8점
		비차별	1~9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9점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수당	0~4	해당점수부여, 최고 3점 가산, 최고 7점
		여성 직업에서의 법적 제한	1~8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8점
	노동집행	남성과 여성의 법적 퇴직(연금수급) 연령 차이	1~7	해당 점수 부여, 최고 7점
		동일노동 동일임금	1~6	준수 시 분류당 2점씩 부가, 최고 12점
		비차별	1~5	준수 시 분류당 2점씩 부가, 최고 10점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사실상 차별 대우 정도	1~7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7점
		보육서비스의 유용성, 이용 가능성 및 질적 우수성과 보육에서 확대가족의 역할	1~5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5점
금융에 대한 접근	신용도 구축	1~6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6점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접근	1~5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5점	
	금융 서비스 제공	1~5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5점	
	GDP 대비 민간 신용	1~2	준수 시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2점	
교육과 훈련	여성의 초·중등교육기관 취학률	-	여성 초·중등학교 취학률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	여성 고등학교 취학률	
	성인 여성 문해율	-	성인 여성 문해율	
	중소기업(SME) 지원/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나 비정부 프로그램의 존재	0~5	해당점수부여, 최고 5점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여성에 대한 폭력(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의 존재)	1~3	법률 있을 경우 분류당 1점씩 부가, 최고 3점	
	여성의 이동 자유권	0~1	해당점수부여(0, 0.5, 1), 최고 1점(최악일 때)	
	재산소유권	1~5	해당점수부여, 최고 5점	
	청소년의 출산율	-	여성 1,000명 당 연령별 출산율, 15-19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 대한 국가 승인	0~4	해당점수부여, 최고 4점	
일반적 사업 환경	규제품질	-	-	
	사업 시작을 위한 최소 자본 비용, 절차, 기간(사업 시작에 대한 복합지표)	-	-	
	기반구조 위험	-	-	
	주민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	-	주민 100명당 휴대폰 사용자	

#### 4) WEOI의 한계점

WEOI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로, WEOI의 지수가 여성의 경제 활동에 있어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라는 것이다. 이는 타 성평등지수가 다양한 영역을 종합한 지수와 차별화된 지수임을 보여주는 특징이나, 한편으로 성평등을 경제활동 영역에 제한했다는 단점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구성된 지표의 대부분이 질적 지표이며 각 지표마다 다른 척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표 V-4>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지표는 수량화 방법을 통해 점수화한다. 지표마다 점수 부여 방식이 다르고 점수화하는 방식에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불평등과 관련 없는 영역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WEOI의 4개 영역은 경제활동을 세분화하여 여성의 차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1개의 영역 즉, '일반적 사업 환경'은 성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반적 환경을 지표로 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 사업 환경을 포함함으로써, 성평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지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 5) WEOI에서 한국 순위

여성경제기회지수(WEOI)에서 한국순위는 113개국 중 35위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금융에 대한 접근이 21위로 가장 좋았고,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66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한국의 순위는 전체 측정국가 중 중상위 순위를 보이지만, OECD 회원국만을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의 순위는 34개 OECD 국가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더욱이 한국은 점수에서도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의 WEOI 점수는 1위인 스웨덴과 비교하여 22점이 낮았고, OECD 회원국의 WEOI 평균점수와는 8.2점이 낮았다. 영역별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 높은 순위를 보였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노동정책과 집행은 11.1점 낮고, 교육과 훈련은 3.9점 낮으며,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와 일반 사업 환경은 각각 14점과 8.8점 낮게 나타났다.

〈표 V-5〉 OECD 회원국의 WEI 영역별 순위와 점수

국가	전체		노동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일반적 사업환경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한국	35(30)	66.2	33	60.2	21	63.3	33	73.9	66	78.3	39	61.4
스웨덴	1(1)	88.2	2	90.6	3	83.3	6	87.1	3	99.6	11	78.0
벨기에	2(2)	86.4	6	87.4	2	86.8	11	83.8	7	99.2	18	74.1
노르웨이	3(3)	85.3	3	90.5	16	66.7	5	91.2	5	99.3	20	73.7
핀란드	4(4)	85.2	1	93.1	37	53.1	4	92.4	5	99.3	6	79.9
독일	5(5)	83.9	11	79.5	1	87.1	13	82.1	7	99.2	14	76.4
아이슬란드	6(6)	82.9	8	84.2	23	62.5	2	95.4	14	98.7	22	72.1
네덜란드	7(7)	82.5	4	90.0	32	54.9	10	84.2	1	99.8	13	76.4
뉴질랜드	8(8)	81.2	7	85.5	41	52.1	1	52.1	45	87.2	3	81.6
캐나다	9(9)	80.5	9	80.8	13	68.8	23	78.5	14	98.7	15	75.7
호주	10(10)	80.5	18	73.6	10	70.8	3	70.8	40	88.6	4	80.9
프랑스	11(11)	79.4	16	74.6	5	80.4	22	79.0	36	89.4	9	78.3
포르투갈	12(12)	78.3	13	77.4	15	66.9	17	80.2	16	98.4	24	69.5
덴마크	13(13)	77.6	5	87.6	78	26.1	9	84.4	3	99.6	5	80.2
영국	14(14)	76.8	17	73.9	23	62.5	8	84.8	44	87.5	10	78.3
미국	15(15)	76.7	12	78.4	13	68.8	12	83.6	74	75.9	16	75.4
아일랜드	16(16)	76.4	22	69.3	10	70.8	15	81.5	41	88.4	8	79.0
헝가리	17(17)	75.3	28	64.4	6	77.2	24	78.5	18	98.1	25	69.0
스위스	18(18)	75.0	10	80.0	42	48.4	25	78.0	32	89.8	19	73.9
오스트리아	19(19)	74.0	14	76.4	25	59.8	34	73.3	39	89.0	26	69.0
슬로베니아	21(20)	73.2	32	61.2	22	62.8	7	86.5	2	99.7	27	67.7
체코	22(21)	73.1	25	65.1	8	71.5	31	76.1	10	99.1	37	61.5
룩셈부르크	24(22)	71.9	19	73.6	54	37.5	37	70.2	7	99.2	12	77.1
스페인	26(23)	70.5	20	73.4	58	36.3	19	79.6	12	99.0	38	61.5
에스토니아	27(24)	70.4	38	59.2	35	54.3	27	77.0	26	93.1	7	79.5
이스라엘	28(25)	70.2	24	66.3	27	58.7	30	76.2	59	83.6	23	70.1
그리스	29(26)	69.4	41	57.0	7	72.3	29	76.3	10	99.1	47	54.8

국가	전체		노동정책과 집행		금융에 대한 접근		교육과 훈련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일반적 사업환경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이탈리아	31(27)	68.3	44	52.9	17	66.2	16	81.0	35	89.5	28	67.0
일본	32(28)	68.2	45	52.4	4	81.6	39	69.5	43	88.0	29	65.0
폴란드	33(29)	68.0	30	61.9	31	55.1	18	79.8	27	92.2	44	56.9
슬로바키아	36(31)	65.2	51	50.8	20	63.6	28	76.3	28	91.3	42	58.6
칠레	40(32)	60.9	62	47.7	28	58.5	35	72.9	75	75.1	33	63.7
멕시코	41(33)	60.4	29	63.9	46	44.4	68	55.3	47	86.6	54	48.3
터키	68(34)	49.2	84	40.2	70	32.2	75	52.4	62	79.9	52	50.6
OECD 평균	-	74.4	-	71.3	-	61.9	-	77.8	-	92.3	-	70.2

주 : ( )는 OECD 회원국내 순위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1), Women's economic opportunity.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는 78.3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지만, 순위에서는 113개국 중 66위, OECD 회원국 중 33위로 미국 다음으로 낮다. 이와 같이 한국이 법적·사회적 지위가 다른 영역보다 낮은 이유는 <표 V-6> 통해 알 수 있듯이 CEDAW에 대한 국가 승인 점수가 50%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 지표의 경우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WEOI 점수가 높은 선진국은 100점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동일한 50점을 받고 있다.

영역별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인 지표를 보면, 노동정책 영역에서 여성 직업의 법적 제한 점수(25.0%)와, 노동집행 영역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33.3%) 및 직장 내의 여성에 대한 사실상 차별대우 정도(38.3%)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금융에 대한 접근의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에서는 0%를 받았고, 교육과 훈련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과 개발 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혹은 비정부 프로그램 존재 지표가 60%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EDAW에 대한 국가 승인 점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표 V-6〉 OECD 회원국의 WEI 영역별 순위와 점수

(단위: %)

영역 및 지표	한국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일본	중국
노동정책과 노동집행	60.2	90.6	87.4	90.5	52.4	46.7
노동정책	65.0	94.3	91.4	94.3	72.1	51.4
동일노동 동일임금	71.4	85.7	85.7	100.0	57.1	57.1
비차별	71.4	85.7	85.7	71.4	71.4	57.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	57.1	100.0	85.7	100.0	57.1	42.9
여성 직업의 법적제한	25.0	100.0	100.0	100.0	75.0	50.0
남성과 여성의 법적퇴직(연금수급)연령차이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노동집행	55.4	86.9	83.4	86.6	32.6	41.9
동일노동 동일임금	33.3	83.3	83.3	100.0	33.3	33.3
비차별	83.3	83.3	83.3	50.0	16.7	0.0
직장내의 여성에 대한 사실상 차별대우정도	38.3	81.0	66.8	96.4	47.2	67.7
보육서비스의 유용성, 이용가능성 및 질적우수성과 보육에서 확대가족의 역할	66.7	100.0	100.0	100.0	33.3	66.7
금융에 대한 접근	63.3	83.3	86.8	66.7	81.6	37.9
신용기록형성	78.2	83.3	47.1	66.7	76.2	51.8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접근	75.0	100.0	100.0	100.0	100.0	50.0
금융서비스 제공	0.0	100.0	100.0	50.0	50.0	0.0
GDP대비 민간신용	100.0	50.0	100.0	50.0	100.0	50.0
교육과 훈련	73.9	87.1	83.8	91.2	69.5	54.5
여성의 초중등학교 교육비용	64.0	63.5	69.8	79.9	66.5	49.3
여성의 고등학교 교육비용	72.6	86.1	66.3	86.1	52.7	21.1
성인 여성 문해율	99.0	99.0	99.0	99.0	99.0	87.6
중소기업(SME)지원/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혹은 비정부프로그램의 존재	60.0	100.0	100.0	100.0	60.0	60.0
여성의 법적·사회적지위	78.3	99.6	99.2	99.3	88.0	78.0
여성에 대한 폭력	66.7	100.0	100.0	100.0	66.7	66.7
여성의 이동자유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재산소유권	75.0	100.0	100.0	100.0	100.0	75.0
청소년의 출산율	100.0	97.9	95.8	96.3	98.4	98.4

영역 및 지표	한국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일본	중국
CEDAW에 대한 국가승인	50.0	100.0	100.0	100.0	75.0	50.0
일반적 사업환경	61.4	78.0	74.1	73.7	65.0	32.8
규제품질	65.0	91.4	85.7	81.8	78.7	38.9
사업시작을 위한 최소자본비용, 절차, 기간 (사업시작에 대한복합지표)	60.0	67.6	72.0	70.4	58.2	25.3
기반구조위험	75.8	96.7	85.7	90.1	82.4	45.1
주민 100명당 휴대폰사용자	44.8	56.2	53.0	52.2	40.9	22.1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1), Women's Economic Opportunity.

## 2. 성평등지표 변화와 우리나라 순위제고

### 가. 한국성평등지수와 국제성평등지수의 관계

1995년 이후 다양한 국제성평등지수가 발표되었지만, 2011년 현재 매년 발표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평등지수는 WEF의 GGI와 UNDP의 GII로 요약된다. 이에 본 절은 두 지수와 한국성평등지수(KGEI: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이하 KGEI)를 비교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격차지수(GGI)는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 지수는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해 성 격차를 통해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로써, 지표의 수준 혹은 달성 정도 보다는 남녀격차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표는 성과에 따른 차이를 활용하며, 성평등을 여성의 권한정도보다 성평등격차로 산정하고 있다. 한편 성불평등지수(GII)는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GDI와 GEM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UNDP에서 새로 개발·공포된 지수로 여성과 남성의 성취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먼저 KGEI와 두 국제성평등지수의 지표구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정치권한 부여, 건강과 생존 4개 부문으로 구축되어 있다. 경제참여와 기회부문은 경제활동, 임금격차, 관리자 및 고위임직원 비율 등 성비 등 5개 지표로, 교육성취도 부문은 문자 해독율, 학교급별 취학

를 성비 등 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건강·생존 부문은 건강기대수명, 출생성비로 구성되고, 정치권한부여 부문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수반의 재직기간의 성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같은 지표구성은 한국성평등지수(KGEI)와 비교해 보면 <표 V-7>과 같다. KGEI의 부문으로 분류한 후 지표를 비교해 보면, GGI의 구성 지표는 KGEI의 지표와 비교하여 4개의 지표가 동일하며, 2개 지표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4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국회의원의 성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이다. 단, 성별 임금격차는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지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KGEI는 이 지표의 측정을 사업체조사를 통해 조사된 월평균 임금인 반면, GGI는 유사직종에 대한 임금의 성별 격차를 경영자에게 질문하여 얻은 값이다. 이로 인해 GGI의 임금격차는 <표 V-10>에서 보듯 임금격차가 특정연도에서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개의 부분 일치 지표는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와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이다. KGEI는 가족부문에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를 활용하지만, GGI는 출생성비 건강과 생존부문에서 출생성비를 활용하고 있다. 두 지표가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성비가 첫째와 둘째 아에서 자연출생성비<sup>38)</sup>와 가깝고 셋째 아 이상에서 성비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출생성비는 셋째 아 이상에서 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지표는 값의 변화가 완전 일치하진 않아도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관리자 성비의 경우 GGI의 경우 취업자 중 관리자로 정의하지만, KGEI는 관리자 정의를 기업의 과장급 이상으로 보고 기업체 임금근로자 중 관리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KGEI가 GGI보다 좁은 측면의 관리직 비율을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 행정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체의 관리직 비율의 성비는 임금근로자 중 관리자 비율의 성비보다 더 높은 값을 갖게 된다.

---

38) 자연출생성비는 106전후의 값을 말함.

〈표 V-7〉 한국성평등지수(KGEI)와 국제 성평등지수들의 지표구성 비교

부문	지표	KGEI	GGI	GII
가족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	×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	×
복지	빈곤 가구주의 성비	○	×	×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	×	×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	×	×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	×	×
	건강보험 가입급여 수급자의 성비	○	×	×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	○
	성별 임금격차	○	○	×
	상용근로자의 성비	○	×	×
의사결정	국회의원의 성비	○	○	○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	×	×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	△	×
교육·직업훈련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	○	×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	○	△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	×	×
문화·정보	여가시간의 성비	○	×	×
	문화컨텐츠산업 종사자의 성비	○	×	×
안전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 성비	○	×	×
	강력범죄(홍악법) 피해자의 성비	○	×	×

주: ○ 일치, △ 부분일치, × 불일치

GII는 세 개의 부문과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부문은 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으로 생식보건과 권한 부문은 각각 2개의 지표로, 노동시장 부문 경제활동참가율 지표 1개로 구성되어 있다. GII는 5개의 구성 지표 중 2개가 KGEI와 동일했고, 1개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즉, 구성 지표 중 경제활동참가율과 국회의원이 KGEI와 동일하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측정기준과 방법에서 세 지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KGEI는 성과지표를 성별격차로 측정한다. 가중치 부여는 부문별 가중치를 주고 있으며, 부문 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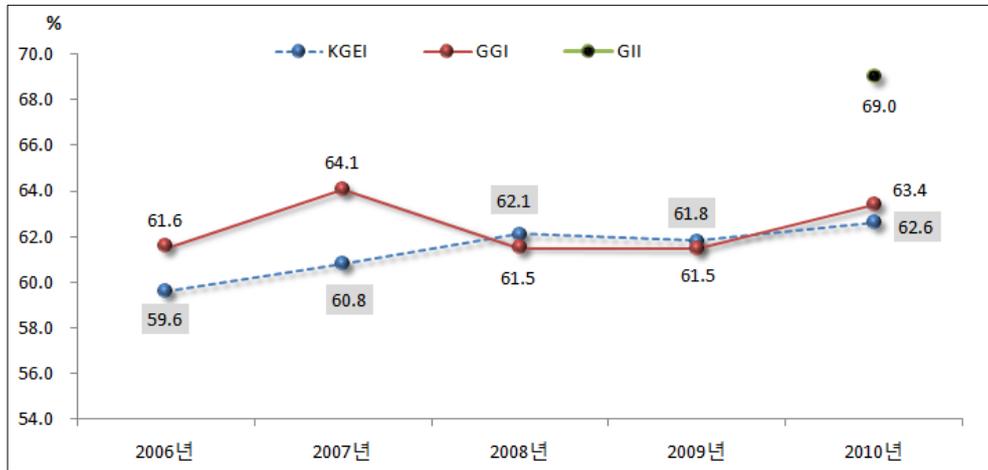
표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는다. GGI는 측정기준에서 KGEI와 동일하지만 가중치 부여 방법은 다르다. GGI는 부문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다.<sup>39)</sup> 그러나 지수유형으로 보면 KGEI와 GGI는 가법형으로 동일하다. 즉, 이들 지수는 부문별 성평등수준에 관계없이, 성평등 개선효과가 각 부문의 어떤 곳에서 일어나더라도 전체 성평등지수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GII는 측정기준과 가중치 부여방법이 약간 다르다. GII는 성별불평등수준과 격차를 동시에 측정한다. 가중치 부여 방법은 특별히 없으나,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방법을 원용하여 지수를 표준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GII는 불평등에 대한 혐오와 영역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형으로 분류된다.

〈표 V-8〉 성평등지수의 측정기준, 가중치 부여방법, 지수유형 분류

성평등지수	측정기준	가중치 부여방법	지수유형
KGEI	성과지표, 성별격차	부문별 가중치.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 없음	가법형 지수(Additive Index)
GGI	성과지표, 성별격차	부문별 가중치 없음. 부문 내 지표별 가중치	가법형 지수(Additive Index)
GII	성과지표, 성별불평등수준과 격차	Atkinson 불평등지수 산정 방식 원용	불평등 및 연관성 민감형 지수 (Inequality & association sensitive Index)

이런 기준으로 측정된 세 성평등지수의 지난 5년간 점수 추이를 보면, 측정기준이 동일한 KGEI와 GGI가 2010년 각각 62.6점과 63.4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이며, GII는 성평등점수로 산정할 경우 69.0점으로 두 지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39) 지수 산정 방법은 김태홍 외(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참조바람.



〈그림 V-2〉 KGEI, GGI, GII의 점수 변화 추이

KGEI 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6년 59.6점에서 2007년 60.8점, 2008년 62.1점으로 상승하다, 2009년 61.8점으로 소폭 하락 후 2010년 다시 상승한다. 한편 GGI의 경우 61.6점에서 2007년 64.1점으로 상승하나, 2008년은 KGEI와 달리 다소 크게 하락한다. 이후 2009년까지 동일한 점수<sup>40)</sup>를 보이고 2010년은 63.4점으로 다시 상승한다. 즉, KGEI와 GGI 점수 변화 추이는 2008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KGEI는 국가성평등지수로 점수변화 외에 비교대상이 없어 순위변화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국제성평등지수인 GGI 순위변화를 통해 한국성평등수준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GI 순위를 보면 2006년 이후 매년 대상국가가 증가하면서, 2006년은 92위, 2008년은 108위, 2009년 115위로 하락한다. 그리고 2010년 점수 상승과 동시에 104위로 소폭 순위 상승을 보인다. 단, 2010년 성불평등측면으로 본 GII의 우리나라 순위는 20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40) 실제 소수점 둘째자리가 보면, 2008년은 61.45점이고 2009년 61.46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V-9〉 성평등지수의 점수 변화 추이

(단위: 점수, 순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KGEI	점수	59.6	60.8	62.1	61.8	62.6
GGI	점수	61.57	64.09	61.54	61.46	63.42
	순위	92위/115개국	97위/128개국	108위/130개국	115위/134개국	104위/134개국
GII	점수	-	-	-	-	69.0
	순위	-	-	-	-	20위

주: 1) GGI와 GII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수정함.  
 2) GII는 성평등값으로 전환함. 즉, (100-GII)의 값으로 전환함.

### 나.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순위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

앞에서 언급되었듯, KGEI의 구성 지표는 GGI와 4개 지표에서, GII와 2개의 지표에서 동일하다. 이에 KGEI의 구성 지표 중 국제성평등지수와 동일지표가 개선된다면 곧 국제성평등지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절은 KGEI의 구성 지표 개선을 통해 국제성평등지수의 한국순위 제고 방안을 모의실험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KGEI와 GGI의 구성 지표 중 동일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국회의원,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다. 그리고 GII와 동일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국회의원의 두 개 지표이다. 하지만 동일 지표의 경우에도 사용된 지표 값은 국제성평등지수와 KGEI 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0>을 보면 연도별로 KGEI, GGI, GII은 발표된 지수의 연도가 동일함에도, 사용된 지표 값은 서로 다르다. 이는 사용된 자료원과 기준, 조사연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KGEI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고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된 반면, GGI는 ILO, Key Indicators of and Opportunity the Labour Market(2009)를 출처로 하고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로 계산한다. 또한 GII는 GGI와 동일한 출처를 사용하지만 소수점 처리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성비 값에 약간의 수치적 차이를 보인다. 성별임금격차의 경우는 출처와 수집방법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 KGEI는 사업체조사를 통해 사업체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산정하고 있지만, GGI는 경영계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GGI의 임금격차는 2008년과 같이 기존 추

이를 벗어난 안정되지 못한 값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소수점 처리로 인해 값에 차이가 나타나며,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당연도 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연도가 서로 달라서 차이를 보인다. 즉, KGI와 GII는 이들 지표의 활용연도가 KGEI에 비해 한해 이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표 V-10〉 연도별 KGEI, GGI, GII에 사용된 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제활동참가율	KGEI	여성	50.3	50.2	50.0	49.2	49.4
		남성	74.1	74.0	73.5	73.1	73.0
		성비	67.9	67.8	68.0	67.3	67.7
	GGI	성비	68.0	70.0	70.0	71.0	73.0
	GII	성비	-	-	-	-	72.1
성별 임금격차	KGEI	성비	66.5	66.4	66.5	66.5	66.9
	GGI	성비	49.0	82.0	53.0	55.0	52.0
국회의원	KGEI	여성	13.0	13.0	13.7	13.7	13.7
		남성	87.0	87.0	86.3	86.3	86.3
		성비	14.9	14.9	15.9	15.9	15.9
	GGI	성비	15.0	15.0	16.0	16.0	17.0
	GII	성비	-	-	-	-	15.9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KGEI	여성	71.4	73.7	76.6	79.2	81.5
		남성	110.4	111.9	113.8	115.3	116.9
		성비	64.5	65.9	67.3	68.6	69.7
	GGI	성비	63.0	62.0	65.0	67.0	69.0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각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UNESCO(2011), 통계 DB.

이와 같은 이유로 세 지수의 산정에 사용된 지표 값이 다름에 따라 KGEI의 지표 개선이 GGI, GII의 개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지표의 증감추이가 비슷함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4개의 지표가 기존 값에서 동일한 비율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각 지표값 상승에

따른 GGI와 GII 증가정도를 모의실험하였다. 모의실험은 다른 지표를 2010년과 동일한 값으로 두고 4개의 지표의 여성비율 혹은 지표의 성비가 3%p, 5%p, 10%p 상승할 때를 고려한다. 모의실험의 점수산정 후 순위는 2010년 GGI와 GII의 점수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세 성평등지수에서 구성 지표 중 모든 지표가 고정되어 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만 변화한다고 할 경우를 보면, 3%p와 5%p에서는 세 지수 모두 점수와 순위의 증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p 상승할 경우 KGEI는 0.2점 높아지고, GGI는 0.1점 상승하나, 순위에는 변화가 없다. GII 역시 0.4점 불평등이 하락하지만 순위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5%p 상승할 경우 또한 3%p 상승할 때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다. 점수는 KGEI와 GGI는 각각 0.4과 0.2점 상승하고, GII에서 0.7점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위변화는 3%p 상승 때와 동일하게 없다. 10%p 상승할 경우 점수에서 소폭 상승과 더불어 순위가 각각 1단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모든 지표가 고정될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만으로 국제성평등지수의 상승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 점수, 순위)

구 분		경제활동참가율			KGEI	GGI		GGI		
		여성	남성	성비	점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0	KGEI	49.4	73	67.7	62.6	63.4	104위	31.0	20위	
	GGI	55	76	73						
	GII	54.5	75.6	72.1						
전망	3%p상승	KGEI	52.4	73	71.8	62.8	63.5	104위	30.6	20위
		GGI	58	76	76.3					
		GII	57.5	75.6	76.1					
	5%p상승	KGEI	54.4	73	74.5	63.0	63.6	104위	30.3	20위
		GGI	60	76	78.9					
		GII	59.5	75.6	78.7					
	10%p상승	KGEI	59.4	73	81.4	63.4	63.9	103위	29.8	19위
		GGI	65	76	85.5					
		GII	64.5	75.6	85.3					

두 번째로, 국회의원 여성비율만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는 <표 V-12>와 같다. 국회의원 여성비율만 3%p 상승한다면 KGEI와 GGI는 각각 0.1점과 0.3점으로 상승하고, GII는 1.3점 불평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GGI는 순위변동이 없으나, GII 순위는 1단계 상승한다. 5%p 상승할 경우 점수 상승과 함께 순위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GGI의 점수는 0.5점 상승과 더불어 1단계 순위 상승이 예상되며, GII는 3단계 순위 상승이 기대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0%p 상승할 경우는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0%p 상승할 경우 KGEI의 점수는 0.6점 상승하고, GGI는 1.2점에 5단계 순위상승, GII는 3.5점의 불평등 감소에 7단계 순위상승이 기대된다. 즉,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상승이 5%p 이상 나타날 경우 국제 성평등지수의 순위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2>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 점수, 순위)

구 분		국회의원			KGEI	GGI		GII		
		여성	남성	성비	점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0	KGEI	13.7	86.3	15.9	62.6	63.4	104위	31.0	20위	
	GGI	15	85	17						
	GII	13.7	86.3	15.9						
전망	3%p상승	KGEI	16.7	83.3	20.0	62.7	63.7	104위	29.7	19위
		GGI	18	82	22.2					
		GII	16.7	83.3	20.0					
	5%p상승	KGEI	18.7	86.3	21.7	62.9	63.9	103위	29.0	17위
		GGI	20	80	25.0					
		GII	18.7	81.3	23.0					
	10%p상승	KGEI	23.7	86.3	27.5	63.2	64.6	99위	27.5	13위
		GGI	25	75	33.3					
		GII	23.7	76.3	31.1					

주: 다른 지표는 모두 2010년 값으로 고정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만 변동할 경우.

세 번째로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만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GGI의 순위 상승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지표의 상승 없이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만 3%p와 5%p 상승해도 GGI의 경우 점수와 순위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p 상승할 경우 점수와 순위변화가 소폭 있으나, 0.2점 상승과 1단계 순위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3>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과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 점수, 순위)

구 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KGEI	GGI		
		여성	남성	성비	점수	점수	순위	
2010	KGEI	81.5	116.9	69.7	62.6	63.4	104위	
	GGI	79	115	69				
전망	3%p상승	KGEI	84.5	116.9	72.3	62.7	63.4	104위
		GGI	82	115	71.3			
	5%p상승	KGEI	86.5	116.9	74.0	62.8	63.4	104위
		GGI	84	115	73.0			
	10%p상승	KGEI	91.5	116.9	78.3	63.0	63.6	103위
		GGI	89	115	77.4			

주: 다른 지표는 모두 2010년 값으로 고정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만 변동할 경우.

네 번째로 성별 임금격차만 변화할 경우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를 추정해 보면, <표 V-14>와 같다. 이 표를 보면, 성별 임금비를 3%p와 5%p 높일 경우 성평등지수의 순위상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p 상승시 점수는 KGEI의 경우 0.6점, GGI의 경우 0.7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2단계의 GGI 순위 상승이 예측된다.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임금비 상승에 비해 점수와 순위상승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4〉 성별 임금격차와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 점수, 순위)

구 분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비)	KGEI	GGI	
			점수	점수	순위
2010	KGEI	66.9	62.6	63.4	104위
	GGI	52			
전망	3%p상승	KGEI	62.8	63.5	104위
		GGI			
	5%p상승	KGEI	62.9	63.7	104위
		GGI			
	10%p상승	KGEI	63.2	64.1	102위
		GGI			

마지막으로 동일한 4개의 지표를 모두 5%p 상승할 경우 국제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상승을 예측해 보면, <표 V-15>와 같다. 2010년 점수 및 순위 기준과 비교하면, KGEI와 GGI는 1.3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GII는 2.7점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순위는 GGI가 104위에서 99위로, GII는 20위에서 16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V-15〉 동일한 4개의 지표 모두가 5%p 상승할 경우 성평등지수의 점수와 순위 변화 추정

(단위: %, 점수, 순위)

구 분		지표 모두가 5%p 상승			성평등지수 값	
		여성	남성	성비	점수	순위
KGE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4.4	73	74.5	63.9	-
	여성 국회의원	18.7	86.3	21.7		
	성별 임금격차(성비)	-	-	71.9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6.5	116.9	74.0		
GG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76	78.9	64.7	99위
	여성 국회의원	20	80	25.0		
	성별 임금격차(성비)	-	-	57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4	115	73.0		
GII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9.5	75.6	78.7	28.3	16위
	여성 국회의원	18.7	81.3	23.0		

모의실험을 정리해 보면, 다른 지표가 고정된 상태에서 KGEI의 구성 지표 중, 여성 국회의원비율의 상승이 국제성평등지수인 GGI와 GII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인구와 성별 임금격차가 국제성평등지수 순위 상승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성비율이 10%p 이상 상승해야 순위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근본적으로 남성의 취학률 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여성이 10%p 이상 증가할 지라도 순위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4개 지표 값이 동시에 5%p 상승할 경우는 2010년 기준으로 GGI는 99위로 상승하며, GII는 16위로 순위 상승이 예상된다.



VI

## 국가 성평등수준 평가와 제고 전략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109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113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123



## 1.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의 특징

2010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즉, 2009년에 비해서 성평등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지수의 영역별로 보면 지난해에 성평등수준이 하락하였던 경제활동부문은 2010년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성평등수준이 향상되어 왔던 가족부문, 복지부문,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값은 201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2008년 이후 지표 값이 하락해온 의사결정부문, 안전부문, 보건부문 그리고 문화·정보부문은 2010년에도 성평등수준이 악화되었다.

영역별 성평등지표 값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① 먼저, 경제활동부문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2010년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게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남녀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나타내는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2010년 전반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남성보다 월평균급여총액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증가된 임금내역을 보면 여성근로자는 남성보다 정액임금이 더 많이 증가한 반면에 남성근로자는 여성보다 연장근무, 휴일 및 야간근무를 많이 함에 따라 초과급여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남녀임금격차도 2009년 66.5%에서 66.9%로 소폭 증가하였다. 즉, 2010년에는 경제회복과 함께 상대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고용안정성이 남성보다 제고되고, 노동에 대한 보상정도를 나타내는 남녀임금격차 부문의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② 복지부문의 2005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개별 지표별로 보면 먼저 여성의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률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2010년 7월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보험료를 126천원에서 89천원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2010년 여성취업자의 증가로 인해서 여성 사업장 가입자가 증가하고, 사학연금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여성 가입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큰데 기인한다. 장애인고용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중에서 빈곤선 이상에 있는 가구비율을 보면, 2010년에 빈곤 여성가구주 증가율이 남성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성평등수준이 하락하였다. 2010년에 남녀 가구주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사별 여성가구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배우 여성가구주가 증가한데 기인하였다. 즉,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교육·직업훈련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개별 지표를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는 2005년 10.5년에서 2010년에는 10.9년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12.0년에서 12.4년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의 평균 교육연수는 여성보다 길지만, 2010년 교육연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성평등수준은 개선되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보면 남녀 취학률은 각각 116.9%, 81.5%로 남성이 여전히 높았으나 전년에 비해서 여성의 취학률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서, 2010년 성평등수준은 개선되었다. 교육부문 마지막 지표인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남녀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남녀 모두 재직자훈련 참가 건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훈련참가건수는 -2.5% 감소한데 비해서 남성은 -19.1%가 감소하여, 성평등수준은 전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었다.

④ 가족부문의 성평등수준도 2008년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2010년에도 이어졌다. 개별 지표를 보면 자연출생성비와 거의 같아진 첫째 아 출생성비는 2010년 106.9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셋째 아 출생성비는 2000년 144.2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9년 114.3 그리고 2010년에는 더욱 개선되어 110.9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부문 성평등수준은 2010년에도 개선되었다.

⑤ 보건부문을 보면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이나, 2005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0년에도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되어 성평등 지표 값은 2009년 89.3보다 높은 89.1로, 성평등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문의 경우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 및 불편감,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종합하는 건강관련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여 2010년에도 개선되었다. 2010년에는 특히 60대, 70대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훨씬

개선되어, 성평등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보건관련 또 다른 지표인 건강보험의 입원급여지급건수를 보면 남녀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여성의 입원급여지급건수 증가율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출산기인 25~34세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아서, 성평등수준은 하락하였다.

⑥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던 의사결정직 부문의 경우, 2008년 이후 성평등수준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정부부문 의사결정직 성평등을 나타내는 5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09년 3,021명에서 2010년 3,348명으로 10.8% 증가한데 비해서, 남성은 2009년 33,265명에서 2010년 33,727명으로 1.4% 증가하였다. 그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성평등지표 값은 2008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2010년에는 상승하였다. 그러나 행정부문의 성평등수준은 여전히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민간부문 의사결정직을 나타내는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인 민간기업과 전체 공기업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 현황을 보면, 여성관리자는 2010년 29,404명에서 2011년 34,616명으로 17.7%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같은 기간에 각각 201천명에서 236천명으로 17.5%로 증가하여, 여성보다 증가율이 다소 낮았다. 그러나 2010년에는 여성근로자 증가율(10.2%)이 남성(2.7%)보다 훨씬 높아서, 민간부문 대표성의 성비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결과적으로 2010년 의사결정직의 전체 성평등지표 값은 민간부문 관리직 성비 하락 등으로 인해서 2009년(20.2)에 이어서 19.5로 하락 추이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전체 부문 중에서 의사결정직 부문의 성불평등이 가장 심했고, 최근에는 성평등수준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다.

⑦ 안전부문 성평등수준은 2005년 59.2에서 연도별로 등락을 보였으나, 200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개별 성평등지표인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여성의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 정도가 남성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불평등정도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표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피해자 수가 2005년 14,847명에서 2009년 19,254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강력범죄 피해자 증가율을 보면 남성이 19.9%로 여성의 10.2%보다 높아서 성비는 개선되었다. 강력범죄(흉악) 피해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단순히 성격차뿐만 아니라 안전수준도 평등지표 값 산정에 반영하도록 구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2010년에 남녀격차는 개선되었으나,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성평등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강력범죄로부터 안전도 관련 성평등수준은 강력범죄 및 성폭행관련 범죄 피해자 수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즉, 2009년 현재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 수를 보면 여성의 경우 10만명당 79명, 남성은 23명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수는 일본의 10만명당 6.5명, 남성 6.3명, 여성 5.7명 그리고 미국의 10만명 19.3명, 남성 21.3명, 여성 17.3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성폭행(강간 등)피해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32.5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60.2명(전체 여성 강간피해자 14,954명), 남성 3.0명(747명)이다. 일본은 2009년 성폭행(강간)피해자가 전체 인구 10만명당 1.1명(1,402명), 남성 0명, 여성 10만명당 2.1명(1,402명)이고, 미국은 강간 및 성폭행 피해자가 2008년 인구 10만명당 0.8명(204천명), 여성 1.3명(164천명), 남성 0.3명(40천명)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성폭행 관련 피해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강력범죄로부터 안전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⑧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7년, 2008년에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성평등 수준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추세가 2010년에도 이어졌다. 즉, 남녀 문화산업 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 종사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낮아서 성평등지표 값이 하락하였다. 또한 여가시간 지표 값은 여성 여가시간은 변동이 없는데 남성은 소폭 감소하여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문화·정보부문의 성평등수준은 2008년, 2009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 2.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방안

국가성평등지수의 추세와 영역별 지표 값 변화는 우리나라 성평등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관행 및 의식 변화 그리고 간접적으로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성평등지수의 산정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지수와 연계된 기존 정책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의 연계표에 포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2008) 『2008-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고용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년)』,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2011~20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관련 정책 등이다. 그리고 정책연번은 여성가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연번이며, 연번 '999'는 다른 행정부처의 여성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나타낸다.

① 먼저, 가족부문은 가사노동시간의 남녀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셋째아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관리지표를 보면 남녀 육아휴직자가 2005년 각각 10,701명, 487명에서 2010년에는 41,732명, 2,5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은 2005년 1.9%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서 2010년 1.9%수준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가족영역 지표 추이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가족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활동 등과 연계된 지표에서는 성평등수준이 개선되지 않거나 정체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표 VI-1>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남성의 가족영역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즉,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민간 및 정부부문의 남성의 배우자 출산, 육아, 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노인 등 가족간호휴가제 도입에 따른 남성의 가족간호휴가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가족, 복지부문 (1)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sup>1)</sup>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1-1	성별 가사노동 평균시간 격차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1-2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GGI)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및 유급화 모성보호제도 이용여건 조성
	성별 육아휴직자 수			남성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기회 확대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1-5-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비율	9-9-9	공무원 출산, 양육지원	셋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 확대
	성별 생계책임 의식	9-9-9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활용제도 활성화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 가족간호휴가제 휴가제 활성화
2-1	성별 빈곤가구주 비율	2-2-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실화
2-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한부모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3	장애인 성별 취업자 비율	2-2-2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 자녀양육부담 경감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한부모 여성 취업 및 창업지원서비스 강화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2-2-4	미혼모 지원	미혼모 여성의 자립지원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미혼모 여성의 학습권 보장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2-2-5	여성노인 지원	저소득 여성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2-3-1	여성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2-3-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의향상	여성장애인 고용 확대 및 취업률 제고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서비스대상별(장애인) 사후도우미, 돌봄서비스 지원
				소외계층(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9-9-9	여성의 국민연금 시각지대 해소	전업주부 기여수준을 고려한 장애, 유족연금 확대 무소득배우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자격 인정
		9-9-9	여성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진	여성농어업인 국민연금가입관련 보험료지원

② 복지부문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적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안정망인 공적 연금과 함께 고용보험의 여성 가입자 수의 증가가 남성보다 높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고용율도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평등지표 추이를 보면 사회보험과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와 관련해서는 성평등수준이 개선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계속 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여성비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 수급자가 2009년 845천명으로 남성의 638천명으로 훨씬 많다. 이와 같이 가족영역의 지수를 보면 빈곤계층의 성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보험영역의 여성 가입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표 VI-1>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서 빈곤여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내실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미혼모, 여성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득보장,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지원,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등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사회보험제도의 각종 급여 등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게 위한 정책 예컨대, 전업주부 기여 수준을 고려한 장애 및 유족연금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보건부문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이 남성보다 낮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여성은 입원급여자급건수가 남성보다 많고 내원일수, 진료일수도 많았는데, 이들 계층은 주로 여성노인과 출산기 여성이었다. 5대 암 발생률을 보면 성별로 발생률이 높은 암 유형은 다르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건강검진율을 보면 여성(2009년 46.7%)은 남성(53.6%)보다 낮았다. 우울증 경험율과 자살을 생각한 인구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으며, 최근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하고 있다.

〈표 VI-2〉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보건, 경제활동부문 (2)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3-1	건강관련 삶의 질 성별격차	2-2-5	여성의 건강보호	모성보건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3-2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 성비	2-2-5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 건강정책 강화
	성별 스트레스 인지도	2-2-5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 운동프로그램 개발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여성 노인 특유 질병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개발
	성별 건강검진 감진율	2-2-5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다양화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2-2-5	여성노인 돌봄지원 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성별 활동제한일수			
	성별 자살 생각률			
4-1	성별 임금 격차	1-3-1	고용상 차별예방과 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
4-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9-9-9	일터 내에서의 임금차별 해소	기업의 자율적 임금차별 시정 지원 강화
4-3	성별 근로자의 상용근로자 비율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전문직 여성비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1-3-2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여성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성별 대졸자 실업률			여성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추진
	성별 평균 근속연수	1-3-3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 강화	장애인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강화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1-1-1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지원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여학생 유망분야 진출유도
		1-1-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미취업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온라인 여성 취업정보망 운영 활성화

이와 같이 보건부문 대표 및 관리지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고령인구가 많음에 따라 고령인구와 출산여성에 대한 보건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성 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의 건강검진을 제고시키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여성집단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와 관련해서는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건강문제별 목표인구집단 설정 및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여성노인과 관련된 보건정책인 예방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 여성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다양화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성 건강검진을 제고, 여성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지표들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주요 성평등지표 값을 보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상용근로자비율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남녀임금격차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와 임금격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느리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따라서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고용상 차별예방과 시정, 일터 내에서의 임금차별 해소 정책을 점검함과 동시에 기존 정책보다 효과가 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연령별 여성인력활용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성장동력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여성인력의 진출 확대 정책, 여성창업지원 및 여성기업인과 자영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화되지 않은 경제활동영역을 포함해서 새로운 여성인력활용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Ⅶ-3〉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경제활동, 의사결정지 부문 (3)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경력단절여성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1-2-3	여성 경제인 육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여성 경제인 경영혁신 및 네트워크 지원
		1-4-1	성장동력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서비스 사업분야 여성인력 진출 지원 국가전략분야 여성 진출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와 질 제고
		1-4-2	기업 여성인력수요 활성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중소기업 여성고용활성화 지원
		1-4-3	여성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성공 제고를 위한 B 운영 및 정보제공 여성발명 장려 및 여성발명가의 사업지원
5-1	국회의원 여성비율	1-2-4	공직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공공행정분야 관리직 여성비율 제고
5-2	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비율			지역기반 정치에 여성참여 활성화
5-3	관리지(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여성비율	9-9-9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지속 추진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및 육성
	관리직 여성비율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1-2-5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육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공공기관 여성진출확대
	성별 대학교수 비율	1-3-1	고용상 차별예방과 시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성별 공무원 수	9-9-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여성 장·차관 비율			승진상 차별에 대한 지속적 지도 감독
	사범 및 경찰고위직 여성비율	9-9-9	승진, 교육기회 등 차별 해소	여성관리 네트워크 구축
	공공기관 여성인원비율			

⑤ 의사결정직 부문은 성불평등이 가장 심한 영역이다. 개별 지표를 보면 정치 영역의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나, 아직 13.7%로 상당히 낮다. 행정분야 대표성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의 경우 최근 5급 공무원에서는 여성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급감한다. 이에 따라 행정분야 여성 대표성 문제가 개선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분야 대표성을 나타내는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비율은 2005~2008년 동안 증가, 2008년 이후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의사결정직 부문의 성평등 수준 제고는 현행 정책 추진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은 이루어지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 VI-3>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공공분야 여성참여 촉진, 민간부문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각종 차별 해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결정직 성평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행정부처에서는 장·차관, 공공부문의 기관장, 민간기업은 임원급 등 최고의사결정직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기업 경영전략과 문화를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를 조달계약과 연계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필요한 부문에서는 일정 기간 할당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교육·직업훈련부문을 보면 여성의 평균교육연수와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규교육과정에서의 남녀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재직자직업훈련의 남녀근로자 성평등수준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훈련참여비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관리지표를 보면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비율은 남성보다 여전히 낮았다. 대학전공별 여교수 비율을 보면 2010년 조교수 여성비율은 28.2%, 교수는 13.9%로 상당히 낮고, 전공별로도 편차가 여전했다. 그리고 기술사 및 기능장 여성비율도 4% 미만으로 극히 낮았다.

교육·훈련부문의 성평등지표 동향을 보면 고등교육 취학률, 진학률은 남녀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전공별로 다소 편차가 있지만 남녀 대학졸업생 취업률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재직자훈련, 여성의 평생교육에서는 여전히

여성비율이 낮고, 대학 교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여성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이에 따라 <표 VI-4>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정책에서 다양한 여성집단 즉, 미혼모, 청년여성층, 여성농업인, 여성 재직근로자 및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여성집단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교육훈련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집단 발굴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남성집중 직종의 여성취업촉진, 비전통적 학과에 여학생 및 여교수 진출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의 추진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⑦ 문화·정보부문의 경우 남녀 문화산업 종사자 지표는 경기변동에 의해서 다소 영향을 받았다. 2010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남녀종사자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낮아서, 성평등지표 값이 다소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여가시간도 경기변동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표를 보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남녀 모두 증가하나 여성이 약간 더 높았으나, 생활체육 참여율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율과 이용시간은 남성이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이 지표 동향을 보면 문화산업종사자, 여가시간 등 문화·정보부문의 일부 지표는 경기변동 즉,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과 가사노동 등을 포함하는 의무 생활 시간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남녀별로 여가활동 유형이 서로 달랐다.

우리나라의 문화·정보부문 성평등정책을 보기 위해서 <표 VI-4>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문화·정보부문 정책이 상당히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관광분야 여성인력개발, 여성 농어민 문화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과 가사노동 등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동안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여성 농어민 이외에 미혼모, 여성장애인, 여성실업자 및 재직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여성집단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남녀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세부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표 Ⅶ-4〉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교육·직업훈련, 문화부문 (4)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6-1	성별 평균교육년수	2-2-4	미혼모 지원	미혼모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6-2	고등교육기관 취학률(GDI, GG)	1-1-1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지원	고등교육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여대생 참여 기회 확대
6-3	재직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중 여성비율	1-1-2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재직여성 훈련참여 기회 확대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2-1	비전통적 직종에 여성진출확대	남성집중 직종 교육훈련과정에 여성비율 확대추진
	대학 전공별 어과수 비율	1-2-2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진문인력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1-2-3	여성 경제인 육성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추진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1-3-2	다양한 고용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여성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지원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1-4-1	성장동력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여성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1-4-3	여성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재취업 및 능력개발 교육 실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사업주의 여성직업능력개발 강화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9-9-9	여성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여성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강화
	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참여자 중 여성비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핵심근로자화 지원
7-1	여가시간 성별 차이(혹은 격차)	2-2-5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모금
7-2	문화콘텐츠산업조사자 중 여성비율	1-2-2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진문인력육성	문화관광분야 여성인력개발
	성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9-9-9	농어업인 문화활동지원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로 취미, 교양강좌 운영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평소 1주일)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성별 문화기반시설기관장			

〈표 VI-5〉 성평등지수와 여성정책 연계표-안전부문 (5)

지표 연번	지표명	정책 연번	정책과제	세부사업
7-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격차	2-4-1	이동,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7-2	10만 명당 범죄 피해자 성별 격차	2-4-2	성폭력 기정 폭력 방지제도 개선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2-4-3	성폭력 기정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가장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2-5-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대책 강화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2-5-2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추진	
		2-5-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2-5-4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2-5-5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2-5-6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2-3-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향상	여성장애인 폭력근절을 위한 방안 여성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여성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 확보
		9-9-9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자료: 여성가족부(2008), 2008-20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2008. 12.  
 여성가족부(201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고용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2008-2012년)  
 농림수산식품부(2011), 제3차[11~1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011. 1월

⑧ 안전부문의 성평등지표를 보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여성피해자 증가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기간이 많음에 따라, 강력범죄로부터 안전도에 대한 지표 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관리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인구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40.8%(여성은 53.5%)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비율을 OECD 25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야간보행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인구비율이 아이슬란드는 6.0%,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각각 14.0%, 일본 35.0%, 미국 19.0%, 영국 31.0%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만 유일하게 42.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그리고 성폭행(강간 등)피해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여성인구 10만명당 60.2명인데 비해, 일본은 여성 10만명당 2.1명이고, 미국은 여성 10만명당 1.3명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는 안전부문 성평등지수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부터 다시 악화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선된 상황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I-5>의 성평등지수와 성평등정책 연계표에 있는 안전부문 정책을 보면 성폭력, 아동폭력, 성매매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전체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와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상당히 여성에게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안전부문 성평등제고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성평등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성평등지수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성평등지수(KGEDI)를 중장기 성평등정책 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를 개

발하는데 활용한다. 즉, 매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측정하여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성평등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활용한다. 이와 함께 국가성평등지수의 변동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평가하여,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 영역별 개별지표의 변동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영역별 정책 평가와 과제 개발을 제안하도록 한다.

두 번째, 여성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현황, 여성의 인권 및 복지 현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현황, 그 밖의 성평등수준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 여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다. 그리고 성평등수준이 부진한 영역과 지표에 대해서는 책임 및 협조 행정부처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세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의 경우 각 지표별 성평등 도달 정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불평등이 개선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분류하고, 불평등이 심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평등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성평등지표에 대한 DB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성평등지수와 그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지표의 변화 원인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지수 및 지표 DB는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연구자, 교수, NGO 등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구축되어야 하며, 다양한 기초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네 번째, 국가성평등지수와 관련하여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정책연계표 즉, 앞에서 정리된 <표 VI-1>~<표 VI-5>를 관련 행정부처의 정책 도입 및 변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지표와 관리지표 중에서 생산주기가 길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생산되는 통계, 그리고 생산되고 있지 못하는 통계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홍 · 전기택 · 주재선(2010). 『2010년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태홍 · 전기택 · 주재선(2009). 『2009 성평등지표 개발과 측정방안 연구』. 여성부.
- 김태홍 외(1999). 『남녀고용평등지표의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형준 외(2008).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부.
- 문유경 · 이미정 · 장미혜 · 최선화(2005).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I ): 양성평등지표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삼성경제연구원(2008).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CEO Information 제682호.
- 양인숙(2008). 『여성친화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여성부.
- 이갑숙 외(2004). 『대전양성평등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 장미혜 · 민현주 · 김혜영 · 염유식 · 조소영(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 연구』. 문화관광부.
- 조영미 · 장미혜 · 김유나 · 임현지(2008).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평가 및 지수개발』. 여성가족재단.
- 김창연 · 성유진(2010). 『2010 서울시 성인지 지표(GSI) 측정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재단.
- 한국조세연구원(2006).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재정포럼 2006년 5월호.
- Anker, R., Chernyshev, L, Egger, P., Mehran, F., and Ritter, J.(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Bardhan, K. and S. Klasen(1999). 『UNDP' Gender-Related Indices: A Critical Review』. World Development 27:98-1010.
- Bardhan, K.(2000). On UNDP's 『Revisions to the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191-195.
- Department of Justice(2007). Equality and Law Reform, National Women's Strategy : 2007-2016. Governemnt of Ireland.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1). Women's Economic Opportunity.
- E. B. Harvey, J. H. Blakely and L. Tepperman(1989). Toward an Index of Gender Equality, (Received 29 January, 1989), Centre for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Toronto.

- Bescond, D., Chataignier, A., and Mehran, F.(2003).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 (2).
- R. Hausmann, L. D. Tyson, S. Zahidi(2006). 'The Gender Gap Index 2006: 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Equality'.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6*, World Economic Forum.
- Ireland(2008). *Equality for Women Measure - 2008-2013*.
- Dow Johns Sustainability World Indexes(DJSI)(2006). *Dow Johns Sustainability World Indexes Guide. Version 8.0, August*.
- S. Klasen(2004). *Gender-Related Indicators of Well-Being*, Ibero-America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Universitat Gottingen.
- Leroy O. Stone, Ph.D., F.R.S.A. etc.(1998). *Gender Equality Indicators: Public Concerns and Public Policies*, Statistics Canada.
- OECD(2008). *Gen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ximising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ole of Women*.
- J. Plantenga, H. Figueiredo, C. Remery, M. Smith(2003). *Towards an EU Gender Equality Index*. UMIST, Utrecht School of Economics.
- Social Watch(2009). *Making Finance Work : People First*.
- Sorentino, Contanse(1995). "International Unemployment Indicators, 1983-1993." *Monthly Labor Review*, vol. 118, no. 8(August 1995).
-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002). *Gender Statistics and Key Indicators of Women's Position in Britain*. ECE Work Session on Gender Statistics.
- Statistics Sweden(2008).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 UNDP(2007/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Fighting Climate Change-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 The Real Wealth of Nations :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WEF(20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0*.
- IPU,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http://www.ipu.org/wmn-e/world-arc.htm>).
- quotaProject 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http://www.quotaproject.org/>)



## 부 록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129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152
<부록 3> 주요국 여성대표성 관련 통계	158



## <부록 1> 부문별 성평등지표의 통계표

### 가. 가족

〈부표 1-1〉 성별, 취업여부별 평균 가사시간

(단위: 시:분)

성별	1999		2004		2009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전체	3:57	1:26	3:44	1:22	3:38	1:24
여성	5:14	2:50	4:53	2:36	4:41	2:34
남성	0:54	0:27	0:55	0:31	1:04	0:36

주 : 20세 이상 인구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2〉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명 당)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5,076	41,450	42,114	45,913	44,333	41,862	49,932
여아	19,347	18,144	18,977	21,283	20,462	19,532	23,676
남아	25,729	23,306	23,137	24,630	23,871	22,330	26,256
성비	133.0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부표 1-3〉 성별 육아휴직자

(단위: 명)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9,303	10,700	13,672	21,185	29,145	35,400
여성	9,122	10,492	13,442	20,875	28,790	34,898
남성	181	208	230	310	355	5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부표 1-4〉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단위: 시:분)

행동분류별		1999			2004			2009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미취업자	계	0:02	0:04	0:02	0:04	0:04	0:03	0:04	0:05	0:03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1	0:01	0:00	0:01	0:02	0:01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2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취업자	계	0:02	0:02	0:00	0:02	0:03	0:02	0:02	0:02	0:01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	-	-	0:00	0:01	0:00	0:00	0:00	0:00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0

주 : 20세 이상 남녀 인구의 요일평균 노인부양 시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1-5〉 유배우 가구의 남녀 가구주비율

(단위: 가구, %)

가구주의 성별	2000	2005	2010
전체가구	10,739,411	11,120,410	11,546,820
여성가구주	439,662	624,815	1,079,082
남성가구주	10,299,749	10,495,595	10,467,738
여성가구주 비율	4.1	5.6	9.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나. 복지

〈부표 2-1〉 성별 빈곤 가구주

(단위: 비율)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11.6	12.7	12.7	12.5	13.0	12.5
여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21.1	22.9	23.7	21.9	23.8	24.3
남성가구주 가구 - 시장소득	8.6	9.2	8.8	9.1	9.0	9.1

주 : 1) 빈곤가구주 가구는 전가구기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률을 사용함. 여성가구주 가구 빈곤률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여성가구주 비율임.

2) 1인 가구와 농어가가구 제외.

3) 남성 가구는 추계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부표 2-2〉 성별 공적연금 가입자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계	13,581,673	13,713,055	14,058,652	14,432,362	14,597,002	14,881,086	15,448,980
	여성	4,478,301	4,640,590	4,885,751	5,144,778	5,305,735	5,556,287	9,481,940
	남성	9,103,372	9,072,465	9,172,901	9,287,584	9,291,267	9,324,799	5,967,040
국민연금*	계	12,387,154	12,489,990	12,803,987	13,159,939	13,309,906	13,571,581	14,129,092
	여성	4,040,198	4,179,403	4,397,780	4,637,367	4,780,656	5,014,961	8,731,970
	남성	8,346,956	8,310,587	8,406,207	8,522,572	8,529,250	8,556,620	5,397,122
공무원연금	계	964,593	986,339	1,009,145	1,021,771	1,030,256	1,047,897	1,052,407
	여성	343,921	361,622	381,675	396,414	408,547	420,966	624,228
	남성	620,672	624,717	627,470	625,357	621,709	626,931	428,179
사학연금	계	229,926	236,726	245,520	250,652	256,840	261,608	267,481
	여성	94,182	99,565	106,296	110,997	116,532	120,360	125,742
	남성	135,744	137,161	139,224	139,655	140,308	141,248	141,739

주 : 국민연금가입자내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부표 2-3〉 성별 장애인 취업자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08
취업자 수	계	455,730	694,955	780,054
	여성	99,684	166,447	204,474
	남성	356,046	528,508	575,580
취업자 비율	계	34.2	34.1	37.7
	여성	19.5	20.2	23.7
	남성	43.4	43.5	47.6

주 : 15세 이상 인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부표 2-4〉 성별 장애인 교육수준

(단위: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95	여성	53.7	28.9	9.1	6.3	2.0
	남성	18.8	31.6	18.3	21.8	9.5
	전체	35.1	30.3	14.0	14.6	6.0
2000	여성	39.4	31.7	10.4	14.4	4.1
	남성	13.4	30.0	16.0	28.8	11.6
	전체	23.5	30.7	13.9	23.3	8.7
2005	여성	29.1	35.5	13.4	16.9	5.1
	남성	7.8	27.7	18.7	31.3	14.4
	전체	16.5	30.8	16.6	25.5	10.6
2008	여성	28.9	38.4	11.8	16.4	4.6
	남성	7.8	29.2	18.8	30.1	14.1
	전체	16.5	33.0	15.9	24.4	10.2

주 : 25세 이상 장애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부표 2-5〉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단위: 명)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1,610,994	1,789,443	1,967,326	2,104,889	2,246,965	2,429,547	2,517,312
여성	563,432	650,802	743,682	820,800	901,408	1,003,651	1,048,979
남성	1,047,562	1,138,641	1,223,644	1,284,089	1,345,557	1,425,896	1,468,33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부표 2-6〉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단위: 명)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7,576,856	8,063,797	8,536,966	9,063,301	9,385,239	9,759,848
여성	2,556,648	2,757,176	2,960,097	3,209,598	3,374,119	3,606,760
남성	5,020,208	5,306,621	5,576,869	5,853,703	6,011,120	6,153,08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다. 보건

〈부표 3-1〉 성별 건강관련 삶의 질(EQ-5D)

(단위: %)

연도	전체	여자	남자	격차
2005	0.939	0.926	0.953	0.9717
2007	0.931	0.909	0.952	0.9548
2008	0.937	0.918	0.955	0.9613
2009	0.951	0.940	0.964	0.97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3-2〉 성별 입원급여자급건수

(단위: 건)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5,706,573	5,922,751	6,609,448	7,533,891	8,506,065	9,322,539
여성	3,049,718	3,159,729	3,537,241	4,086,780	4,643,349	5,100,227
남성	2,656,855	2,763,022	3,072,207	3,447,111	3,862,721	4,222,31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부표 3-3〉 성별 생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01	2005	2007	2008	2009
전체	19세 이상	34.6	35.1	27.1	28.9	31.0
	65세 이상	30.5	31.2	26.8	24.9	25.5
여성	19세 이상	34.6	35.2	30.3	31.0	33.3
	65세 이상	33.9	36.8	33.9	30.7	30.6
남성	19세 이상	34.6	35.0	23.7	26.8	28.6
	65세 이상	25.1	22.8	16.3	16.4	18.0

주 : 19세 이상 인구이며,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백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3-4〉 성별 5대 암 환자수

(단위: 명)

5대 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위	7,857	15,063	8,069	15,743	7,854	15,397	8,785	17,024	8,620	17,633	8,578	17,337	9,180	18,898
대장	5,532	7,420	6,224	8,229	6,679	9,158	7,372	10,253	8,097	11,473	8,316	12,424	9,087	12,424
간	3,440	10,437	3,501	10,586	3,542	10,880	3,643	11,264	3,370	11,147	3,783	11,141	3,887	11,776
유방	7,928	56	8,307	57	8,900	47	9,842	56	10,753	52	11,606	33	12,584	75
자궁암 (자궁목, 자궁체)	5,291	-	5,387	-	5,155	-	4,883	-	3,999	-	3,616	-	3,888	-

자료: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

〈부표 3-5〉 성별 건강 검진율

(단위: %)

성별	2008	2009
전체	63.3	61.6
여성	61.3	59.3
남성	64.9	63.4

주 : 1) 수검률 =  $\frac{\text{건강검진수검인원}}{\text{건강검진대상인원}} \times 100$ 2) 건강검진대상인원 = 1차건강검진대상인원 + 2차건강검진대상인원,  
건강검진수검인원 = 1차건강검진수검인원 + 2차건강검진수검인원

자료: 국민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부표 3-6〉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2005)

(단위: 명/인구 1,000명)

성별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당뇨병	위·십이지장 궤양	고혈압	고지혈증
전체	99.1	55.0	49.7	20.7	125.5	24.7
여성	149.4	64.8	46.4	20.7	136.2	24.0
남성	48.0	45.0	52.9	20.7	114.6	25.4
성별	치질(치핵)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중이염	치아 우식증	아토피성피부염 · 피부 알레르기
전체	34.4	17.5	72.0	11.5	231.8	60.6
여성	37.3	19.1	82.8	12.0	241.2	70.4
남성	31.4	15.8	61.1	10.9	222.3	50.6

주 : 만성질환이란 연간의사진단 유병률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부표 3-7〉 성별 활동제한일수

(단위: 일)

성별	1999	2003	2006	2008
전체	0.9	0.8	0.8	0.7
여성	0.8	0.8	0.7	0.6
남성	1.0	0.9	0.8	0.8

주 : 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3-8〉 성별 자살 생각률

(단위: %)

연도	전체	여성	남성
2001	19.1	22.8	14.4
2005	18.5	22.6	13.9
2007	15.0	20.4	9.4
2008	17.4	22.9	11.8
2009	16.4	22.2	10.5

주 : 1) 19세 이상.  
2)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 라. 경제활동

〈부표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62.1	62.0	61.9	61.8	61.5	60.8	61.0
여성	49.9	50.1	50.3	50.2	50.0	49.2	49.4
남성	75.0	74.6	74.1	74.0	73.5	73.1	73.0

주 :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2〉 성별 임금격차(성비)

(단위: 원,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2,175,258	2,332,568	2,475,953	2,577,070	2,722,131	2,710,362	2,785,033
여성	1,550,249	1,672,720	1,783,280	1,839,499	1,949,472	1,952,162	2,018,542
남성	2,454,737	2,629,549	2,790,097	2,919,240	3,081,886	3,072,303	3,159,444
임금격차	63.2	63.6	63.9	63.0	63.3	63.5	63.9

주 : 1) 월평균임금=월평균급여총액+연간특별급여액/12.

2) 임금격차=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남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부표 4-3〉 성별 상용근로자

(단위: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임금근로자 계	14,894	15,185	15,551	15,970	16,206	16,453	16,971
여성임금근로자	6,237	6,391	6,573	6,756	6,868	6,955	7,230
남성임금근로자	8,657	8,794	8,978	9,214	9,338	9,498	9,740
상용근로자 계	7,625	7,918	8,204	8,620	9,007	9,389	10,086
여성상용근로자	2,289	2,439	2,616	2,816	2,954	3,051	3,421
남성상용근로자	5,336	5,479	5,588	5,804	6,053	6,338	6,666
상용직 여성비율	30.0	30.8	31.9	32.7	32.8	32.5	33.9

자료: 통계청(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4〉 전문·관리직 여성비율

(단위: 천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4,063	4,199	4,442	4,651	4,931	4,972	5,133
여성	1,537	1,622	1,769	1,841	1,953	2,016	2,083
남성	2,525	2,577	2,674	2,810	2,978	2,957	3,051
여성비율	37.9	38.6	39.8	39.6	39.6	40.5	40.6

주 : 1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5〉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72.5	72.3	73.4	73.4	73.3	72.5	73.5
여성	50.4	50.2	53.1	53.7	53.3	51.9	54.4
남성	94.0	93.5	92.9	92.2	92.5	92.0	9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4-6〉 성별 대졸자 실업률

(단위: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2.9	2.7	2.9	2.6	2.7	3.1	3.6
여성	3.4	3.1	3.4	2.8	2.9	3.1	4.0
남성	2.7	2.6	2.7	2.6	2.5	3.1	3.4

주 : 4년제 이상 졸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마. 의사결정

### 〈부표 5-1〉 성별 국회의원 당선자

(단위: 명, %)

성별	2000	2004	2008
전체	273	299	299
여성	16	39	41
남성	257	260	258
여성비율	5.9	13.0	1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 〈부표 5-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단위: 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37,557	34,582	35,742	37,557	38,348	36,286	37,075
여성	2,920	2,186	2,487	2,920	2,724	3,021	3,348
남성	34,637	32,396	33,255	34,637	35,624	33,265	33,727
여성비율	7.8	6.3	7.0	7.8	7.1	8.3	9.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부표 5-3〉 성별 기업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

(단위: 명, %)

구분	근로자 전체			관리직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6 (1,000인 이상)	1,597,617	458,584	30.7	169,983	14,178	10.2
2007 (1,000인 이상)	1,748,552	536,445	32.3	166,009	15,373	11.0
2008 (500인 이상)	2,430,320	775,922	33.6	217,717	22,887	12.5
2009 (500인 이상)	2,566,715	825,850	34.0	254,598	35,836	14.1
2010(500인 이상)	2,598,082	846,957	34.1	230,008	29,404	15.1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적극적 조치 고용대상 기업체)

〈부표 5-4〉 성별 입법·고위관리직

(단위: 천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599	602	602	601	549	546	562
여성	42	47	52	53	52	47	53
남성	557	555	550	548	497	499	509
여성비율	7.0	7.8	8.6	8.8	9.5	8.6	9.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표 5-5〉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단위: 개, 명, %)

구분	2005	2006	2008	2009
위원회수	362	383	433	485
위촉 위원수	7,743	7,206	9,462	9,867
여성 위원수	2,163	2,132	2,558	2,428
여성위원비율	27.9	29.6	27.0	24.6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부표 5-6〉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단위: 명, %)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등학교	전체	5,505	5,614	5,695	5,710	5,761	5,791	5,818
	여성	423	490	531	589	653	747	832
	남성	5,082	5,124	5,164	5,121	5,108	5,044	4,986
	여성비율	7.7	8.7	9.3	10.3	11.3	12.9	14.3
중학교	전체	2,534	2,582	2,642	2,682	2,731	2,777	2,800
	여성	249	255	294	343	394	463	493
	남성	2,285	2,327	2,348	2,339	2,337	2,314	2,307
	여성비율	9.8	9.9	11.1	12.8	14.4	16.7	17.6
고등학교	전체	2,003	2,017	2,060	2,064	2,106	2,129	2,177
	여성	111	132	123	126	122	126	139
	남성	1,892	1,885	1,937	1,938	1,984	2,003	2,038
	여성비율	5.5	6.5	6.0	6.1	5.8	5.9	6.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5-7〉 성별 대학 교수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계*	62,334	64,847	66,846	68,062	69,975	75,469	77,697
	총(학장)	353	351	336	361	357	395	395
	교수	26,464	27,652	28,771	29,857	30,992	33,592	34,731
	부교수	15,342	15,509	15,615	15,526	16,158	17,607	18,093
	조교수	13,059	13,387	13,644	13,903	13,727	14,707	15,193
	전임강사	7,116	7,948	8,480	8,415	8,741	9,168	9,285
여성	계*	10,702	11,700	12,528	13,104	13,878	15,360	16,458
	총(학장)	42	42	36	38	40	45	47
	교수	3,488	3,677	3,915	4,061	4,231	4,584	4,844
	부교수	2,395	2,577	2,616	2,694	2,938	3,407	3,606
	조교수	2,660	2,809	3,020	3,274	3,425	3,872	4,291
	전임강사	2,117	2,595	2,941	3,037	3,244	3,452	3,670
남성	계*	51,632	53,147	54,318	54,958	56,097	60,109	61,239
	총(학장)	311	309	300	323	317	350	348
	교수	22,976	23,975	24,856	25,796	26,761	29,008	29,887
	부교수	12,947	12,932	12,999	12,832	13,220	14,200	14,487
	조교수	10,399	10,578	10,624	10,629	10,302	10,835	10,902
	전임강사	4,999	5,353	5,539	5,378	5,497	5,716	5,615

주 : 계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5-8〉 성별 공무원 수

(단위: 명, %)

연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2004	577,685	233,669	40.4	256,424	64,683	25.2
2005	566,086	245,196	43.3	266,176	70,568	26.5
2006	582,837	255,202	43.8	272,584	75,608	27.7
2007	603,131	272,636	45.2	275,231	80,666	29.3
2008	610,300	281,118	46.1	274,626	79,746	29.0
2009	615,490	284,022	46.1	278,303	82,178	29.5
2010	622,737	293,917	47.2	279,636	83,282	29.8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중앙인사위원회, Web site.

**바. 교육 · 직업훈련**

〈부표 6-1〉 성별 평균교육년수

(단위: 년)

성별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9.5	10.3	10.6	11.2	11.6
여성	8.6	9.4	9.8	10.5	10.9
남성	10.6	11.2	11.5	12.0	12.4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부표 6-2〉 성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단위: 명, %)

연도	전체	여	남	성비
2000	78.3	58.1	97.0	59.9
2001	83.2	62.5	102.3	61.1
2002	86.9	66.0	106.1	62.3
2003	88.8	67.9	108.0	62.9
2004	90.5	69.8	109.3	63.9
2005	91.8	71.4	110.4	64.6
2006	93.7	73.7	111.9	65.9
2007	96.1	76.6	113.8	67.3
2008	98.1	79.2	115.3	68.6
2009	100.0	81.5	116.9	69.7

주 : 1) 적령 인구수: 만 18~22세  
 2) 총취학률 = 재학생수 / 적령인구수  
 자료: UNESCO, Database

〈부표 6-3〉 성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단위: 건, %)

시점	전체	여성	남성	외국인	분류불능	여성비율
2006	2,913,613	698,756	2,176,799	20,009	18,049	24.3
2007	3,576,375	910,332	2,649,100	14,579	2,364	25.6
2008	4,006,649	1,151,546	2,835,519	19,314	270	28.9
2009	4,949,420	1,448,972	3,481,520	17,841	1,087	29.4
2010	4,243,270	1,412,357	2,817,899	13,005	9	33.3

주 : 1)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  
능력 합계

2) 여성비율은 외국인과 분류불능을 제외한 계에 대한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부표 6-4〉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연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1	99.9	99.9	99.9	99.6	99.6	99.5	70.5	67.6	73.1
2002	99.9	99.9	99.9	99.5	99.5	99.6	74.2	72.4	75.8
2003	99.9	99.9	99.9	99.7	99.7	99.7	79.7	77.8	81.5
2004	99.9	99.9	99.9	99.7	99.7	99.7	81.3	79.7	82.8
2005	99.9	99.9	99.9	99.7	99.8	99.7	82.1	80.8	83.3
2006	99.9	99.9	99.9	99.7	99.8	99.7	82.1	81.1	82.9
2007	99.9	99.9	99.9	99.6	99.7	99.6	82.8	82.2	83.3
2008	99.9	99.9	99.9	99.7	99.7	99.6	83.8	83.5	84.0
2009	99.9	99.9	99.9	99.6	99.7	99.6	81.9	82.4	81.6
2010	99.9	99.9	99.9	99.7	99.7	99.7	79.0	80.5	77.6

주 : 대학에는 4년제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6-5〉 대학 전공별 여교수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2000	교수	12.6	16.4	4.7	8.2	16.7	29.3	19.3
	부교수	14.7	19.7	7.9	8.9	19.2	32.6	32.2
	조교수	16.5	22.1	8.8	9.5	21.6	32.4	34.4
2002	교수	12.9	17.2	4.9	8.3	16.1	29.8	23.1
	부교수	15.0	21.1	7.9	9.2	20.3	30.2	31.2
	조교수	18.4	22.5	10.6	9.7	27.2	33.8	37.4
2004	교수	13.1	18.0	5.5	8.3	16.8	30.4	23.8
	부교수	15.6	21.5	8.3	9.2	21.6	31.9	31.9
	조교수	20.7	25.1	13.6	10.9	29.9	32.9	39.9
2006	교수	13.5	20.1	5.7	8.4	17.0	31.3	26.1
	부교수	16.8	22.4	9.6	9.5	24.7	31.6	33.6
	조교수	22.4	27.7	15.4	13.0	29.7	32.5	42.9
2008	교수	13.6	20.6	6.6	8.7	17.2	31.6	27.8
	부교수	18.3	23.0	12.3	10.7	27.1	32.4	37.2
	조교수	25.0	31.1	19.5	15.5	31.9	32.5	47.1
2009	교수	13.6	20.7	6.8	8.4	17.6	31.8	26.9
	부교수	19.4	24.5	13.1	11.2	28.3	31.4	39.1
	조교수	26.3	33.2	21.6	15.8	31.7	34.6	46.2
2010	교수	13.9	20.5	7.2	8.5	18.3	31.8	28.9
	부교수	19.9	25.8	14.0	11.4	28.1	31.9	40.9
	조교수	28.2	34.0	24.9	16.3	34.1	36.6	48.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표 6-6〉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단위: %)

연도	전체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계	여성														
2006	73.4	70.3	62.7	59.1	71.4	70.1	70.2	68.0	77.1	72.3	68.1	64.0	84.4	83.2	79.0	77.4
2008	73.4	70.1	63.3	59.3	72.2	70.6	65.7	64.2	77.7	73.3	69.3	64.5	85.4	84.4	79.3	77.8
2009	73.0	70.1	62.7	58.8	72.0	71.0	64.7	63.2	76.8	73.6	69.3	65.0	85.3	84.6	78.4	77.0
2010	55.0	51.9	44.3	43.6	54.8	55.2	52.9	55.4	64.7	59.8	52.5	49.4	72.2	71.4	36.1	33.3

주 : 전문대 및 교육대를 포함한 총괄임. 2010년 취업률은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부표 6-7〉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

구분	학생1인당 교육비 지출액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생
2000	계	221	122	112	175	227	363
	여성	228	130	89	138	218	323
	남성	220	121	115	180	228	375
2004	계	309	-	186	239	348	-
	여성	277	-	149	192	276	-
	남성	313	-	189	245	36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6-8〉 교육전문직 여성비율

(단위: 명, %)

연도	합계			교육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계	여성	비율
2005	3,881	850	21.9	182	18	9.9	727	71	9.8	2,972	761	25.6
2006	3,896	937	24.1	182	14	7.7	736	79	10.7	2,978	844	28.3
2007	3,945	1,012	25.7	180	14	7.8	752	88	11.7	3,013	910	30.2
2008	4,150	1,185	28.6	180	16	8.9	784	119	15.2	3,186	1,050	33.0
2009	4,173	1,278	30.6	181	17	9.4	788	119	15.1	3,204	1,142	35.6
2010	4,202	1,373	32.7	124	7	5.6	860	139	16.2	3,218	1,227	38.1

주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및 기타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부표 6-9〉 성별 평생학습 참여비율

(단위: %)

성별	1996	2000	2004
전체	29.0	17.2	21.6
여성	24.4	15.2	19.5
남성	33.8	19.4	23.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6-10〉 기술사, 기능장 여성비율

(단위: 명, %)

성별	모든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2006	2009	2006	2009	2006	2009
전체	10,073,108	11,704,832	31,139	37,706	13,561	19,015
여성	2,665,887	3,249,570	496	732	464	811
남성	7,407,221	8,455,262	30,643	36,974	13,097	18,204
여성비율	26.5	27.8	1.6	1.9	3.4	4.3

주 : 1975~2006년, 1975~2009년까지 각각 누적된 자격증 취득자수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

〈부표 6-11〉 여성가구주 직업훈련 참가자 수

(단위: 천명, %)

연도	성별	가구주 중 임금근로자	가구주 중 직업훈련 참여자	참여비율
2007.3	전체	8,995	6,184	31.3
	여성	1,772	1,401	20.9
	남성	7,223	4,784	33.8
2008.3	전체	9,205	6,815	26.0
	여성	1,840	1,477	19.7
	남성	7,365	5,338	27.5
2009.3	전체	9,230	3,031	32.8
	여성	1,777	437	24.6
	남성	7,453	2,594	34.8
2010.3	전체	9,262	3,208	34.6
	여성	1,773	471	26.6
	남성	7,489	2,737	36.5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사. 문화·정보

〈부표 7-1〉 성 및 취업상태별 여가시간

(단위: 시:분)

연도		1999	2004	2009
미취업자	요일평균	6:57	7:00	6:44
	여성	6:12	6:17	6:03
	남성	8:46	8:42	8:23
취업자	요일평균	3:53	4:06	3:52
	여성	3:20	3:41	3:23
	남성	4:15	4:25	4:11

주 : 20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부표 7-2〉 성별 문화콘텐츠 산업종사자

(단위: 명, %)

성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50,709	429,060	446,871	432,146	451,517
여성	178,964	187,520	196,911	186,544	188,221
남성	271,745	241,540	249,960	245,602	263,296
여성구성비	39.7	43.7	44.1	43.2	4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부표 7-3〉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구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전시장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0	계	39.9	32.6	9.7	7.3	0.9	26.6	11.7	8.5	6.3	9.5
	여성	39.3	34.4	11.4	9	1.2	27.6	12.6	8.9	7.4	5.2
	남성	40.4	30.8	7.9	5.5	0.6	25.6	10.7	8.2	5.2	14
2004	계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여성	51.0	91.5	26.2	24.4	2.9	89.1	35.3	75.5	57.9	10.9
	남성	51.0	83.2	18.9	16.5	1.8	91.2	28.6	80.5	49.5	28.5
2007	계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여성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남성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2009	계	55.0	89.5	26.1	26.2	2.3	91	32.5	77.0	56.2	20.5
	여성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남성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주 : 2000년 이후 복수응답.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7-4〉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2010)

(단위: %)

성별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한달에 2~3번 이하	주 1번	주 2번	주 3번	주 4번	주 5번	주 6번	매일
전체	44.7	4.4	8.8	9.5	11.7	5.2	6.6	2.9	5.6
여성	48.2	2.9	4.8	8.3	12.7	4.9	6.8	2.9	4.9
남성	61.1	5.9	12.7	10.7	10.7	5.5	6.5	2.9	6.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부표 7-5〉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시간(평소 1주일)

(단위: %, 시간)

연도, 성		컴퓨터 활용 여부	인터넷 활용 여부	인터넷 주 평균 사용시간
2005	전체	78.9	72.8	13.3
	여성	73.3	67.2	12.1
	남성	84.6	78.5	14.3
2006	전체	79.9	74.8	13.7
	여성	75.3	68.9	12.2
	남성	83.4	80.7	15.1
2007	전체	75.9	75.5	13.7
	여성	70.6	70.3	12.2
	남성	81.1	80.8	14.9

주 : 만 6세 이상.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부표 7-6〉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단위: %)

구분		관람함	공연장 이용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전시장 관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
2000	계	39.9	32.6	9.7	7.3	0.9	26.6	11.7	8.5	6.3	9.5
	여성	39.3	34.4	11.4	9	1.2	27.6	12.6	8.9	7.4	5.2
	남성	40.4	30.8	7.9	5.5	0.6	25.6	10.7	8.2	5.2	14
2004	계	51.0	87.4	22.8	20.8	2.4	90.1	32.1	77.6	54.3	19.5
	여성	51.0	91.5	26.2	24.4	2.9	89.1	35.3	75.5	57.9	10.9
	남성	51.0	83.2	18.9	16.5	1.8	91.2	28.6	80.5	49.5	28.5
2007	계	54.3	86.8	26.6	26.0	2.5	85.0	36.6	75.4	56.8	18.4
	여성	55.0	90.2	29.0	29.6	3.1	84.4	39.1	73.0	59.8	10.8
	남성	53.6	83.2	23.8	21.9	1.8	85.8	33.9	78.4	53.0	26.6
2009	계	55.0	89.5	26.1	26.2	2.3	91	32.5	77.0	56.2	20.5
	여성	55.2	93.2	29.4	31.0	2.9	90.1	36.0	74.1	61.1	12.1
	남성	54.9	85.6	22.4	20.8	1.5	92.1	28.8	80.6	49.9	29.3

주 : 2000년 이후 복수응답.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아. 안 전

〈부표 8-1〉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성별	2001	2005	2008	2010
전체	56.6	57.9	40.0	36.7
여성	64.4	67.8	49.1	32.2
남성	48.2	47.4	30.5	41.5

주 : 15세 이상 인구, 2010년은 범죄 두려움에 대한 사회안전인식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부표 8-2〉 성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단위: 명, %)

성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1995	7,947	2,377	5,570	29.9
2000	8,765	6,245	2,520	71.2
2001	9,074	6,479	2,595	71.4
2002	10,696	8,082	2,614	75.6
2003	13,157	9,856	3,301	74.9
2004	17,687	13,810	3,877	78.1
2005	18,583	14,847	3,736	79.9
2006	19,776	15,938	3,838	80.6
2007	20,361	16,006	4,355	78.6
2008	22,191	17,479	4,712	78.8
2009	24,903	19,254	5,649	77.3

주 : 미상제외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8-3〉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2004	11,105	10,220	23.1
2005	11,757	10,365	24.4
2006	13,573	12,501	28.1
2007	13,634	12,361	28.1
2008	15,094	15,121	31.1
2009	16,156	14,902	32.5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부표 8-4〉 가정폭력 발생건수와 기소건수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기소건수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 발생건수
2004	17,373	2,429	36
2005	15,545	2,161	32
2006	13,579	1,972	28
2007	12,840	1,757	26

자료: 법무부, 「법무부 여성통계」.

<부록 2> 국가성평등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자료원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① 가족 부문	대표 지표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경제적 목적이 아닌 가사업무(음식준비, 청소 등)를 수행한 사람 또는 가족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부모 보살피기 등)를 한 사람의 1주일 평균 시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대표 지표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출생순위별로 셋째 출생아에 대한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육아휴직자 수	만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위해 실시하는 휴가를 실시한 남녀 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년	
	대표2 관리4	관리 지표	경제활동상태별 남녀 노인부양 평균시간	취업·비취업 상태별 부모 및 조부모 등 노인을 간호하거나 보살피는 남녀의 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관리 지표	가구유형별 남녀가구주 비율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남녀 비율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5년	
	관리 지표	성별 생계책임 의식	가계비의 책임에 대한 성별 의식	공식통계 없음	-	
② 복지 부문	대표 지표	빈곤가구주의 성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성별 가구주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1년	
	대표 지표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1년	
	대표3 관리4	대표 지표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만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성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3년
	관리 지표	성별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장애인 성별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정도별 남녀 분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3년	
관리 지표	성별 장애인 등록자 수	전체 장애인중 등록장애인의 성별 수.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모든 장애인은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1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애인은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함.			
	관리 지표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성별 규모.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1년	
③ 보건 부문	대표 지표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건강관련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 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 지표값에 대한 성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대표 지표	건강보험 진료급여 수급자의 성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 중 보험자 부담금(공단부담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의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1년	
	관리 지표	성별 5대 암 환자 발생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의 성별 발생률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년	
	대표2 관리6	관리 지표	성별 건강검진 검진율	성별 건강검진 수검자를 성별 조사대상 인구로 나눈 백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만성질환 유병률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 혹은 질병을 앓고 있는 성별 환자 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3년, 최근 비간행 (비주기)	
	관리 지표	성별 활동제한일수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성별 일수	통계청, 「사회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자살 생각률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사람의 성별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1년	
④ 경제 활동 부문	대표 지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대표 지표	성별 임금 격차(성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한 성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대표3 관리5	대표 지표	상용근로자의 성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전문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전문직 ※ 관리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만 30~3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대졸자 실업률	대졸 실업자가 대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평균 근속연수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상 기준일까지 근속한 평균 기간.	공식통계 없음	-
	관리 지표	가구주 성별 소득격차	가구가 근로대가로 받는 일체의 보수, 임대료·배당금·이자 등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입,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에 대한 성별 격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년
⑤ 의사 결정 부문  대표3 관리8	대표 지표	국회의원의 성비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4년
	대표 지표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1년
	대표 지표	관리자(기업의 과장급 이상)의 성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사업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상 남녀근로자의 성비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DB」	1년
	관리 지표	관리직 여성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여성비율 ※ 2010년 직업분류(제6차개정)상 관리직 ※ 관리부처: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년
	관리 지표	(중앙정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중앙정부 각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관리 지표	성별 초·중·고등학교 교장 비율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장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대학교수 비율	초대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임이상 교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공무원의 수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1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여성장차관 비율	각년 7월 1일 현재 장관과 차관급 중 여성 비율	공식통계 없음(행정통계)	-
	관리 지표	사법 및 경찰 고위직 여성비율	검사고위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와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간부의 여성 비율	공식통계 없음	-
	관리 지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공공기관 상임·비상임 여성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년
[6] 교육 직업 훈련 부문 대표3 관리9	대표 지표	남녀 평균교육년수 격차(성비)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재학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국민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의 성별 격차 ※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국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문맹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문맹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민 평균 교육수준만 지표로 채택하였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년
	대표 지표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성비	초대졸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의 성비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재적학생수의 비율 ※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적령연령은 UNESCO에서 5년간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정의 되어 있어, 18-22세의 인구를 활용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년 5년
	대표 지표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사업체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유급휴가훈련포함), 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카드제,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등의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성비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관리 지표	성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학교를 졸업자 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대학 전공계열별 여교수 비율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여교수 비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성별 전공계열별 대졸 취업률	전문대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전공대분류별(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대졸자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졸업자-(진학자+입대자+외국인유학생)}]*100으로 계산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남녀 학생 1인당 교육비	유치원 이상 학생(재학생 포함)이 있는 가구의 월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관리 지표	교육전문직의 여성비율	교육장,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비율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1년
	관리 지표	성별 학업성취도 차이	학업성취도에서의 성별차이 ※ 학업성취도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관리 지표	성별 평생학습 참여자	30세 이상 인구 중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육강좌, 직업훈련, 각종 강좌, 기타 학습에 참여한 인구의 성별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관리 지표	성별 기술사, 기능장 수	기술사 및 기능장의 성별 규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1년
	관리 지표	고용노동부 지원 실업자 훈련 참여자 중 여성비율	신규실업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의 직업훈련생에 대한 성별비율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년
[7] 문화 정보 부문	대표 지표	여가시간의 성비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 여가시간이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이며,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을 행하는 일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5년
	대표2 관리5 대표 지표	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의 성비	문화산업 10개 분야 사업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에 종사하는 남녀 성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공연장(공연장, 음악, 연극, 마당극, 뮤지컬, 영화, 무용)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관람 등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비율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부문	지표 유형	지표명	통계적 정의	자료원	생산 주기
	관리 지표	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걷기, 헬스, 등산, 축구, 수영, 자전거, 싸이클 체조, 배드민턴, 농구, 줄넘기 육상, 요가, 태권도, 테니스, 골프 등에 한 주 동안 참여하는 회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3년
	관리 지표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시간(평소 1주일)	평소 1주일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사용조사」	1년
	관리 지표	성별 문화시설 이용률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이용한 남녀 수	공식통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구할 수 있음)	-
	관리 지표	성별 문화기반시설 기관장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중 정부 및 공공기관이 관장하는 시설 기관장의 성별 분포	공식통계 없음	-
[8] 안전 부문	대표 지표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 인식 성비	현 사회에서 범죄위험으로부터 느끼는 안전도의 남녀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부정기 (3~5년)
	대표 지표	강력범죄(홍약법) 피해자의 성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피해자의 성비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관리 지표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발생 건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1년
	대표2 관리3	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의 피해율	가정폭력 즉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비율 ※ 가족폭력이란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관리 지표	성매매 범죄자 기소율	성매매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비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1년

<부록 3> 주요국 여성대표성 관련 통계

<부표 1> 여성의원 현황: 2011년 7월 기준

(단위: 년, 명, %)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르완다	2008	80	45	56.3	2003	26	9	34.6
안도라	2011	28	15	53.6				
스웨덴	2010	349	157	45.0				
남아프리카	2009	400	178	44.5	2009	54	16	29.6
쿠바	2008	586	253	43.2				
아이슬란드	2009	63	27	42.9				
핀란드	2011	200	85	42.5				
노르웨이	2009	169	67	39.6				
네덜란드	2010	150	59	39.3	2011	75	27	36.0
벨기에	2010	150	59	39.3	2010	71	26	36.6
모잠비크	2009	250	98	39.2				
앙골라	2008	220	85	38.6				
코스타리카	2010	57	22	38.6				
아르헨티나	2009	257	99	38.5	2009	71	25	35.2
덴마크	2007	179	68	38.0				
스페인	2008	350	128	36.6	2008	263	85	32.3
탄자니아공화국	2010	350	126	36.0				
우간다	2011	375	131	34.9				
뉴질랜드	2008	122	41	33.6				
네팔	2008	594	197	33.2				
독일	2009	622	204	32.8		69	15	21.7
에콰도르	2009	124	40	32.3				
브룬디	2010	106	34	32.1	2010	41	19	46.3
벨라루스	2008	110	35	31.8	2008	58	19	32.8
마케도니아	2011	123	38	30.9				
가이아나	2006	70	21	30.0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동티모르	2007	65	19	29.2				
스위스	2007	200	58	29.0	2007	46	10	21.7
트리니다드토바고	2010	42	12	28.6	2010	31	8	25.8
오스트리아	2008	183	51	27.9		61	18	29.5
에디오피아	2010	547	152	27.8	2010	135	22	16.3
아프카니스탄	2010	249	69	27.7	2011	102	28	27.5
포르투갈	2011	230	61	26.5				
멕시코	2009	500	131	26.2	2006	128	29	22.7
모나코	2008	23	6	26.1				
볼리비아	2009	130	33	25.4	2009	36	17	47.2
이라크	2010	325	82	25.2				
수단	2010	346	87	25.1	2010	28	5	17.9
라오스	2011	132	33	25.0				
캐나다	2011	308	76	24.7		103	37	35.9
호주	2010	150	37	24.7	2010	76	27	35.5
베트남	2011	500	122	24.4				
나미비아	2009	78	19	24.4	2010	26	7	26.9
레스토	2007	120	29	24.2	2007	33	6	18.2
리히텐슈타인	2009	25	6	24.0				
세이셸	2007	34	8	23.5				
크로아티아	2007	153	36	23.5				
키르기스스탄	2010	120	28	23.3				
세네갈	2007	150	34	22.7	2007	100	40	40.0
아랍에미리트	2006	40	9	22.5				
싱가폴	2011	90	20	22.2				
파키스탄	2008	342	76	22.2	2009	100	17	17.0
필리핀	2010	280	62	22.1	2010	23	3	13.0
모리타니	2006	95	21	22.1	2009	56	8	14.3
에리트레아	1994	150	33	22.0				
영국	2010	650	143	22.0		733	147	20.1
우즈베키스탄	2009	150	33	22.0	2010	100	15	15.0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체코	2010	200	44	22.0	2010	81	15	18.5
세르비아	2008	250	54	21.6				
페루	2011	130	28	21.5				
중국	2008	2987	637	21.3				
이탈리아	2008	630	134	21.3	2008	321	59	18.4
캄보디아	2008	123	26	21.1	2006	61	9	14.8
말라위	2009	192	40	20.8				
불가리아	2009	240	50	20.8				
카보베르데	2011	72	15	20.8				
도미니카공화국	2010	183	38	20.8	2010	32	3	9.4
니카라과	2006	92	19	20.7				
라트비아	2010	100	20	20.0				
룩셈부르크	2009	60	12	20.0				
폴란드	2007	460	92	20.0	2007	100	8	8.0
에스토니아	2011	101	20	19.8				
이스라엘	2009	120	23	19.2				
리투아니아	2008	141	27	19.1				
엘살바도르	2009	84	16	19.0				
타지키스탄	2010	63	12	19.0	2010	34	5	14.7
프랑스	2007	577	109	18.9	2008	343	75	21.9
모리셔스	2010	69	13	18.8				
몰도바	2010	101	19	18.8				
방글라데시	2008	345	64	18.6				
상투메프린시페	2010	55	10	18.2				
인도네시아	2009	560	101	18.0				
온두라스	2009	128	23	18.0				
카자흐스탄	2007	107	19	17.8	2008	47	2	4.3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2010	23	4	17.4				
그리스	2009	300	52	17.3				
베네수엘라	2010	165	28	17.0				
투르크메니스탄	2008	125	21	16.8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미국	2010	432	72	16.7	2010	100	17	17.0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2010	42	7	16.7	2011	15	2	13.3
산마리노	2008	60	10	16.7				
알바니아	2009	140	23	16.4				
슬로바키아	2010	150	24	16.0				
아제르바이젠	2010	125	20	16.0				
태국	2011	500	79	15.8	2011	149	23	15.4
북한	2009	687	107	15.6				
부르키나파소	2007	111	17	15.3				
우루과이	2009	99	15	15.2	2009	31	4	12.9
짐바브웨	2008	214	32	15.0	2008	99	24	24.2
한국	2008	299	44	14.7				
가봉	2009	116	17	14.7	2009	102	18	17.6
아일랜드	2011	166	24	14.5	2011	60	18	30.0
슬로베니아	2008	90	13	14.4	2007	40	1	2.5
터키	2011	550	78	14.2				
칠레	2009	120	17	14.2	2009	38	5	13.2
잠비아	2006	157	22	14.0				
러시아	2007	450	63	14.0		169	8	4.7
카메룬	2007	180	25	13.9				
지부티	2008	65	9	13.8				
스와질란드	2008	66	9	13.6	2008	30	12	40.0
그레나다	2008	15	2	13.3	2008	13	4	30.8
자메이카	2007	60	8	13.3	2007	21	5	23.8
니제르	2011	113	15	13.3				
시에라리온	2007	121	16	13.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11	92	12	13.0				
차드	2011	188	24	12.8				
콜롬비아	2010	166	21	12.7	2010	102	16	15.7
도미니카	2009	32	4	12.5				
라이베리아	2005	64	8	12.5	2005	30	5	16.7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마다가스카르	2010	256	32	12.5	2010	90	10	11.1
파라과이	2008	80	10	12.5	2008	45	7	15.6
시리아	2007	250	31	12.4				
바하마	2007	41	5	12.2	2007	15	5	33.3
과테말라	2007	158	19	12.0				
루마니아	2008	334	38	11.4	2008	137	8	5.8
일본	2009	480	54	11.3	2010	242	44	18.2
몬테네그로	2009	81	9	11.1				
세인트루시아	2006	18	2	11.1	2007	11	4	36.4
토고	2007	81	9	11.1				
요르단	2010	120	13	10.8	2010	60	9	15.0
인도	2009	545	59	10.8	2010	242	25	10.3
키프로스	2011	56	6	10.7				
앤티가바부다	2009	19	2	10.5	2009	17	5	29.4
모로코	2007	325	34	10.5	2009	270	6	2.2
콩고민주공화국	2006	500	52	10.4	2007	108	5	4.6
말리	2007	147	15	10.2				
기니비사우	2008	100	10	10.0				
바베이도스	2008	30	3	10.0	2008	21	7	33.3
적도 기니	2008	100	10	10.0				
말레이시아	2008	222	22	9.9		64	18	28.1
케냐	2007	224	22	9.8				
수리남	2010	51	5	9.8				
아르메니아	2007	131	12	9.2				
헝가리	2010	386	35	9.1				
코트디브와르	2000	203	18	8.9				
말타	2008	69	6	8.7				
브라질	2010	513	44	8.6	2010	81	13	16.0
부탄	2008	47	4	8.5	2007	25	6	24.0
파나마	2009	71	6	8.5				
베냉	2011	83	7	8.4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가나	2008	230	19	8.3				
우크라이나	2007	450	36	8.0				
보츠와나	2009	63	5	7.9				
알제리	2007	389	30	7.7	2009	136	7	5.1
리비아	2009	468	36	7.7				
쿠웨이트	2009	65	5	7.7				
감비아	2002	53	4	7.5				
콩고	2007	137	10	7.3	2008	70	9	12.9
소말리아	2004	546	37	6.8				
세인트키츠네비	2010	15	1	6.7				
조지아	2008	138	9	6.5				
몰디브	2009	77	5	6.5				
스리랑카	2010	225	13	5.8				
키리바시	2007	46	2	4.3				
미얀마	2010	326	14	4.3	2010	168	6	3.6
아이티	2010	95	4	4.2	2010	30	1	3.3
사모아	2011	49	2	4.1				
몽고	2008	76	3	3.9				
바누아투	2008	52	2	3.8				
나이지리아	2011	352	13	3.7	2011	109	4	3.7
통가	2010	28	1	3.6				
레바논	2009	128	4	3.1				
마셜제도	2007	33	1	3.0				
코모로	2009	33	1	3.0				
이란	2008	290	8	2.8				
바레인	2010	40	1	2.5	2010	40	11	27.5
파푸아뉴기니	2007	109	1	0.9				
예멘	2003	301	1	0.3	2001	111	2	1.8
나우루	2010	18	0	0.0				
미크로네시아	2011	14	0	0.0				
벨리즈	2008	32	0	0.0	2008	13	5	38.5

국가	하원 및 단원제				상원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선거 시기	전체 의원	여성 의원	여성 의원비율
사우디아라비아	2009	150	0	0.0				
솔로몬제도	2010	50	0	0.0				
오만	2007	84	0	0.0	2007	72	14	19.4
카타르	2010	35	0	0.0				
투발루	2010	15	0	0.0				
팔라우	2008	16	0	0.0	2008	13	2	15.4

〈부표 2〉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 현황

	정당할당제 도입여부	할당제형태	헌법 할당여부	선거법 할당여부
이집트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탄자니아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할당
코트디부아르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튀니지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가나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가이아나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과테말라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그리스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나미비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지방정부)	미할당	미할당
남아프리카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네덜란드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네팔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할당	할당
노르웨이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니제르	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니카라과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덴마크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도미니카공화국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독일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동티모르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라이베리아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레바논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레소토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루마니아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룩셈부르크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르완다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미할당
리투아니아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마케도니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말리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말타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멕시코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정당할당제 도입여부	할당제형태	헌법 할당여부	선거법 할당여부
모로코	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미할당
모리타니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모잠비크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몰도바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방글라데시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미할당
베네수엘라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벨기에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보츠와나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볼리비아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부르키나파소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브라질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브룬디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할당
세네갈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세르비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할당	할당
소말리아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미할당
수단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스리랑카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스웨덴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스위스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스페인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슬로바키아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슬로베니아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시에라리온	미도입	법적 명시 없음	할당	미할당
아르메니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아르헨티나	도입	여성후보할당	할당	할당
아이슬란드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아이티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아프카니스탄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할당
알바니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알제리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앙골라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정당할당제 도입여부	할당제형태	헌법 할당여부	선거법 할당여부
에리트레아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에콰도르	도입	여성후보할당	할당	할당
엘살바도르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영국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오스트리아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온두라스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요르단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우간다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할당
우루과이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우즈베키스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이라크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할당	할당
이스라엘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이탈리아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인도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인도네시아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중국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지부티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짐바브웨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체코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칠레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카메룬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카자흐스탄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캐나다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케냐	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미할당
코스타리카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콜롬비아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크로아티아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키르기스스탄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미할당	할당
키프로스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태국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트리니다드토바고	미도입	할당제 미실시	미할당	미할당
파나마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정당할당제 도입여부	할당제형태	헌법 할당여부	선거법 할당여부
파라과이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파키스탄	미도입	여성의석할당	할당	미할당
페루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포르투갈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폴란드	미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프랑스	도입	여성후보할당	할당	할당
필리핀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한국	도입	여성후보할당	미할당	할당
헝가리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호주	도입	법적 명시 없음	미할당	미할당

## Abstract

# 2011 Gender Equality Report in Korea

Tae-Hong Kim

Ki-Taek Jeon

Jae-Seon Joo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gender equality i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The World Bank has stated that rate of economic growth show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gender equality. Also, countries with a higher level of gender inequality tend to demonstrate a higher level of poverty. Accordingly, countries have implemented a range of policies targeting gender equality.

Korea has been making ongoing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However, according to gender equality indice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der equality in Korea stands considerably lower than other OECD countries, which indicates that customs and systems in Korea still needs to be adjusted, in order to sec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it appears necessary to identify the level of gender inequality, its sources, and the level of improvement in each sector of the society and in the nation as a whole. Using the gender equality index and indicators which are developed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trends and changes in gender equality in South Korea were traced since 2010.

The value of the South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is designed to rise from '0.0' (unequal) to 100.0 (equal) as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mproves. According to this measure, the nation's Gender Equality Index stood at 62.6 in 2010, a slight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index value continued to rise from 58.5 in 2005 to 62.1 in 2008.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Korean Gender Equality Index, gender equality of Korea has improved from 2005 to 2010, although there was a slight decrease in 2009.

In terms of sector, public health marked the highest level of gender equality(89.1) in 2010, followed b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75.0), culture and information(72.5), economic activity(67.9), welfare(66.5), and family(59.2). The decision-making(19.2) area showed the lowest level of gender equality, followed by safety(55.6). Compared to 2005, education/vocational training sector made the greatest progress, followed by family, welfare, decision-making, economic activity, culture and information. Meanwhil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 public health sector and safety was aggravated.

According to the trend in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Index, South Korea has made constant progress in gender equality.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international ranking is little changed. This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although the levels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indicators have improved overall, the pace of progress in reducing the gender gap is slow. It is also due to severe inequality in certain areas, including decision-making sector, safety sector. As a result, South Korea's ranking is gradually progressing in the UNDP's GDI, which takes into an account of both levels in gender equality indicators and the gender gap. However, it remains within the low ranking group in the WEF's GGI of which only considers the gender gaps when estimat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appears necessary to focus on a continuous and structural policy effort to reduce gender discrepancies in the areas of decision-making. And in terms of safety, the number of female victims of serious crimes is rapidly increasing despite the efforts to prevent cases of aggravated felony such as murder, armed robbery, and sexual assault. In order to enhance gender equality in the safety sector,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structurally reduce the number of victims of serious crime.



연구보고 2011-12

##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

2011년 9월 8일 인쇄  
2011년 9월 14일 발행

발행인 : 김 금 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146-10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